

**201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5. 8. 3**

**(사)한국정책학회**



**201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15. 8. 3**

**본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일부 또는 전면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8. 3

#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 -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	주효진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연구원	한승준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준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이석환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
	하현상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
	정창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구보조원	홍승아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전영환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신희정	꽃동네대학교 학부

# 차 례

<b>제 1장 서 론</b> .....	<b>1</b>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절 연구방법 .....	2
제 3절 연구범위 .....	2
<b>제 2장 정부사업평가 현황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b> .....	<b>5</b>
제 1절 국내 정부부처사업평가 제도 및 동향 .....	5
1.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업 심층평가 .....	5
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	8
3.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	14
4. 기획재정부 보조사업운영평가 .....	21
5. 국무조정실 국정과제 심층평가 .....	30
제 2절 시사점 도출 .....	34
제 3절 기금평가 유사 사례분석 .....	35
1. 국민체육진흥기금 .....	36
2. 녹색기후기금 .....	44
3. 지역협력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	51
4.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성과 평가 .....	54
제 4절 시사점 도출 .....	60
<b>제 3장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현황 및 문제점 분석</b> .....	<b>66</b>
제 1절 2014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현황 .....	66
제 2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평가제도 현황 .....	71
1. 기금사업 성과관리체계 .....	71
2. 외부 평가제도 현황 .....	72
3. 내부 평가제도 현황 .....	75
제 3절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문제점 .....	78
1.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 .....	78

2. 평가지표의 문제점 .....	84
3. 평가방식의 문제점 .....	85
4. 평가운영의 문제점 .....	86
제 4절 소 결 .....	87
<b>제 4장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개선을 위한 대안모색 .....</b>	<b>89</b>
제 1절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개선방향 .....	89
제 2절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 개선방안 .....	91
1. 평가지표 .....	91
2. 평가방식 .....	98
제 3절 평가운영상 개선방안 .....	100
<b>제 5장 결 론 .....</b>	<b>103</b>
제 1절 연구요약 .....	103
제 2절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	106

# 표 차 례

<표 1> 재정사업심층평가 평가내용 및 기준 .....	6
<표 2> 심층평가 사후관리 절차 .....	7
<표 3> 평가대상 선정기준 .....	9
<표 4> 평가대상 .....	10
<표 5> 지표범주화에 따른 세부지표 개발 .....	12
<표 6> 평가항목(예) .....	12
<표 7> 평가절차 .....	14
<표 8> 메타평가 절차 .....	16
<표 9> 평가지표 .....	17
<표 10> 사업계획의 적정성 측정방법 .....	18
<표 11> 성과계획의 적정성 측정방법 .....	19
<표 12> 사업관리의 적정성 측정방법 .....	19
<표 13>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 환류의 측정방법 .....	20
<표 14> (1)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별 평가내용 .....	24
<표 15> (2) 평가결과 및 내용 .....	24
<표 1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 .....	25
<표 17> 1-2. 보조사업 목적의 명확성과 타당성 .....	25
<표 18> 1-3. 보조사업 구성(내역사업 등)의 명확성과 실효성 .....	27
<표 19> 2-1.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	28
<표 20> 기준보조율 있음 .....	29
<표 21> 기준보조율 없음 .....	29
<표 22>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의 합리성 .....	30
<표 23> 체육 예산 대비 국민체육진흥기금 규모 .....	36
<표 24> 2014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성과평가 분야별 예산편성현황 .....	37
<표 25>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대상 현황 .....	38
<표 26> 2014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평가지표 .....	40
<표 27> 국민체육진흥기금 현장평가 및 참여자 만족도 점수산출 방법 .....	41
<표 28> 국민체육진흥기금 결과지표(만족도 제외) 점수산출 방법 .....	42
<표 29> 국민체육진흥기금 평가실무소위원회 구성현황 .....	43
<표 30> 녹색기후기금 설계위원회 구성 .....	50

<표 31> 총괄평가의 평가지표 .....	56
<표 32> 보조사업 평가지표 .....	58
<표 33> 융자사업 평가지표 .....	58
<표 34>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	59
<표 35> 2013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대상사업 .....	63
<표 36> 2013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지표 .....	63
<표 37>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현황 .....	67
<표 38> 2014년도 수탁사업현황 .....	70
<표 39> 문화예술진흥기금 외부 법정평가제도 현황 .....	74
<표 40> 문화예술진흥기금 외부 법정평가별 대상사업 .....	74
<표 41> 문화예술진흥기금 내부평가제도 현황 .....	77
<표 42> 2015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개 .....	80
<표 43>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 경과 .....	83
<표 44> 평가의 문제점 정리 .....	88
<표 45>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지표적용의 애로점 .....	91
<표 46>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 지표설정(공통) .....	93
<표 47>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지표(공통) 내용과 평가기준 (예시) .....	93
<표 48> 사업평가 예시 .....	95
<표 49>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심층평가 연구범위 요약(예시) .....	96
<표 50> 평가대상사업 예시: 예술창작역량강화 단위사업 중 4개 주요사업 .....	98
<표 51> 평가과정 및 단계별 추진내용 .....	102

## 그림 차례

<그림 1>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	31
<그림 2> 현 정부의 특정평가 선정기준 및 대상과제 .....	33
<그림 3>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평가절차 .....	39
<그림 4> 단계별 녹색기후기금 지원범위 .....	47
<그림 5> 녹색기후기금의 구성 및 운영체계 .....	48
<그림 6>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와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체계 .....	52
<그림 7>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관리 체계 .....	71
<그림 8> 문예진흥기금사업 모니터링·평가체계 .....	72

<그림 9>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개별지원 사업) 모니터링 체계 .....	72
<그림 10> 통합 자율평가 도입안 .....	108

# 제 1장 서 론

##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부터 예술위원회의 자율성에 대응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금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성과의 평가)에 의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문예기금사업평가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타 법정평가와 유사하여 차별성이 없고 평가결과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임
  - － 기획재정부 평가(단위사업 중심)와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세세부사업 중심) 간 평가대상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 실질적 중복평가 및 차별성이 부재함
-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 및 재원의 적정배분 체계 등 정확한 진단분석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업평가를 통하여 해당사업의 문제점·성과·개선방안이 파악되고, 평가결과가 차년도 사업에 반영가능한 실용적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함
  - －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적절한 성과평가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현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사업개선이 가능한 유용한 평가체계 마련
  - － 현 사업평가 방식은 해당사업 지표충족 여부로 구성되어 평가결과와 환류 간 연계가 부족하고 사업개선을 위한 결과 활용도가 낮음
    - 사업목적, 운영 및 결과 등 단계별 문제점, 성과, 개선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해 담당자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반영이 곤란함
    - 문예진흥기금 평가는 부처 간 성과를 비교하는 기재부 평가와 달리 비교대상이 없어 점수산정 평가방식의 실효성이 미약함
    - 그럼에도 현 평가방식은 사업진단보다는 오히려 점수 결과에 집중되어 평가 취지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예: 점수결과의 대외적 반응 등)
- 본 연구의 목적은 문예기금사업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분석을 위한 평가체계 재설계와 평가방식의 적정화를 통해 바람직한 사업진단을 모색할 수 있는 적합한 평가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음
  - －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진단 및 개선가능한(컨설팅)연구적 요소를 가미, 차년도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에 노력할 수 있는 실용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함

- 최근의 기재부 평가방식 역시 심층평가방식을 지향하고 있으며, 재정사업자율평가는 각 부처에 일임하는 추세임

## 제 2절 연구방법

### □ 연구방법 개괄

- 연구방법은 크게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본 연구도 기본적으로 질적·양적 연구방법 모두에 의존함으로써 연구의 심층성과 적실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할 연구방법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 문헌조사(literature review) 및 유사사례 벤치마킹

- 사업과 관련된 자료들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함
- 관련 국내·외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국내외 유사사례로서 다른 공공기관들의 기금평가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평가방식 개선에 적합한 시사점을 제시함

### □ 관련 자료 및 서베이 통계분석

- 본 연구과제에서는 관련자료에 대한 다양한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평가사업에 대한 점검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 면접조사(interview)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주요업무 담당자, 평가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황 및 문제점의 파악과 개선방안에 참고함

### □ 관련 전문가 자문

- 조사연구 자료에 대한 검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대학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 등을 실시,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제 3절 연구범위

### 1. 기금사업평가 동향 분석

- 국내 정부부처 기금사업평가 평가제도 심층조사를 통한 기금평가의 논의를 정리함
  -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원의 ‘재정사업 심층평가지침’ 조사
  -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심층평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영향평가’, 기획재정부 보조사업운영평가 등 조사
  - 문예위 기금평가현황 및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시사점 도출
    - 경영실적평가, 재정사업자율평가, 자산운용실적평가, 기금존치평가, 보조사업운영평가, 복권기금사업평가,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 기존 문헌조사 :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관련 국내외 문헌조사
- 기금평가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함의를 제공함
  - 기금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평가방식 및 평가운영방법을 분석하고,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지 반영가능한 사안을 정리함

## 2.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문제점 분석

-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문제점 분석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현 평가체계의 문제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
  - 평가자, 피평가자(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상 문제진단을 위한 심층인터뷰 실시(5-6인)
  - 평가자의 경우 최근 5년간 다수 참여경험이 있는 장르대표성이 없는 평가자를 우선적으로 면접대상자로 선정함
- 구체적으로 기존문헌 및 관련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평가방식의 적절성 및 평가운영상 문제점 분석
  - 체크리스트 방식 및 점수위주의 기존 평가방식의 적절성 여부
    - 예/아니오 방식이 아닌 심층평가로서 사업목적의 타당성, 필요성, 자원배분의 적정성 등 사업진단이 가능한 평가지표 반영 필요성 여부
  - 기타 문예진흥기금 특성상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저해하는 운영과정상 문제점 분석

## 3.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개선을 위한 대안모색

-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 개선방안

- PDCA 방식의 문제 개선 및 차년도 예술위원회 사업설계에 적용가능한 실용적 평가지표 반영
- 평가방법, 평가범위, 평가결과 산출방식 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증대할 수 있는 과학적 평가체계 구축
  - 체크리스트 평가방식 보완방안, 심층평가를 위한 사업평가 범위 설정, 정책환류와 연계가 가능한 객관적 평가체계 설계
- 평가운영상 개선방안
  - 평가수행 절차상 노정된 문제 해결을 객관적 평가운영 방안마련
  - 평가단 구성방법, 평가지침 구체화, 평가 책임성 확보 방안 등
- 기대효과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위원회 평가결과 활용 제고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제시

## 제 2장 정부사업평가 현황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 제 1절 국내 정부부처사업평가 제도 및 동향

#### 1.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업 심층평가

##### 1) 개요

-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및 시행령 제3조(재정사업의 성과평가)에 따라 재정사업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업들의 운영성과를 깊이 있게 분석·평가하는 제도임
-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사업이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여러 가지 과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그 성공요인 또는 실패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용도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
  - －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정책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도 존재함
-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는 재정사업자율평가가 리뷰방식에 근거한 부처 자체평가에 기초하고 있어 개별사업이나 사업군의 심층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 시범평가를 시작으로 2006년 도입
  - － 도입 이후, 2009년까지 매년 10개 정도의 개별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하였으나 2010년 개별사업 평가에서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로 전환
  - －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평가 용역 감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14년부터 조세재정연구원으로 총괄기관 변경
  - － 2005년 도입 이후 2012년까지 총 67개 과제를 평가하고, 60개 과제는 평가 후 세출구조조정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완료
- 2012년부터 내실있는 평가 실시를 위하여 심층평가 사전예고제도 및 대규모 신규사업 심층평가 의무제도를 새로 도입함
  - － 심층평가 사전예고제도는 평가예정사업을 관계부처에 사전 통보하여 일정기간 자료를 축적한 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며, 대규모 신규사업 심층평가 의무제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시 사후 성과검증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심층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임

2) 평가 방법 및 내용

- 심층평가 수행을 위해 사전대상사업을 지정, 학계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층평가단이 계량적, 비계량적 방법을 통하여 사업(군)의 정책효과 분석
- 심층평가의 주요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음
  - 적절성(relevance): 사업은 정부의 역할로서 적절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가운데 어느 것의 역할에 해당하는가? 사업수행방식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가?
  - 효과성(effectiveness): 사업의 결과로서 사업의 특정목표 및 일반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효율성(efficiency): 여러 투입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사용되어 산출 및 중간결과로 전환되었는가?
  - 효용성(utility): 사업의 결과 실제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충족되었는가?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 효과성 평가는 정량적·분석적 방법을 통해 사업의 순효과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의 평가와 심층평가를 구분 짓는 특징적인 내용임

<표 1> 재정사업심층평가 평가내용 및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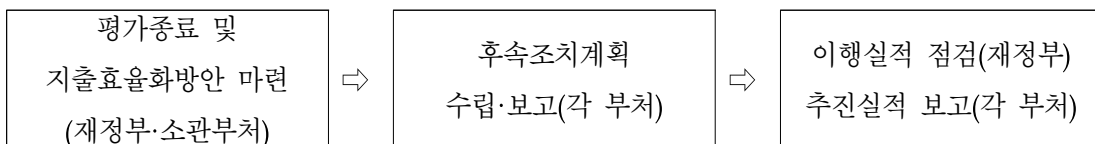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평가 개요	-사업(군) 개요(평가목적, 평가 필요성, 평가기준, 평가범위, 평가 방법의 개략적 설명)
사업군 내용	-사업(군) 개요: 사업(군) 목적, 사업(군)배경 및 연혁, 법적 근거 및 상위계획, 사업(군) 예산, 사업(군) 성과 -사업(군) 연계성: 사업(군) 전달체계, 사업(군) 주체, 사업(군) 대상, 기타 이해 관계자 -해외사례 및 선행연구 조사
주요 쟁점과 평가방법	-이론적 모형의 구성: 평가대상 사업(군)의 논리모형 및 이론적 모형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수요 분석 -평가의 쟁점사항 파악(문제제기) -평가요소의 결정, 평가의 목적 및 범위, 평가방법 제시(세부적 설명)
적절성 분석	-정부개입의 적절성 평가

구 분	내 용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적절성 -사업군의 계층구조 파악 및 적절성 평가(정책매트릭스 작성)
효과성 분석	-성과지표와 비교기준 -평가모형 -자료분석결과
집행성과 분석	-인과이론에 대한 평가 -집행체계에 대한 평가 -정책수정에 대한 평가 -효과성 분석과의 연계
기타 평가요소 분석	-주요 평가항목(적절성, 효과성, 집행성과 분석)에 대한 평가가 어려울 경우 선택적으로 분석 수행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평가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 평가대상 사업간의 우선순위 평가 결과제시 - 사업군 및 사업의 중장기 재정운용방안 제시 - 사업군 및 사업의 성과관리목표 개선방안 제시 - 유사·중복사업 평가 결과 제시 등

### 3) 평가결과 활용

- 평가실시 후 사업의 축소, 조정, 폐지와 같은 구조조정, 성과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점검 등의 개선책이 제시됨
- 평가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지출성과제고방안」에 대해 6개월 이내 각 부처 후속조치계획 수립 및 협의회 보고 의무화
- 세부 추진과제 단위별로 후속조치 현황을 관리하고, 매 반기 이행실적 점검 및 점검결과의 협의회 보고 등 사후관리 강화
  - 필요시,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각 부처 보고를 통해 성과점검 및 추가 협의·보완사항 등을 논의함으로써, 심층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이행에 대한 각 부처의 관심 제고

〈표 2〉 심층평가 사후관리 절차



#### 4)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의 특성

- 심층평가 평가기준 중 효과성분석의 경우에는 정책평가의 총괄평가, 집행성과분석은 사후 과정평가에 해당
- 재정사업심층평가는 사업 시행 후에, 정해진 기준과 관련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의 효과와 효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으로 사업, 정책적 측면에서 정책평가의 형태를 띠
  - 정책평가는 개발 정책이나 사업이 초기에 의도한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체계적, 과학적 방법을 통해 검증하고, 정책이나 사업이 애초에 설계되어진 대로 집행되었는지를 분석하거나 효과가 발생하기까지의 인과경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둠
- 재정사업심층평가는 재정사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적절성, 효과성, 집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므로, 전형적인 총괄평가의 형태를 띠
  - 정책평가의 유형은 총괄평가와 과정평가로 구분, 그 중 총괄평가는 원래 사업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였는지를 종합적이고 사후적으로 계량적, 비계량적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 후 환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재정사업심층평가의 집행 분석은 집행체계 분석 이외에 사업효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까지 포함하므로 사후 과정평가에 해당함.
  - 사후 과정평가는 사업 종료 후, 집행과정의 절차와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사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인과관계를 추적함
-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평가기준과 평가분석모델들이 정부사업의 정책평가 모델의 표준으로 활용됨
  - 특히,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도 많은 단위 재정사업의 사업평가가 심층평가의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어, 재정사업 심층평가가 정책평가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함을 보여줌

## 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 1) 개요

- 문화영향평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그 계획과 정책이 국민의 문화향유수준, 삶의 질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서, 「문화기본법」 제5조4항에 근거하여 실시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기준 및 방법·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2) 평가대상

- 「문화기본법」 제 5조 4항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대상 선정기준은 정책 및 계획은 목적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국가·자치단체 운영과 국민생활 차원에서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적 권리 구현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분야와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함
  -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밀접도 높은 분야와 정책 및 계획
  - 국가와 집단의 경쟁력과 상관성이 높은 정책 및 계획

〈표 3〉 평가대상 선정기준

구분	내용
국민일상생활과의 밀접성	- 국민의 기본생활(의/식/주), 교육, 여가생활 등과 밀접도가 높은 분야의 정책 및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 - 여가정책(시설 및 프로그램) 및 계획, 미디어방송관련정책, 교육정책 및 계획, 주거시설 및 도시환경 관련 계획 및 정책 등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위상 및 경쟁력 상관성	- 글로벌 시대에 대응 국가의 문화정체성 및 문화적 가치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정책과 계획을 중심으로 선정 - 국제 관계, 지역발전 및 중장기계획

- 대상선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문화영향평가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협회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설정함
  - 선정기준에 따른 항목별로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세부선정기준 마련
  - 관련시설 부분은 규모 및 관심도, 중요도 등을, 프로그램은 규모와 참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국민일상과 국가 및 지역운영차원에서 문화영향평가 대상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국가 및 국민차원에서 중요도와 관심도가 높은 대규모 정책 및 계획일수록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평가대상 선정

- 예를 들어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이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하는 예산규모 이상의 계획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등 다각적 검토 필요

<표 4> 평가대상

기준	대상		내용
국민일상생활과의 밀접성	여가	시설	여가문화시설 계획 및 정책
		프로그램	여가문화정책 및 계획 - 방송, 영화, 이벤트(축제포함), 시설 내 프로그램
	기본	시설	주택 및 도시, 기반시설 조성 계획 및 정책
		프로그램	주거, 식품 및 위생
국가 및 지역의 위상 및 경쟁력 상관성	대외 교류	시설	국내외에 관광/한류단지조성
		프로그램	대외협력프로그램, ODA 프로그램 - 아시아동반자, 문화ODA, 세종학당, 한류문화정책
	산업 경제	시설	산업시설 및 단지조성
		프로그램	FTA, 유라시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등
	인력 양성	시설	교육시설 계획 및 정책
		프로그램	중장기 공교육정책 및 평생교육 정책 등 - 교재, 교육대상, 커리큘럼

### 3) 평가기준 및 지표

- 국내외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 흐름을 토대로 국정운영 철학인 문화융성과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문화적 권리와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 국가·지역과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문화영향평가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함께 공통된 기준을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
- 문화여가 분야 이외의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계획 및 정책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됨으로써 일상생활 속 문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함
  - 포괄적인 영역까지 문화적 역량과 가치가 확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면서 종합적인 지표체계 구성
- 문화영향평가는 규범적 성격의 평가제도로써 기존의 평가표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적이며

정량적인 지표를 배제하고 추구하는 가치 지향적인 규범적 지표의 성격을 가짐

- 추구하는 가치 중심의 정성적 지표를 사용하며, 평가자의 주관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대상 선정과 평가 방법 등에 있어 통계, 만족도 등 사업추진배경 및 현황자료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객관성 및 신뢰도를 담보하여 나감

- 국민일상생활과 국가운영 차원에서 계획과 정책이 국민개개인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 및 집단의 문화정체성 보호를 통해 미래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한국문화영속과 세계문화를 리드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가진 국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함
  - 핵심가치인 문화기본권 및 문화정체성 보존을 위하여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 측면에서 정책 및 계획 주체들이 추진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함
  - 정책 및 사업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하며, 일차적으로 공통된 지표를 구성하여 점진적으로 대상별 평가지표를 구체화하여 나감

#### 가. 지표구성 체계

- 지표체계는 <주제(핵심가치) - 부주제 - 지표> 등 3단계로 구성함
  - 지표의 구성단계는 정책실천과정으로 이해 가능하며, 지표의 구성 및 세부항목은 평가분야·정책·계획·프로그램·시설 등 평가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표개발이전에 평가대상의 특징을 파악하여 지표의 일반성과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평가대상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함

#### 나. 지표구성 과정

- 주요지표는 국민의 일상과 국가운영측면으로 구분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한 뒤 현재 문화기본법 및 국정운영철학 등에서 당면한 이슈들을 연계하여 주제별로 세부지표를 설정하여 나감
  - 지표개발 과정에서 참여집단의 모집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시행과정에서 평가목표와 실효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여 나감

#### 다. 지표의 범주화

-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역량강화와 문화적 격차 해소 및 자율적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국가와 지역, 개인과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

<표 5> 지표범주화에 따른 세부지표 개발

정책목표	상위지표	하위지표
문화기본권 보장	평등/다양성	문화격차 및 차별해소, 문화향유 및 창작 기회 균등
	자유/자율	창작/표현의 자유 및 자율성 보장
	소통/교류	문화공유, 이해/학습, 발산
문화정체성 확립	정신문화/관습	사회/역사인식, 공동체문화 공유/확립
	문화유산/계승	문화유산보존, 진흥
	상생/발전	새 시대에 대응 문화변화 발전

라. 세부지표

- 문화영향평가의 정책목표 및 핵심가치를 담보하는 규범적 가치로 평등/다양성, 자율/자유, 소통/교류, 정신문화/관습, 상생/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대상별로 관련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 직접 측정된 자료나 정보를 바탕으로 계량화하여 지수로 나타내는 형태를 벗어나 정책목표 및 핵심가치 제고 여부를 서술형으로 개발하여 평가함
  - 시설 측면: 공간 및 시설조성으로 인하여 규범적 가치가 부정 또는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 프로그램 측면: 계획이나 정책내용이 평가목표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실천의지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함

<표 6> 평가항목(예)

정책목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문화기본권 보장	평등/다양성	문화적/지역적 격차를 조장하는가? - 문화의 지역이나 집단 간의 불균등을 초래하고 있는가? 문화적 차이와 문화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는가?
		- 특정 집단 등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가? 문화향유/창작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 특정한 이유로 소외당하고 있는 집단이나 계층이 있는가? 문화향유 및 창작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자율권을 저해하는가?
	자유/자율	새로운 문화/트렌드 접촉 및 타 문화 간의 소통/교류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가?
	소통/교류	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에 저해 또는 보존을 위한 노력을 내포하고 있는가?
문화정체성 확립	정신문화/관습	집단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공동체/지역 의식)을 저해하고 있는가? 전통적 관습/통념(예: 가족관계, 충효예 등)/가치관 해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문화유산/계승	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에 저해 또는 보존을 위한 노력을 내포하고 있는가?

정책목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전통적인 문화경관을 보존/발전하는데 저해요소가 내포되어 있는가?
	상생/발전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상생발전을 저해하고 있는가?
		우리 문화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문화융합 및 복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발전을 방해하고 있는가?

#### 4) 평가주체

- 평가의 독자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책임담당 관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함
  - 평가 주관부처, 각 부처 및 기관별로 평가담당조직, 평가실행조직 등을 체계화함
- 문화영향평가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자체평가, 선정평가 등 2가지로 구분하여 중앙 및 지방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함
  - 지방정부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평가담당관을 지정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문화영향평가위원회에서 국민문화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 및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때에 따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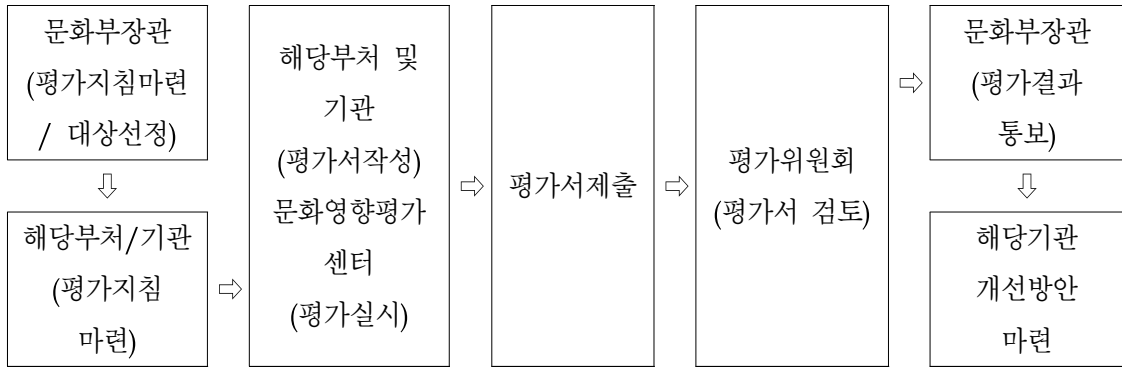
#### 5) 평가방법 및 절차

- 평가 시기는 정책 및 계획에 대하여 시행 전 사전평가로 진행함
  -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시행과정에서 규범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긍정적 영향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
- 평가결과 평가대상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의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평가운영방안을 검토함
- 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짐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에 평가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책임담당관은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 평가 결과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책임담당관에서 제출함
  - 제출된 평가결과보고서는 문화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개선안을 해당 기관에 통보함

여 정책 및 계획에 반영되도록 함

- 해당부처 및 기관은 반영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함

<표 7> 평가절차



### 6) 평가결과 활용

- 관계 부처에 송부하여 정책개선 및 재정운용, 홍보마케팅 자료로 활용함
- 국제 관계 속에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국가 문화비전과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함

## 3.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 1) 개요

- 개념: 사업 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음
- 근거: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2015년부터는 자율평가에 대한 부처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관대화 평가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평가를 강화하였고, 사업별 전수 확인·점검 방식에서 메타평가방식으로 전환하여 부처의 평가내용에 대해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사업별 환류방안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또한 평가결과 ‘미흡’ 이하 사업의 사업비 삭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성과관리 개선대책 또는 사업구조 개선대책 등의 제도개선대책을 시행하는 등 환류방식을 다양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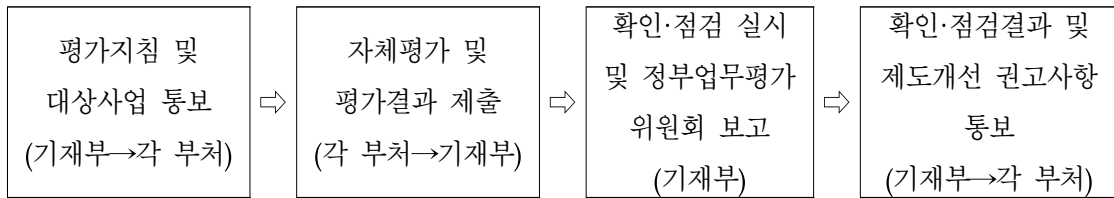
## 2) 평가 대상사업

-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은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함
  - 다만, 평가의 실익이 적은 경우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함
  - ‘사업별 평가제외 기준(예시)’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사업 등이 있음
- 평가대상사업은 현행 프로그램 예산구조상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세부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지정 가능함
- 성과계획서상 전체 성과목표 중 1/3(3년 주기)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내 전체 관리과제(단위사업)를 평가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3년마다 1회의 주기로 평가함
  - 가급적 동일한 성과목표내의 사업이 같은 연도에 평가될 수 있도록 전체 성과목표의 구조 및 사업별 평가주기 등을 고려, 사전에 계획함
- 자율평가 결과 전년도 ‘미흡’ 이하 사업의 경우, 사업구조개선 등의 제도개선대책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의 이행 점검을 위해 다음 연도에 의무적으로 수정평가를 실시함
  -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평가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부과 (예산 10% 이상 삭감 등)

## 3) 평가절차 및 내용

- 사업 수행부처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수행함
  - 자체평가 수행 후 자체평가보고서, 근거자료,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 기획재정부는 부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메타평가 방식으로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사업별로 실시함

<표 8> 메타평가 절차



- 평가결과는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사업별로 5단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로 등급화함
  - 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급 간 점수 및 비율을 만족하도록 상대평가를 실시함
  - 다만, 평가대상 사업수가 5개 이하인 부처는 상대평가 적용에서 제외하고, 기획재정부 확인·점검을 통해 등급을 최종적으로 확정함
- 부처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부처 조치사항으로는, 평가결과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지출구조 조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 특성 및 미흡원인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 삭감이 곤란한 경우에는 1) 성과제고 및 집행관리 개선대책 등 성과관리개선대책 또는 2) 사업 통·폐합 등 사업구조 개선 또는 제도개선대책을 제시함
- 부처 자체평가에 대해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사업별 환류방안의 합리성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확인·점검을 실시함
  - 부처의 평가내용이 적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처의 평가결과를 최종 평가결과로 확정함
  - 부처의 평가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별 확인·점검을 통해 등급을 최종확정함

#### 4) 평가결과의 환류

- 부처 자체평가에 따른 조치계획 및 확인·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별 환류대책과 기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등을 부여함
- 사업별 평가결과의 환류: 사업의 특성, 미흡의 원인 등을 감안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제도개선대책 등을 추진함
  -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며,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10% 이상 삭감함
  - 다만 사업특성 및 미흡원인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삭감이 곤란한 경우,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시행함

- 기관별 평가결과의 환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기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함
  - 우수 부처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처의 평가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차년도 미흡비율 하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 미흡 부처의 경우 부처 기본경비 등 삭감, 차년도 미흡비율 상향 등의 불이익을 부과함

#### 5) 평가지표 및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 평가지표: 계획, 관리, 성과·환류의 단계별 11개 공통지표, 정보화 특성지표 2개로 구성
  - 사업 부문(2개) : 일반재정, 정보화

〈표 9〉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일반 재정	정보화
계획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2.0	2.0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0	3.0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0	5.0
		소 계	10.0	10.0
	성과계획의 적정성(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0	5.0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5.0	5.0
소 계		10.0	10.0	
관리 (3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5.0	12.0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0	4.0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0	8.0
		3-정보화①. 정보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영 및 개선하고 있는가?	-	3.0
		3-정보화②.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관련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	-	3.0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일반 재정	정보화
		는가?		
		소 계	30.0	30.0
성과 /환류 (50점)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0	30.0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 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10.0	10.0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 에 환류하였는가?	10.0	10.0
		소 계	50.0	50.0
계		100		

(1) 사업계획의 적정성

<표 10> 사업계획의 적정성 측정방법

평가지표	측정방법	평가근거/자료
1-1. 사업목적이 명확하 고 성과목표 달성 에 부합하는가?(2 점)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 며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설정 했는지 여부를 확인	- 성과계획서, 사업설명자료 등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 업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 는 자료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 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3점)	- 사업이 공공 및 민간부문의 타 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지 를 확인(세부사업별로 모두 검 토)	- 중복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다른 사업과의 차별 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유사사업간 조정절차를 통한 협의내용 등 관련 자 료
1-3. 사업내용이 적정하 고 추진방식이 효 율적인가?(5점)	- 해당 사업의 내용 또는 구조, 추진방식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 해 효율적이고 적정한지를 확인 (세부사업별로 모두 검토)	- 현행 사업방식의 효율성·합 리성 입증 자료

(2) 성과계획의 적정성

<표 11> 성과계획의 적정성 측정방법

평가지표	측정방법	평가근거/자료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5점)	-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 확인	-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간에 연계성이 있음을 입증 -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14년도 성과계획서 - 만족도 조사 지표의 경우 만족도조사 설문지 제출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5점)	-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사업성과목표를 달성하거나 달성하는 추세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인지 확인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자료(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포함) -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14년도 성과계획서

(3) 사업관리의 적정성

<표 12> 사업관리의 적정성 측정방법

평가지표	측정방법	평가근거/자료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15점)	-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확인하여 4단계(아니요/어느 정도/상당한 정도/예)로 점수부여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 자료 - 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실적집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회계검사보고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등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5점)	- 사업추진 주체가 사업의 관리 및 집행에 대해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접	-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 자료 -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

평가지표	측정방법	평가근거/자료
점)	검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3단계(아니요/어느 정도/예)로 점수 부여	영 실적 자료(계획이 아닌 모니터링 점검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 필요)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과정에서 환경변화, 예기치 않은 문제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였는지 확인하여 3단계(아니요/어느 정도/예)로 점수부여</li> <li>-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 및 사업 효율성 제고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해당 실적이 있을 경우 가점(3점)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과 해결 실적</li> <li>- 시행과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해결 실적</li> <li>- 구체적인 비용절감 방안/효과 관련 자료</li> <li>- 예산성과금 인정 자료</li> </ul>
3-정보화①. 정보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영 및 개선하고 있는가?(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별 체계적인 성과측정과 이에 따른 효율적 개선노력이 있는지 여부</li> </ul> <p>※ 평가대상사업에 포함된 정보시스템 중 운영기간이 5년 이상(서비스 개시년도가 2010년 이전)인 정보시스템에 대해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시스템별 운영실태 등 성과측정 자료</li> <li>- 정보시스템별 운영 개선계획 및 실적 관련 자료</li> </ul>
3-정보화②.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관련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는가?(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평가대상사업에 포함된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체계와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는지를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사업 내 정보보호 관련 예산 및 집행 세부내역(H/W, S/W, 인건비 등), 과거 3년간 보안관리 활동내역 및 정보보호침해사고 발생내역 등</li> </ul>

(4)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표 13>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 환류의 측정방법

평가지표	측정방법	평가근거/자료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리적으로 제시된 목표치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여 4단계(아니요/어느 정도/상당한 정도/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보고서 등 서오가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및 데이터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li> </ul>

평가지표	측정방법	평가근거/자료
	로 점수부여 - 성과계획서 상 관리과제가 포함된 상위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5점 감점	있는 관련 자료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10점)	- 사업추진을 통한 사업효과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여 3단계(아니요/어느 정도/예)로 점수 부여	-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 개선에 환류하였는가?(10점)	- 자체평가 또는 사업평가결과로 나타난 문제점 및 외부지적사항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3단계(아니요/어느 정도/예)로 점수부여	-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도출한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의 자료 - 사업추진 개선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

#### 4. 기획재정부 보조사업운용평가

##### 1) 개요

- 개념: 국고보조사업의 실효성과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고, 그 존속여부를 결정함
-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6조의2
- 평가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서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함. 2015년도는 국고보조사업 정비를 위하여 평가대상을 ‘당해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보조사업’에서 ‘전체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보조사업’으로 확대하였음
- 평가내용: 보조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규모의 적정성

##### 2) 평가방법

- 보조금 유형이 다양하므로 평가대상 보조사업을 유형화하고, 평가 시에는 유형별 평가 방식

적용

- 1단계 : 국고보조금 규모에 따라 보조사업 분류
  - 소규모사업 : 50억 이하 사업
  - 중규모사업 : 50억 ~ 200억 사업
  - 대규모사업 : 200억 초과 사업
- 2단계 : 보조금 규모별로 ‘보조사업의 타당성 평가 - 관리의 적정성 평가 - 규모의 적정성 평가’ 로 평가방식 차별화

(1) 소규모사업 (‘보조사업의 타당성’에 중점)

- 계속사업 또는 일몰제 적용 여부만 판정
  - 사업기간이 6년 이상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의 타당성 신중 검토

(2) 중규모사업 및 소규모 계속사업 (‘보조사업의 타당성+관리의 적정성’에 중점)

- 중규모 사업: 보조사업의 타당성 평가
- 중규모 및 소규모 계속 사업: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 평가
  - 보조사업자의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평가
  -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공모절차 준수여부 평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준수했는지를 평가
  - 보조사업 관리 체제 전반에 관한 평가
  - 중앙부처가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및 사업비 규모에 대한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

(3) 대규모사업 (‘보조사업의 타당성+관리의 적정성+규모의 적정성’에 중점)

- 보조사업의 타당성 평가
-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 평가
- 보조사업 규모의 적정성 평가
  - (i) 「보조금법 시행령」의 [별표 1]의 기준보조율 준수 여부, (ii)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 해당부처의 자체 기준 및 산정 절차의 적정성 평가
    - 현행 기준보조율과 부처 자체 산정 보조율의 적정성 등 검토
  - (ii) 계속사업/다년도 사업의 경우 중장기 소요예산의 산정 방식과 수준의 적정성 검토

## 3) 평가절차

## (1) 1차 평가(서면 평가)

- 부처가 제출한 기초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서면평가 실시
  - ① 폐지 확정 대상사업, ② 폐지 검토 대상사업, ③ 계속사업 판정

## (2) 2차 평가(서면평가)

- 기초조사보고서 및 추가요청 자료 그리고 서면 질의답변을 통해 규모가 중규모 이상 보조사업과 소규모사업 중 1차 평가에서 폐지 검토 대상사업과 계속사업으로 판정 받은 사업에 대해 서면평가 실시
  -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사업방식 변경, 단계적 감축, 정상추진 판정

## (3) 3차 평가(대면평가)

- 소명의견서 및 서면 질의답변을 통한 2차 평가 결과 ‘정상추진’ 이외의 판정사업에 대해 대면평가 실시
  -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사업방식 변경, 단계적 감축, 정상추진에 대한 최종판정

## (4) 조정회의

- 15인으로 구성된 「평가대상사업 조정위원회」에서 각 평가단계별로 평가위원들이 제시한 쟁점사업에 대한 조정평가 실시
- 조정내용: 평가 일관성 유지 및 평가 전문가 패널의 객관적인 쟁점사항 논의
- 조정위원의 구성: 평가단장 1인, 총괄간사 1인, 분과장 4인, 각 분과별 평가위원 2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업담당자 등 총 15인
- 결과물: 조정결과 평가보고서에 반영

## 4)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

<표 14> (1)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별 평가내용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내용*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연계성이 강하고 구체적인지를 평가
1-2. 보조사업 목적의 명확성과 타당성	- 보조사업으로써 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 지를 평가
1-3. 보조사업 구성(내역사업 등)의 명확성과 실효성	- 보조사업 구성(내역사업 등)이 명확하고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는 지 확인
2.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신청절차와 교부절차 그리고 보조사업 관리 전반에 관한 적정성 확인
3. 규모의 적정성	
3-1. 보조율의 합리성	-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 준수여부와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 현행 보조율 산정이 합리적인 지를 검토
3-2.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의 합리성	- 현재 보조금 규모가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지를 검토

<표 15> (2) 평가결과 및 내용

평가결과	내용
① 즉시 폐지	○ 해당 보조사업의 예산 미반영 대상사업
② 단계적 폐지	○ 사업목적 달성 시점을 명시 할 필요가 있는 사업 (일몰기한 설정)
③ 통폐합	○ 유사사업 및 관련사업과 통합하여 시행할 사업 * 통폐합 결론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예산을 요구해 온 경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 직권으로 사업 통폐합 검토
④사업방식 변경	○ 보조사업 추진절차 정비가 필요한 사업
⑤ 단계적 감축	○ 보조율 조정이 필요한 사업
⑥ 정상추진	○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5) 보고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별 판단지침

(1) 보조사업의 타당성

<표 16>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

착안사항	착안사항 별 판단요령
1-1-①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이 해당 보조사업과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 강인가를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된 법령과 규칙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구속력을 부여하면 10점</li> <li>- 제시된 법령과 규칙이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5점</li> <li>- 제시된 법령과 규칙과 해당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막연할 경우 0점</li> </ul>
1-1-②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과의 일치성을 보이는지를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내용과 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일치하면 10점</li> <li>- 사업 내용과 법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면(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5점</li> <li>- 사업 내용과 법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지 않으면 0점</li> </ul>

※ 1-1-①이 '0' 점이면 1-1-②는 자동적으로 '0' 점 처리

1-2. 보조사업 목적의 명확성과 타당성

<표 17> 1-2. 보조사업 목적의 명확성과 타당성

착안사항	착안사항 별 판단요령
1-2-① 보조사업(세부사업 기준)의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한 지 고려 * 보조율이 80% 이상인 경우 국가적 관점의 사업 필요성이 커야 함 * 보조율이 40% 이하인 경우 국가가 굳이 관여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의 국가적 관점의 필요성이 높으면 10점</li> <li>- 보조사업의 국가적 관점의 필요성이 중간수준이면 5점</li> <li>- 보조사업의 국가적 관점의 필요성이 낮으면 0점</li> </ul>

작안사항	작안사항 별 판단요령
<p>1-2-②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와 해당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는 지 고려</p> <p>* 보조사업의 1차적(직접적) 수혜자와 2차적(간접적) 수혜자를 구분해서 평가하고 외부효과가 클수록 2차적 수혜자가 많은 사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적 수혜자와 2차적 수혜자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면 10점</li> <li>- 1차적 수혜자와 2차적 수혜자의 범위가 어느 정도 광범위하면 5점</li> <li>- 1차적 수혜자와 2차적 수혜자의 범위가 좁으면 0점</li> </ul>
<p>1-2-③ 보조사업의 수혜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는 지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의 수혜자(1차적, 2차적)에 대한 설명이 매우 명확하면 10점</li> <li>- 보조사업의 수혜자(1차적, 2차적)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명확하면 5점</li> <li>- 보조사업의 수혜자(1차적, 2차적)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하면 0점</li> </ul>
<p>1-2-④ 보조사업 수행이 직·간접적인 보조사업 수혜자에게 그 혜택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지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적 수혜자와 2차적 수혜자에게 전달된 보조사업의 혜택이 매우 명확하면 10점</li> <li>- 1차적 수혜자와 2차적 수혜자에게 전달된 보조사업의 혜택이 어느 정도 명확하면 5점</li> <li>- 1차적 수혜자와 2차적 수혜자에게 전달된 보조사업의 혜택이 불명확하면 0점</li> </ul>
<p>1-2-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한시적 운영이 필요한 지 또는 지속적 운영이 필요한 지를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적 근거와 분석에 기초하여 사업기간이 제시되면 10점</li> <li>- 어느 정도 수준의 근거와 분석에 기초하여 사업기간이 제시되면 5점</li> <li>- 객관적 근거와 분석이 결여되어 사업기간을 제시하면 0점</li> </ul>

<표 18> 1-3. 보조사업 구성(내역사업 등)의 명확성과 실효성

착안사항	착안사항 별 판단요령
1-3-① 보조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등)이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면 10점</li> <li>- 보조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이 어느 정도 필요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면 5점</li> <li>- 보조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거나 필요성이 약한 내역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0점</li> </ul>
1-3-②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할 때 보조사업 목표 달성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를 고려  * 소액사업 정리에 중점을 두고 판단 * 행정비용 (i) 중앙부처의 보조사업 선정 비용 (ii) 재정당국의 보조사업 심사 비용 (iii) 중앙부처의 보조사업자 선정 비용 (iv) 중앙부처의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비용 (v) 중앙부처의 보조사업자 결산처리 및 감사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록 소액이지만 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반드시 그 금액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만 하고 또한 그 혜택이 행정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10점</li> <li>- 비록 소액이지만 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해당 보조금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비교적 명확하게 있는 경우 5점</li> <li>- 소액이어서 자치단체 자체 수익금으로 충분히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경우 0점</li> <li>- 소액이어서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혜택이 보조사업의 행정비용보다 적은 경우 0점</li> </ul>

(2) 관리의 적정성

〈표 19〉 2-1.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착안사항	착안사항 별 판단요령
2-1-① 중앙부처가 사업을 신청한 보조사업자의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는지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자 선정절차가 있고 그에 따라 선정한 증거가 있으면 10점</li> <li>- 보조사업자 선정절차는 있으나 그 절차를 따른 증거가 없으면 5점</li> <li>- 보조사업자 선정절차가 없는 경우 0점</li> </ul>
2-1-② 중앙부처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 관리체계가 있고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10점</li> <li>- 구체적 관리체계는 있으나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들면 5점</li> <li>- 구체적 관리체계가 없는 경우 0점</li> </ul>
2-1-③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했는지를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를 철저히 검토했으면 10점</li> <li>-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를 어느 정도 검토했으면 5점</li> <li>-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으면 0점</li> </ul>
2-1-④ 보조사업의 사업비 규모에 대한 검토했는지를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비용구조(예: 토지보상비 등)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 각각의 비용에 대하여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했으면 10점</li> <li>- 보조사업의 사업비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도출하였으면 5점</li> <li>- 보조사업의 사업비에 대한 계산을 관행적으로 하였거나 대략적으로 한 경우 0점</li> </ul>

※ 2-1-③ 배점 방법

-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무조건 ‘0’ 점 처리
- 구글 등에서 해당 사업명과 유사한 사업명들을 검색한 후 상당한 중복이 의심되지만, 기초조사보고서에는 중복사업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0’ 점 처리
- 구글 등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검색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했으면 ‘5’ 점 부여

- 구글 등에서 유사한 사업이 검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조사보고서에서 중복이 없다고 되어 있으면 ‘10점’ 부여
- 기초조사보고서에서 유사한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했으면 ‘10점’ 부여

(3) 규모의 적정성

3-1. 보조율의 합리성

-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있는 경우

<표 20> 기준보조율 있음

착안사항	착안사항 별 판단요령
3-1-① 현행 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 지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 경우 10점</li> <li>-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0점</li> </ul>

-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

<표 21> 기준보조율 없음

착안사항	착안사항 별 판단요령
3-1-① 현행 보조율이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는 지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보조율이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면 10점</li> <li>- 현행 보조율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산정되었으면 5점</li> <li>- 현행 보조율이 관행적이고 대략적으로 산출되었으면 0점</li> </ul>

3-2.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의 합리성

〈표 22〉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의 합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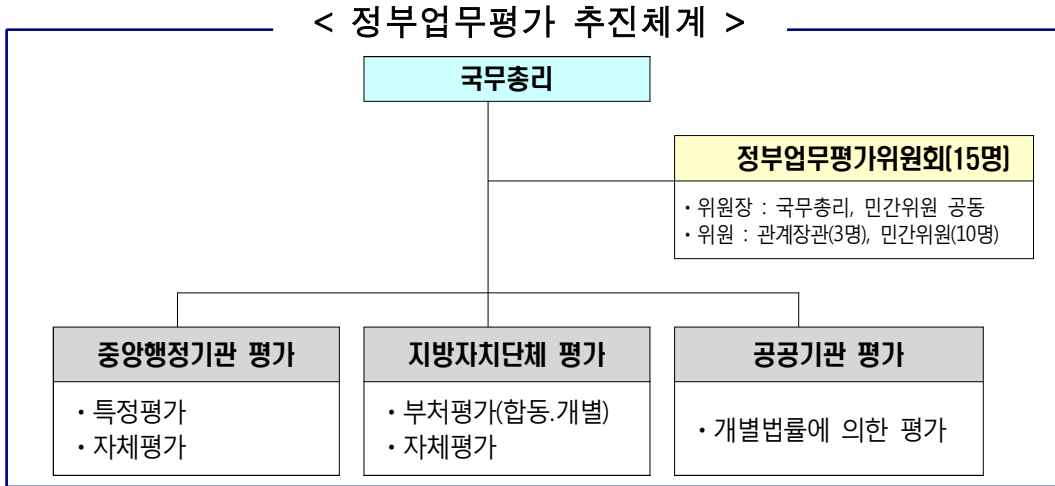
착안사항	착안사항 별 판단요령
3-2-① 단기(0~3년), 중기(3~6년), 장기(7년 이상) 사업들에 대한 재정 소요액 추계가 되어있는 지를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중기, 장기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재정소요액 추계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면 10점</li> <li>- 단기, 중기, 장기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재정소요액 추계가 다소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면 5점</li> <li>- 단기, 중기, 장기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재정소요액 추계가 관행적으로 하였거나 대략적으로 한 경우 0점</li> </ul>
3-2-② 이러한 재정소요액이 적정한 지를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소요액의 중장기 부담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계되었으면 10점</li> <li>- 재정소요액의 중장기 부담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다소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계되었으면 5점</li> <li>- 재정소요액의 중장기 부담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관행적으로 되었거나 대략적으로 되었으면 0점</li> </ul>

5. 국무조정실 국정과제 심층평가

1)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 현재의 정부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크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평가로 이루어지며 이중 중앙행정기관평가에서 특정평가와 자체평가가 이루어짐

<그림 1>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 2) 국정과제 평가의 목적

- 국정과제 평가는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핵심시책과 관련된 과제들에 대하여 기관 별로 대표적 정책과제의 추진노력 및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국정운영방향에 부합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 3) 국정과제 평가의 방향 및 대상과제 선정

- 특정평가의 평가대상과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140개)와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구성되며 여기에 추가로 홍보, 정부 3.0, 협업, 대국민 업무태도, 특정시책등을 가감점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러한 평가대상과제의 내용과 가중치는 해마다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며 역대정권 별로 국정운영 강조점에 따라 평가대상과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음
- 다음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특정평가에 해당하는 핵심과제평가의 선정기준과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며 박근혜정부의 연도별 평가대상과제의 변화를 보여줌

<이명박 정부의 평가대상과제 및 선정기준>

□ 평가대상과제

- (선정기준)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각 부처의 정책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핵심정책과제 위주로 선정
  - 100대 국정과제 관련 과제
  -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및 부처별 연두업무보고 핵심실천과제
  - 국민적 관심도 및 파급효과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과제범위) 각 부처의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핵심전략목표를 선정
  - 단, 당해 전략목표 중 중요도가 낮은 성과목표는 배제하고, 타 전략목표 중 연관성이 밀접한 성과목표를 포함
  - \*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의 체계로 구성
- (과제 수) : 40개 기관의 총 98개 과제
  - 장관급 기관 각 3개, 차관급 기관 각 2개로 하되, 일부 장관급 기관\*은 기관 규모와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각 2개로 탄력 운영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평가 개요 >

평가종류	평가대상(평가부문)	평가시행기관
자체평가	주요정책 부문 재정사업 부문 행정관리역량 부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체평가위원회)
특정평가	① 핵심 과제 ② 일자리 과제 ③ 녹색성장 과제 ④ 정책관리 역량 ⑤ 규제개혁 ⑥ 정책홍보 ⑦ 국민(정책·민원) 만족도	국 무 총 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그림 2> 현정부의 특정평가 선정기준 및 대상과제

2013년		2014년	
① 국정과제(140개)	60	① 국정과제(140개)	50
② 국정과제 지원	40	② 규제개혁	25
■ 일자리 창출	10	⇒ ③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25	※ 가감점 반영(±15점) - 홍보, 정부 3.0, 협업, 대국민 업무태도, 특정시책
■ 규제개선	10		
■ 부처 간 협업도	8		
■ 정책홍보	8		
■ 특정시책 이행관리	4		

4) 심층평가

- 현 정부의 특정평가가 과거정부의 평가와 차이를 보이는 점은 심층평가부분으로 이는 연말평가와 별도로 고질적·구조적 문제가 있거나,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심층평가 실시한다는 것임
- 평가 후 관련 기관별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개선상황 지속 점검·관리하는 것이 목적임

5) 평가항목 및 지표의 변화

- 과거정부의 핵심과제 평가지표는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목표달성의 3가지 분야에 8가지의 세부지표로 평가를 했던 반면 현 정부에서는 집행이행도와 성과목표달성도(성과지표달성도와 정책효과)를 정량/정성의 기준으로 단순화 하여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세부내용은 부록 1 참조)

## 제 2절 시사점 도출

- 사업평가는 사업성과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이나 제도개선 등을 위한 정책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평가의 독자성,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평가추진기구를 체계적으로 구성·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은 평가단에 실무자를 포함하여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할 필요가 있음
- 사업평가는 평가목적 및 평가대상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체계화하여야 함. 즉, 평가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사전평가 또는 사후평가의 방식을 채택하고, 평가대상사업을 성격·사업규모·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며, 각 대상사업 유형별로 적절하고 타당한 평가방식을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평가방법의 체계화를 꾀해야 함
- 최근의 사업평가는 정량적 분석방법과 함께 정성적·비계량적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 예컨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사전대상사업 지정 후 학계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층평가단이 계량적,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사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하며, 문화영향평가는 정책목표 및 핵심가치 제고 여부를 서술형으로 개발하여 평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기관평가 역시 전년 대비 개선도 또는 변화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비계량지표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음
  - － 비계량적 지표도 정밀한 지표개발과정을 거쳐 객관성 및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평가결과가 예산 또는 사업비 삭감에 반영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과제고방안, 제도개선방안, 사업추진개선방안의 마련 등 그 환류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음
  - － 예컨대,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의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경우,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지출성과제고방안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각 부처에서 후속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 － 또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경우, 부처 자체평가결과 ‘미흡’ 이하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지출구조 조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다만, 사업특성 및 미흡원인을 고려할 때, 사업비 삭감이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개선대책 또는 사업구조개선 또는 제도개선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음
- 평가활용의 측면에서, 사업평가를 통해 제시되는 평가결과는 이후 정책 및 사업에 적용 및 반영됨으로써 평가의 취지와 목적을 더욱 제고할 수 있으므로, 평가결과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는 2014년부터 각 부처 후속조치계획 수립 및 협의회 보고 의무화, 매 반기 세부 추진과제 단위별 이행실적 점검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부처별 보고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제 3절 기금평가 유사 사례분석

-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의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간 시행되는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제도로서, 일반적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공사, 공단 등)의 평가와는 달리 ‘위원회’ 형식의 법적 성격을 고려, 문화부와 문화예술위원회 간 상호 협의 하에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제도임
-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제도와 유사한 평가제도는 국내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단, 동 평가와 동일한 평가방식을 취하고 있는 기관으로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있으나, 성과평가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관계로 사례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본 장에서는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의 유사사례 분석을 위하여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함. 이들 사례들은 각 기금 사업의 성격과 평가방식이 다르지만, 본 연구의 취지에 맞추어 부분적으로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함
  - 첫째, 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기금 사업평가 사례에서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성과지표의 운용을 살펴봄. 사업부문의 성격에 따라 계획-집행-성과 간 배점기준 및 세부 운용상 나타나는 가중치 적용 등을 통해 당해 사업이 갖고 있는 특성을 평가 현실에 최대한 부합시키려는 노력들을 살펴봄
  - 둘째, 녹색기후기금은 현재 제도 조성단계에 있지만, 이들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기금의 집행 모니터링과 평가 문제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기금운영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평가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음. 녹색기후기금의 평가 방식의 문제를 접근하는 다양한 논의는 현재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에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협력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를 살펴봄. 지역협력형 사업은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가 실시하는 각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지역문예진흥사업 평가에 대한 평가로서 일부 문화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간 문예진흥법 제35조(성과의 평가)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음. 동 사업평가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다양성, 지역별 여건의 특성 등이 어떻게 사업평가에 반영되고,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는 각 지역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어떠한 평가방식 및 절차를 통해 메타평가

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됨

## 1. 국민체육진흥기금

### 1) 개요

#### □ 설립배경

-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의거,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비용, 체육인의 복지향상, 체육단체 육성,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약분야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운영함

#### □ 운영현황

- 주 5일 근무제, 국민소득 향상, 고령화사회 도래, 소외계층 체육활동 요구증가 등 체육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정부 체육부문 예산이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내외로 미약하며 규모 또한 감소 추세임

〈표 23〉 체육 예산 대비 국민체육진흥기금 규모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체육예산 (비중)	2,135억 (35.6%)	1,527억 (22.4%)	1,556억 (19.2%)	1,514억 (17.3%)	1,715억 (16.3%)	1,486억 (14.2%)	1,342억 (10.2%)
국민체육 진흥기금 (비중)	3,860억 (64.4%)	5,295억 (77.6%)	6,568억 (80.8%)	7,251억 (82.7%)	8,799억 (83.7%)	8,951억 (85.8%)	11,812억 (89.8%)
총계	5,995억	6,822억	8,124억	8,765억	10,514억	10,437억	13,154억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2015)

-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 경쟁, 스포츠평가 사업을 통해 국민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으로 생활체육 육성, 전문체육 육성, 장애인체육 육성, 국제체육 교류증진 및 스포츠산업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함

#### □ 성과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금지원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성과평가를 실시함

〈표 24〉 2014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성과평가 분야별 예산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	'15년(계획)	'14년(실적)
생활체육	생활체육단체지원	75,437	61,163
	국민체력인증	6,748	5,611
	문화체육사업 지원	47,156	-
	시도생활체육지원	42,678	47,447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48,449	53,737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25,360	11,300
	기초생활체육저변확산 시원	13,500	1,000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43,827	-
	학교체육육성	34,967	34,650
	계	338,122	208,908
전문체육	대학체육회 지원	214,278	188,785
	주최단체 지원	94,311	-
	시도 전문체육	8,648	5,648
	체육인 복지사업	14,142	12,722
	계	331,379	207,155
국제체육 등	국제체육지원	19,838	20,047
	도평방지활동지원	3,429	4,199
	태권도진흥	10,220	7,197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	118,245
	태권도진흥재단 지원	19,200	19,439
	2015광주하계U대회 지원	42,130	81,915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	297,361	134,550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	20,000	-
	스포츠과학기술개발 조성	13,000	8,400
	체육과학연구 지원	2,023	2,187
	올림픽공원지원	19,446	17,471
	올림픽스포츠컴플렉스 조성	300	-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12,052	2,467	
	계	458,999	416,117
장애인체육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18,895	17,578
	장애인체육활성화 지원	33,798	28,565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	-	16,770
	계	52,693	62,913
	총 계	1,181,193	895,093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2015)

2)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

□ 평가 대상

- 기금운용계획 지출 보조사업 중 인건비, 시설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을 성과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은 2014년 기준 4개 부문, 245개 사업(4,312억원 규모)임

<표 25>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대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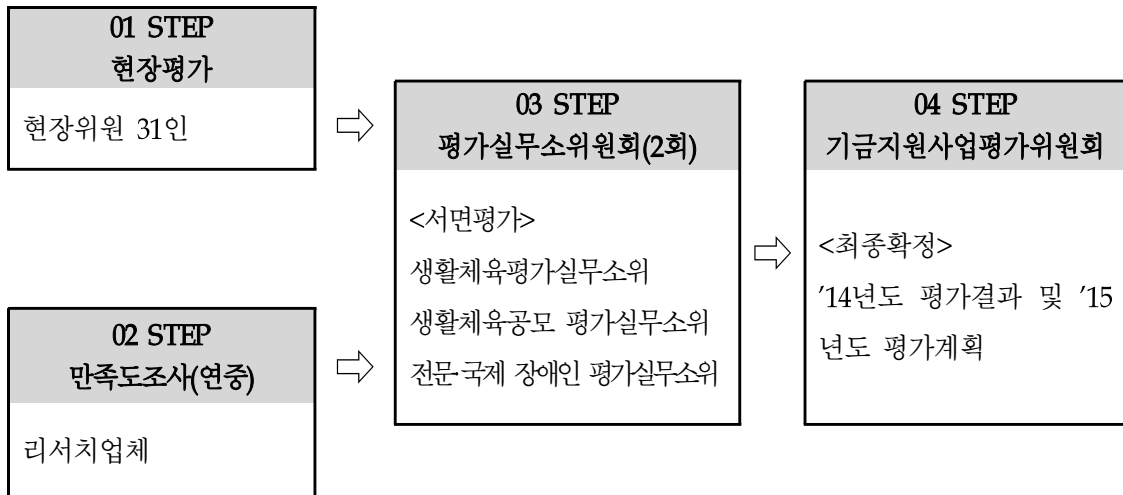
구분	사업수	사업명
생활체육	163개	(국민생활체육회)생활체육광장운영, 생활체육국제교류 등 21개 (국민체육진흥공단)운동장생활체육시설, 스포츠강좌 지원 등 5개 (기타단체)레저스포츠아카데미, 바둑보급 등 10개 (공모단체)노인건강체조보급, 유소년스포츠교실 등 73개 (지자체)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등 54개
전문체육	18개	(대한체육회) 기력향상지원비, 체육정보망 구축 등 17개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인복지사업 1개
국제교류	34개	(대한체육회)청소년체육교류, 국제체육교류 등 10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스포츠도핑방지활동지원 1개 (기타단체)코리아컵국제요트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19개 (지자체)대구국제마라톤대회,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 등 4개
장애인체육	30개	(대한장애인체육회)장애인체육홍보, 생활체육교실 등 12개 (기타단체)2014인천장애인아시안경기대회 등 2개 (지자체)시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16개 사업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2015)

- 단, 신규사업 선정 및 사업통합, 취소 등 사업계획변경으로 평가대상 사업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절차

<그림 3>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평가절차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2015)

- 01 STEP: 현장평가는 현장평가위원(31인)이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진행 및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02 STEP: 설문조사요원(리서치업체)이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기금수혜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을 설문조사함
- 03 STEP: 기금지원단체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계획단계 위주로 서면 평가를 실시함
- 04 STEP: 현장평가, 만족도조사, 평가실무소위원회의 서면평가 등을 참고하여 최종 평가결과 확정

□ 평가지표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방법으로 기재부가 제시하는 추세치, 목표부여, 연평균 성장률, 전년 대비 110% 상향 등의 방법을 활용
- 평가는 계획, 집행, 성과 3단계로 나누어 평가되며 분야별로 개별 특성을 반영하므로 실제 배점과 차이가 발생함
  - 먼저, 전문체육 및 국제교류 사업의 경우, 계획(25)-집행(35)-성과(40)의 배점을 함으로써 성과부문에 높은 비중의 점수배분을 하였음. 특히, 사업별 세부결과지표의 배점이 25점으

로 타 사업분야와 비교하여 높은 배점을 하고 있음. 이는 지원 및 교류사업의 특성상 성과부문에 대한 사업의 중요도가 높기 때문임

- 둘째, 생활/장애인 체육 분야의 경우, 계획(25)-집행(40)-성과(35)로 집행단계의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사업과 달리 집행단계에서 사업별 세부산출지표를 삭제하는 대신 현장평가에 높은 점수 비중을 부여하고 있음
- 셋째, 생활체육공모 부문의 경우 계획(20)-집행(60)-성과(20)로 집행단계의 배점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사업의 특성상 집행단계에서의 현장평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타 사업분야에 있지 않은 정산업무의 배점이 20점을 차지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대회의 경우 계획(35)-집행(35)-성과(30)으로 상대적으로 계획단계에 높은 배점을 두고 있음. 특히, 본 사업의 경우 주안점을 두는 것은 계획단계 중 (1) 사업목표·내용과 사업집행, 사업성과와의 충분한 연계성과 (2) 사업운영의 효율성 부분임. 이는 대규모 대회유치의 경우, 사업의 성격상 대회유치의 취지와 그 세부 내용들이 제대로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 대회유치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등이 성과평가에 주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임

〈표 26〉 2014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평가지표

단계	전문체육 /국제교류	생활/장애인체육	생활체육공모	대규모대회(100억)
계획 (서면평가)	①사업목표·내용과 사업집행, 사업성과와의 연계성은 충분하였는가?(5) ②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재원을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10) ③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5) ④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였는가?(5)	①(좌 동) ②(좌 동) ③(좌 동) ④(좌 동)	①(좌 동) ②(좌 동) ③(좌 동)	①사업목표·내용과 사업집행, 사업성과와의 연계성은 충분하였는가?(10) ②(좌 동) ③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10) ④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였는가?(5)
계	25	25	20	35
집행	보고 충실성	⑤보고는 시의적절하고, 신뢰할만한가?(5)	④보고는 시의적절하고, 신뢰할만한가?(15)	⑤보고는 시의적절하고, 신뢰할만한가?(5)
	산출 지표	⑥사업별 세부 산출지표 적용(10)	-	⑥사업별 세부 산출지표 적용(10)
	현장 평가	⑦현장평가(20)	⑤현장평가(25)	⑦현장평가(20)
	정산		⑥관련법령및지침에따	

단계	전문체육 /육체교류	생활/장애인체육	생활체육공모	대규모대회(100억)
적절성			라 정산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하였는가?(20)	
계	35	40	60	35
성과	결과 지표	⑧사업별 세부 결과 지표 적용(25)	⑧사업별 세부 결과 지표 적용(15)	⑧사업별 세부 결과 지표 적용(20)
	만족도	⑨참여자 만족도(15)	⑨참여자 만족도(20)	⑨참여자 만족도(20)
계	40	35	20	30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2015)

□ 평가방식

- 계획-집행-성과 등 단계별 평가는 기본적으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사업성과물 등을 토대로 사업분야별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며, 집행 및 성과단계에서는 현장평가 및 참여자 만족도 등의 평가가 병행됨
- 특히, 현장평가 및 참여자만족도는 그 결과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배점을 곱하여 점수를 산출, 점수 간격 간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음
  - 대부분의 만족도 결과가 보통 등 중간 부분에 수렴되는 현상을 감안, 그 이하는 가중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0%) 있으며, 보통 이상에 해당하는 50점 이상의 구간부터 적정 구간 별 가중치 적용에 차이를 주고 있음
  - 이러한 방법은 보통 이상부터 매우 만족 사이에 나타나는 일련의 점수들 간 미세한 결과 값들에 대해 차별화를 부각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 만족도 조사에서 일정정도 이상의 구간은 어느정도 유사하게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감안, 점수대별로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사업간 만족도 결과의 차이를 보다 용이하게 식별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표 27> 국민체육진흥기금 현장평가 및 참여자 만족도 점수산출 방법

달성기준	50점 미만	50점 이상 ~65점 미만	65점 이상 ~75점 미만	75점 이상 ~85점 미만	85점 이상
가중치	0%	50%	70%	80%	100%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2015)

- 산출지표 점수 산출방법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해당 사업의 목표치 달성여부에 따라 획일적인 점수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목표치 달성도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점수를 산출한다는 것임
  - 해당 사업별로 부여된 목표치의 달성도(%)를 계산한 후 그에 상응하는 배점을 곱하여 점수 산출하며, 달성 기준별로 적용되는 배점은 아래의 기준과 같이 상이함
  - 이러한 평가방식의 접근은 연속적인 차원에서 달성정도를 제시해 주고, 그에 상응하는 점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사업 간 목표달성도의 이질성을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지양, 사업평가의 구체성과 차별성, 노력도의 정확한 반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의 기본적 전제는 목표치 달성정도의 계산이 용이해야 한다는 것임. 만약 목표치 달성정도 계산이 용이치 않을 때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음

<표 28> 국민체육진흥기금 결과지표(만족도 제외) 점수산출 방법

달성기준	60%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배점	0점	3.8점	7.5점	11.3점	15점
	0점	5점	10점	15점	20점
	0점	6.3점	12.5점	18.8점	25점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2015)

### 3) 평가운영

#### □ 평가조직 구성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지표별 평가 및 사업별 총평을 위한 평가실무소 위원회를 운영함
- 위원회는 12명으로 연구원 3명, 교수 7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됨
- 내부위원으로서 한국스포츠개발원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외부위원으로서 현장평가위원, 장애인정책 전문가, 사업평가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담당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하여 위원회를 구성함
- 이는 사업 평가과정에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위원들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특정관점을

지양하고, 복수의 관점으로부터 도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는데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특히, 관련 주무기관의 담당자와 관련 주무기관의 내부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점이 의미가 있음. 외부 전문가 및 해당 교수들의 전문적 판단 수준은 높지만, 관련 사업의 정보 숙지 수준은 내부 위원 및 담당 공무원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 구성보다는 실무자, 전문가(연구원, 교수 등) 등의 내외부 위원들을 적절히 구성하는 방법이 평가의 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29〉 국민체육진흥기금 평가실무소위원회 구성현황

구분		전문·장애인·국제체육	생활체육
내부위원	한국스포츠개발원	○○○ 수석연구원 (스포츠산업실)	○○○ 책임연구원 (정책개발연구실)
	현장평가위원	○○○ 교수 (남서울대학교)	○○○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외부위원		○○○ 교수 (군산대학교)	○○○ 교수 (계명대학교)
	장애인정책 전문가	○○○ 교수 (한국운동재활학회 부회장)	○○○ 교수 (용인대학교)
	사업평가 전문가	○○○ 부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 교수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체육공무원	○○○ 주무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주무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14) '2014년 기금지원사업 성과평가결과'

□ 평가결과 활용 및 환류

- 2013년 기금지원사업 평가 결과, 도출되었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하였음
  - 기금지원사업 평가실무소위원회 운영 확대, 성과평가체계 보완,
  - 현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기금지원단체간 합동점검 도입,
  - 기금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현장평가지 구분 및 평가척도 세분화,
  - 현장평가단 청렴성 강화를 위한 서약 실시 및 명함 제공 등

## 2. 녹색기후기금

### 1) 개요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UN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만든 국제 금융기구이며 녹색기후기금사 무국이 평가를 실시함
- 그 간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글로벌 환경거버넌스 구축 노력이 시도되었지만, 그 결과는 가시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음. 교토의정서에 따른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및 효과는 미비하였으며, 개도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집중되어 불공평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후체제 협상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2010년 말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0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며,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장기재원(Long-term Finance) 조성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설립에 합의함
  - 녹색기후기금 관련 체제수립 정책도구들은 2011년 12월 11일,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서 승인되었으며 구체적인 협상을 2015년까지 완료하기로 함
  - 2012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 18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참가국 인준으로 녹색기후기금의 사무국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송도로 결정, 향후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을 불식시키며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중요한 위치를 담당할 예정
- 녹색기후기금의 주목적은 범지구적으로 대두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통해 제시되는 탄소배출 축소 노력에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데 있음.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들이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저탄소 및 기후친화적 개발이라는 패러다임 변혁(Shift)을 증진시키고자 함
  - 동 기금 운용은 협약 원칙과 관련조항들에 근거하고, 효율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투명하고도 책임있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동 기금은 개도국에게 새롭고, 추가적이며, 적절하면서 예측가능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향후 기후관련 재정운용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동
  - 기금운영은 국가주도의 접근을 추구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들과 이해관계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단위의 수준에서의 관여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동 기금은 적절한 운영방식을 모색하기 위하여, 모니터링과 평가과정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적 학습이 필요한 단계임. 녹색기후기금은 적응과 완화에 대한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증진시키면서, 양자간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

## 2) 운영방식

□ 녹색기후기금 운영관련 논의되는 거버넌스 및 법제도 정비 방향으로서, 녹색기후기금과 당사국총회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립됨

- 녹색기후기금은 협약 제 11조에 따라 UNFCCC의 재정체계의 운영기구로서 지정되었음. 기금(기구)는 기금결정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이사회에 의해 통치되어지고 감독을 받을 것임
- 관련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동 기금(기구)의 책임성과 당사국총회(COP)의 지침에 따라 운영된다는 협약 제 11조에 따라 구체적인 제도정비 부문은 당사국총회와 기금(기구) 간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임. 당사국총회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 제11조에 따르면,
  - 첫째, 이사회는 정책, 프로그램 우선순위, 자격기준, 이들과 관련된 문제들과 관련하여 당사국총회로부터 지침을 받고,
  - 둘째, 이사회는 당사국총회의 지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 셋째, 이사회는 관련 세부지침을 수용하기 위한 연간보고서를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것임
- 녹색기후기금 법적지위와 관련된 논의는 우선 국제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은 법인격을 가져야 하며, 나아가 해당 기구의 기능과 이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능력으로서 ‘적절한 행위능력’ 을 가질 것임
- 또한 기구는 목적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특권과 면책을 가질 것임. 마찬가지로 기금의 직원들은 기금과 연계된 그들의 공식적 기능의 독립적 실행을 위해 필요한 특권과 면책을 가질 것임

□ 녹색기후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논의된 이사회절차상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24개 회원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동수로 구성되어짐. 개도국들의 대표는 UN의 지역적 범주에 해당되는 국가들과 군소도서개발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들이 포함되어야 함
- 둘째, 이사회 각 회원국가들은 부위원(대리국)을 가질 수 있음. 부위원(국가)들은 회원국을

통해 이사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음. 만약 회원국이 부재하다면, 이들 부위원국들은 회원으로 간주됨. 이사회 회원국들과 그들의 부위원국들은 각각의 대륙 또는 대륙 내 지역적 집단 기준에 의해서 선정됨. 이사회 회원국들은 기후변화와 개발재정 분야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험과 기술들을 가지게 될 것임

- 셋째, 이사회 회원국 임기는 3년이며, 해당국이 속한 대륙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 넷째, 이사회 의장과 관련하여 두 명의 공동회장으로 이루어지며, 이사회 구성 후 1년 내 회원국들에 의해 선출됨. 1인은 선진국 대표, 다른 1인은 개도국 대표성을 가짐
- 다섯째, 이사회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정은 회원국들의 공감대 바탕 위에서 결정됨. 따라서, 이사회는 이러한 공감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발하려고 하며, 정족수를 이루기 위해서는 2/3 회원국들이 참여해야만 함.
- 기타 추가적인 규칙들은 이사회에서 제시함

□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녹색기후기금 관련 운영 감독
- 운영상의 세부원칙 및 기금기구의 구조
- 프로그램, 프로젝트 주기, 행정, 재정관리 등 구체적인 운영상 정책과 지침에 관한 승인
- 기금의 원칙, 기준, 세부원칙, 정책 등과 관련된 기금 승인
- 환경적, 사회적 안전조치 및 국제적으로 수용가능한 기금신탁 원칙과 기준 개발 등
- 소위원회 및 패널 구성, 적정 임기 제정
- 기금의 지원을 받는 사업 모니터링, 성과평가, 그리고 기금에 의해 재정적 책임과 관련된 프레임워크 구상
- 기금(기구)의 행정 예산 검토 및 승인과 성과검토
- 사무국 상임이사, 평가단장 임명
- 당사국총회로부터의 지침 수립 및 조치, 당사국총회에 제출될 연간보고서 준비 등

□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설립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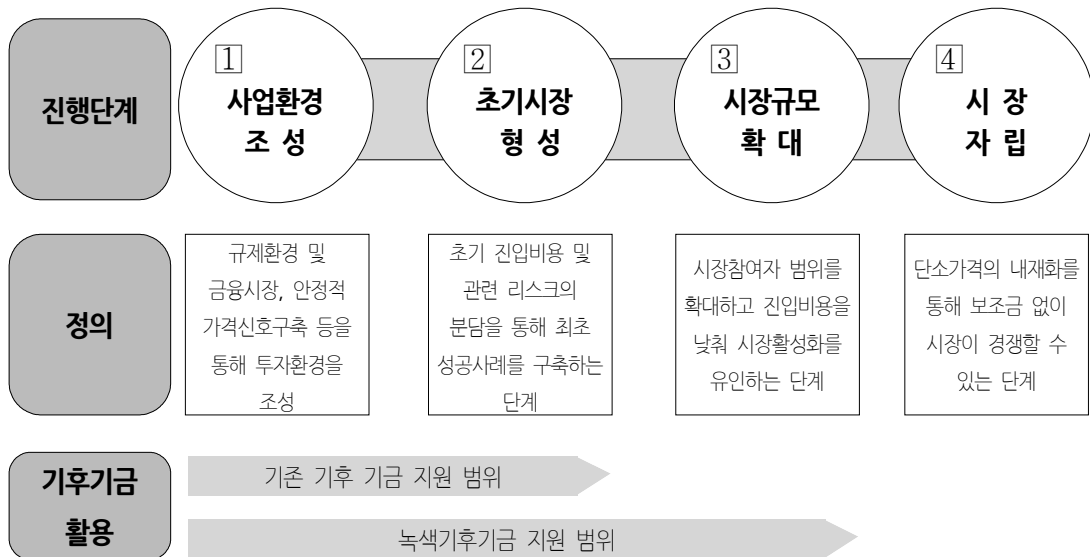
- 먼저, 사무국 설립과 관련하여, 녹색기후기금은 완전히 독립된 사무국을 둬. 사무국은 이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임을 지며, 기금운영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노력함
  - 사무국에는 이사회에 의해 임명되고 이사회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이 뛰어난 상임이사를 둬. 상임이사 선정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며, 관련 능력과 자질을 심사받는 절차를 통해 임명됨.
  - 또한 사무국에는 전문인력을 배치함. 전문인력의 선발은 상임이사가 하게 되며, 이 역시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지역적, 성(gender) 균형을 통해 충원됨

- 둘째, 사무국의 기능으로서 사무국은 기금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모든 행정적 의무의 실행, 기금(기구)의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등 행정적·법적·재정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함

- 기금기구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보조금이나 장기·저리의 양허성자금지원(concessional lending)을 제공함. 동 기구는 국가 및 국가 간 수준에서의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공공·민간 재정 운용에 촉매역할을 하고자 함. 즉, 시장성숙의 4단계 중 민간자본 참여를 통한 시장규모 확대에까지 기여하고자 함. 동 기금의 규모는 기존의 기후기금을 대체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의지와 그에 따른 재정고려 수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얼마만큼 민간재원에 대한 유인능력을 갖추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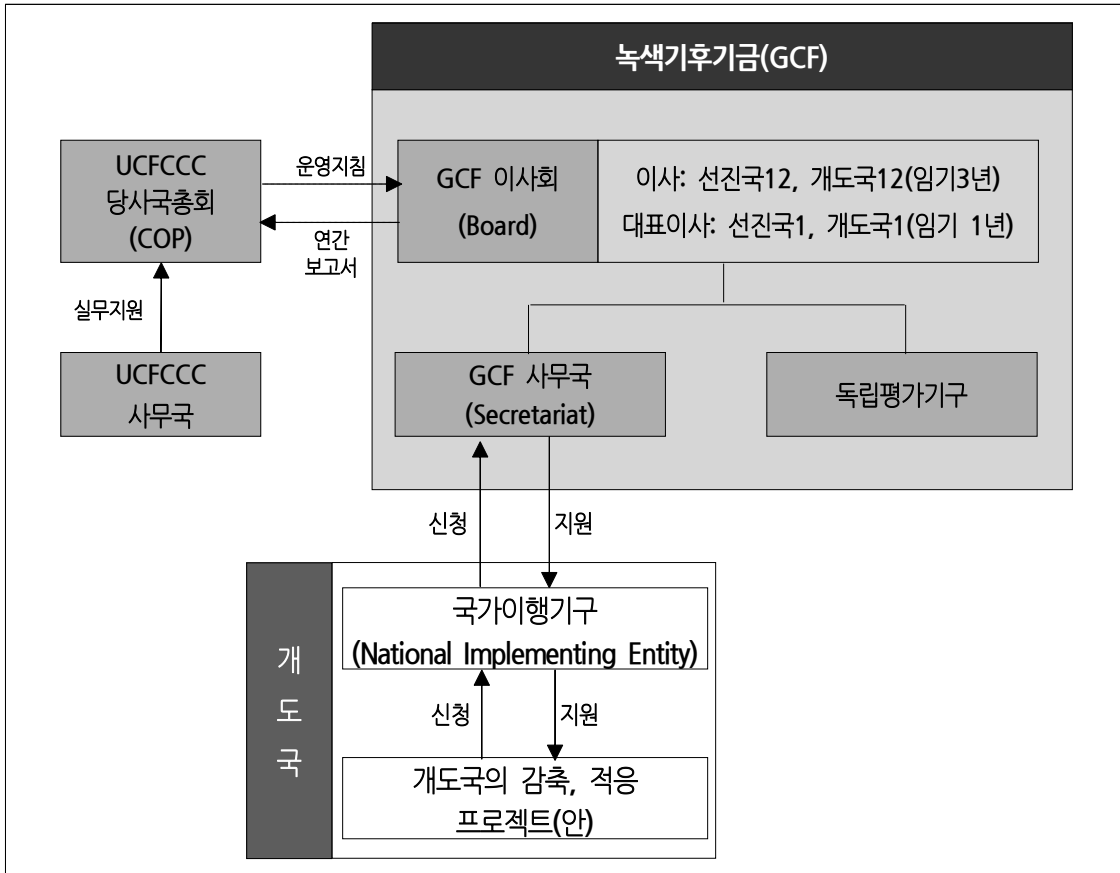
<그림 4> 단계별 녹색기후기금 지원범위



- 녹색기후기금의 논의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녹색기후기금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주도하에 당사국총회와 녹색기후기금 이사회를 통하여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에 무상원조, 양허성 차관 및 다양한 금융수단 활용, 구조, 사업모델 등 논의가 진행 중임
  - 당사국총회는 녹색기후기금에 정책, 프로그램, 지원적용대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녹색기후기금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당사국총회에 보고하기로 함. 연례보고서는 당사국총회의 지침 이행여부, 지원활동, 승인내역, 재정보고서, 감축과 적응 간 균형

이행여부 등이 포함됨

<그림 5> 녹색기후기금의 구성 및 운영체계



\* 출처: 청와대, 인천 송도 유치 성공한 '녹색기후기금'이란, 정책브리핑(2012.10.20)

- 녹색기후기금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당사국총회가 주기적인 검토를 하며 검토항목에서 당사국총회가 개도국 지원에 필요한 재원규모를 평가하고 녹색기후기금이 가용 재원에 대한 정보를 연간보고서를 통해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당사국총회의 주도권을 인정함
- 녹색기후기금 이사회는 재정지원 결정에 완전한 책임을 지며 별도의 독립적인 시정제도 (Redress Mechanism)를 마련하여 재정지원 결정을 재고할 수 있음. 개도국은 특정지원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당사국총회에 문제 제기 및 추가 지침 요청이 가능한 조항을 삽입하길 바랬으나 선진국은 녹색기후기금의 결정사항이 반복될 것을 우려,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임
- 녹색기후기금에 독립적인 법인격을 인정하여 그 간, 자금 승인과 지출과정에서 효율성과 신속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녹색기후기금 초기 설계작업을 위한 설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녹색기후기금과는 별도로 재정매커니즘과 관련하여 당사국총회를 지원하기 위한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inance)가 설립됨

### 3) 성과평가

- 녹색기후기금 운영에서 나타나는 이슈 중의 하나는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었음. 그러나, 모니터링과 평가설계에 대한 각 국가 간 의견 대립은 거의 없으며 기금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결과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강조됨
- 평가의 대상은 기금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과 기금의 이사회, 사무국, 수탁기관 및 수행기관을 포함한 기금의 전반적 사항을 포함함
- 기금운영상 나타나는 평가방식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과 방향은 다음과 같음
  - 기금에 의해 지원받는 관련 프로그램 사업, 프로젝트 기타 활동들은 이사회가 제시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당해 활동의 영향, 효율성, 효과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또한 운영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한 참여적 모니터링이 장려되고 있음
  - 기금 결과의 객관적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독립적 기금성과 평가가 있어야 함. 이러한 독립적 평가들의 목적은 이사회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을 확인하며 확산시키는데 있음. 또한 이러한 정기평가 결과는 공식적으로 발간될 것임
- 이에 따라 평가 조직 구성은 두 가지 경우로 제시됨
  - 제 1안은 국제기후기금 핵심조직의 일부분으로서 평가체제를 구축하되, 외부의 공정한 전문가를 영입하여 구성하는 방안
  - 제 2안은 공개경쟁입찰과정을 통해 외부의 독립적인 기구를 선정하여 기금의 성과 평가를 위탁하는 방안
- 최근 아시아개발은행의 평가부서가 독립적으로 설치된 이후 모니터링 및 평가업무가 현저히 개선된 사실 및 그 간 기금 운영 경험에 따라, 독립적인 평가부서 구성이 지지 받음으로써 기후기금 이사회는 독립적인 평가부서를 설립하고 부서장 임명 권한을 갖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함
  - 이사회는 기금의 핵심구조 일부분으로서 운영상 독립적인 평가단을 만들고, 평가단의 수장은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됨. 평가횟수와 그 종류는 이사회와 평가단의 합의에 의해 구체화될 예정
- 그 결과, 기금평가단의 보고서는 협약의 재정체계의 정기적 검토를 목적으로 당사국총회에 제공되어지며, 당사국총회는 이사회 성과물 비롯하여 기금의 전체적인 성과에 대한 독립적

인 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음

- 지침에 관한 결과측정 프레임워크와 적절한 성과지표는 이사회에 의해서 승인됨. 이러한 지표들에 대한 성과는 기금의 영향, 효과성, 운영성과의 지속적인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평가됨

□ 기타 설계위원회는 개도국의 기금 운영 역량 부족의 문제를 예상하여 최소 수탁기준을 규정하고 프로젝트 기준(프로젝트의 심사, 조달과정, 모니터링 시스템 및 평가)과 거버넌스 기준(외부 재정감사, 재정관리 및 공개, 윤리강령, 내부감사, 조사기능 및 신고자 보호 등)으로 상세히 분류함

<표 30> 녹색기후기금 설계위원회 구성

작업분과	의제
녹색기후기금 목적과 운영원칙	- 기금의 활동과 여타 양자, 지역, 다자간 재원조달 메커니즘 보완 방안
거버넌스 구조	- 녹색기후기금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사항 - 절차와 거버넌스 - 사무국의 역할과 설치절차
녹색기후기금 운영방식	- 다양한 출처의 대규모 재원관리 방식과 금융수단, 지원창구, 기금의 접근 방식 및 전달 방식 - 기금의 우선적 목표달성을 위한 금융수단 - 협약산하 주제별 기구로부터 기술적 자문 메커니즘
모니터링 및 평가	- 정기적·독립적 기금운영성과평가 실시를 위한 메커니즘 -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 국제적 수준의 수탁기준 및 건전한 재정관리를 고려한 재정적 책임성 보장과 기금지원 활동 평가를 위한 메커니즘 개발

\* 출처: 노희진, 김규림(2013), 녹색기후기금의 특성과 향후 정책방안

## 3. 지역협력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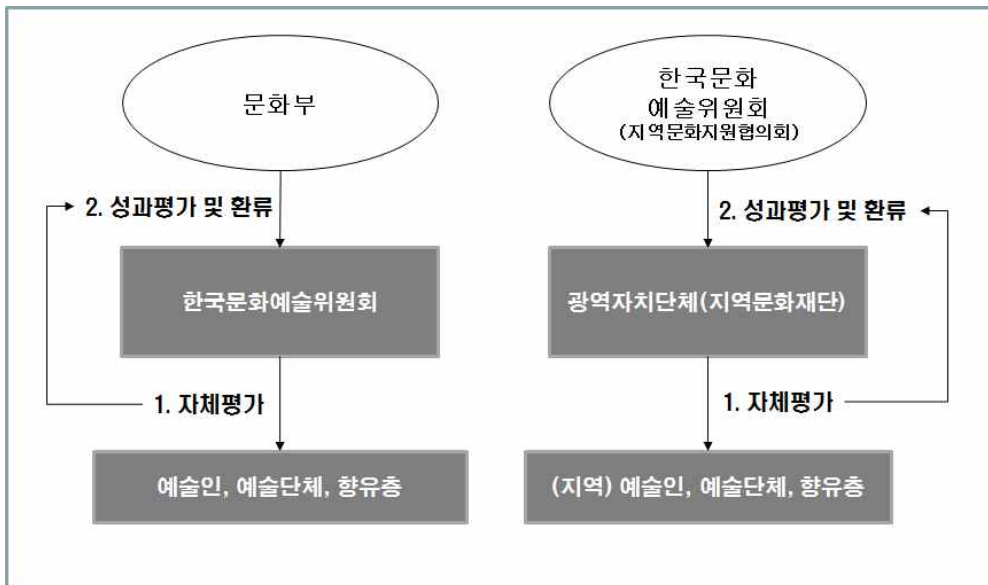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균형발전,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을 통한 「지역협력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이하 지역협력형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9년부터 지역문예진흥사업 평가 및 환류를 통한 지원금 배분 인센티브 제도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지역문예진흥사업에 대한 체계적·객관적·현장중심의 평가가 필요함
-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이하 한지협)는 중앙과 지역, 지역 상호 간 문화지원 기구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지역문화 정책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7년 10월 24일 발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사무국 설치)
  -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협의체 구성)에 따라, 위원회와 「지역문화진흥법」 제 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한지협의 구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문화재단으로 이루어지며, (1) 지역사업 기구 간 협력교류 및 역할분담을 통한 효과성 제고, (2) 지역사업 지원기준, 심의방식, 행정절차 등 협의조정, (3)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제반사항 협의 및 정책건의 등의 역할을 함
- 동 기관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각종 회의, 토론회, 워크숍 등을 개최
  - 지역 문화행정가 교육연수 및 인적 교류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 기타 지역 문화정보 교류 및 알선 등 협의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 조직의 의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하며,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음
- 한지협의 기능 중 평가와 관련된 사업으로 지역협력형 사업평가(“위탁사업”)가 있음. 동 평가의 목적은 문예진흥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점검·환류하고, 지역의 성과관리 능력 및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지역별 문예진흥사업의 효율화 달성에 기여하는 것임
  -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지역문예진흥사업의 설계(기본계획), 수행과정, 성과 등에

대한 체계적·객관적·현장 중심의 평가를 통해 지역의 성과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지원금 차등화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며, 관련 정부부처에 대하여 기금사용의 적절성, 투명성 및 성과 등을 보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함

2) 평가방식

- 한지협이 실시하는 평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의 의한 성과평가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음.
  - 먼저, 문화예술위원회가 문예진흥기금으로 실시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자체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문화재단 및 지자체 등 각 지역별로 매칭펀드 방식으로 실시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함
  - 둘째, 문화예술위원회의 자체 평가자료 등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외부전문용역기관으로 구성된 기금사업 평가단을 통해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같이 한지협은 지역별로 작성된 자체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다면평가를 통해 종합적 평가결과를 반영함

<그림 6>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와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체계



-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와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피평가기관의 수에서 차이가 남.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 평가는 문화부와 예술위원회

간의 협의에 의해 실시되는 반면,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는 각 지역별 평가를 바탕으로 비교평가방식으로 진행됨

- 둘째, 성과평가방식에서 차이가 있음. 문예진흥법 35조의 성과평가는 평가지표 및 배점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는 사업별 평가방식에서 공통평가 항목과 사업별 평가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어 각 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있음

- 공통평가 항목의 경우, 사업추진 기초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집행 및 평가 적절성, 홍보마케팅, 교육·협력 수준, 사업 성과 등이 적용됨
- 그 외 사업별 평가항목으로서, (1) 특성화지원 통합부문(사업추진 역량, 사업 지원목적 달성도, 지역문화수요 반영수준), (2)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지역예술계 사업참여 수준,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 등), (3) 시·도기획지원사업(사업추진역량,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 등), (4)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사업추진역량,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 (5)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계획대비 집행실적, 출연진 구성 및 공연프로그램 완성도, 관객 편의서비스 제공 및 현장운영의 적절성, 공연홍보 운영의 적절성 및 홍보성과,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성과 등), (6)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사업추진 기초역량, 사업지원목적 달성도,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모니터링 등)의 평가항목이 있음

- 셋째, 평가절차에서 양자 모두 공통적으로 서면평가, 현장실사(서면평가 결과 심층확인 및 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다 정교한 평가절차가 운영되고 있음. 평가방법의 연속성, 환류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사업별, 지표별 평가체계를 구축노력이 지속됨

- 지역방문을 통한 다면적 현장평가 시스템 구축(서류검토, 사업담당자 인터뷰, 지원단체 인터뷰, 현장실사 등)
-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 및 개선
- 평가단 운영 및 현장평가 운영 기본 매뉴얼 구축
-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 예술(인) 단체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수요, 만족도, 개선사항 등)
- 사업별 만족도조사 표준안 개발 및 제공, 지역협력형사업 평가시스템의 우수 사례화
- 평가 개선과제 및 방안제시, 최근 5년간(2009-2013) 지역협력형 사업 평가결과의 비교 분석 등 보다 안정적이고 고도화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특히 현장평가지,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예술적 수월성 항목보다는 업무 관계자 인터뷰, 현장 진행사항, 현장과 관련된 서류비교 등을 중심으로 예술행정 및 경영적 측면의 항목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며, 종합적으로 지역별, 지표별, 단위사업별 결과의 종합비교를 제시함

- 지역협력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의 기대효과는 첫째, 체계적이고 공정하며 권위있는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임
- 둘째, 광역단위 지원주체의 지역협력형 사업 지원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임
  - 평가중 진행되는 담당자 참여 워크숍, 현장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지역담당자 역량 증진
  - 지역별 문화환경에 적합한 사업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병행
  - 자체 평가체계의 표준모델 확립을 통한 안정적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
- 셋째, 상향식 개선방안 도출로 실용적인 평가결과 환류가 가능함
  - 지원 수혜단체 담당자 심층면접 강화를 통해 수요자 견해를 반영한 개선방안 도출
  - 심층면접 대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다면적 의견수렴 진행
  - 성과평가 결과가 예술위원회, 한지협, 각 시·도별 담당부서, 문화재단 등 사업추진단체 등과 활발한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차기년도 사업에 실질적 내용이 환류되도록 추진
- 넷째, 동 평가자료는 관련 정부부처 경영평가, 기금평가 자료로 연계 활용 가능

#### 4.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성과 평가

##### 1) 개요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시설의 건설 및 개·보수, 관광객 편의시설 등의 건설과 관광사업체 운영에 지원되는 용자사업과 관광수지 적자개선 및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보조사업에 지원되고 있음
  - 보조사업으로는 관광연구사업 지원, 관광객 유치지원, 국민 관광진흥 지원, 외래관광진흥지원, 한국관광공사 지원, 해외관광문화센터(코리아센터) 건립 지원, 코리아플라자 운영지원 등을 포함
- 크게 지원성격에 따라 경상적 지출과 용자지출로 구분하되 사업별로는 관광자원 활성화,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 등 17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 추진
  - 각 단위사업은 다시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의 성격은 크게 관광서비스 기반구축, 지역 관광자원 개발, 국내관광 활성화, 외래관광객

유치·홍보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2) 평가목적

- 기금 사업의 선정 및 집행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평가의 컨설팅 기능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개선을 위한 정책자료 및 외부평가 제출자료로 활용

## 3) 평가범위 및 방법

- 평가범위: 사업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는 의미에서 기금운영비, 여유자금 운영 등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및 보조사업으로 평가범위 한정
- 평가는 총괄평가와 단위사업 평가로 구분됨
- 총괄평가: 관광정책의 목표, 기금의 목표 등과 대비하여 성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
  -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크게 사업의 적정성, 관리의 적정성, 성과의 적정성 등으로 평가항목 구성
  - 계획과 집행 과정에 대한 평가는 단위사업 평가와 연계하여 단위사업들의 평가가 종합되어 총괄평가에 반영되도록 평가항목 설계
- 단위사업 평가: 단위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에 대한 진행단계별 평가
  -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선정의 합리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사업집행의 효율성 등 평가
  - 전체 기금사업을 평가범위로 설정하고,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지표를 참고로 하되 질문-응답 방식이 아닌 5점 척도로 평점부여방식 선택
  -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의한 평가방식으로 진행
- 평가결과 도출: 단위사업별 평가점수는 최종적으로 등급 처리에 의해 평가결과 제시
  - 단위사업의 평가 등급은 A등급(탁월, 90점 이상), B등급(우수, 70~89점), C등급(보통, 50~69점), D등급(미흡, 30~49점), E등급(저조, 30점 미만) 등으로 구분
  - 평가자가 작성하는 평가지표별로 평점 부여시 간단한 판단근거 및 의견 제시
  - 단위사업의 평가점수는 총괄평가와 연결되도록 하고, 단위사업 평가점수 중 성과단계에 대한 평점은 관광정책사업별 중요도 설문조사의 결과와 대응시켜 IP(Importance

Performance) 분석을 함으로써 단위사업별 우선순위 제시

4) 평가절차 및 추진체계

- 평가절차 : 사전 자료심사(개별) → 의견 토론 → 평점결정 및 평가의견서 작성(개별 작성) → 종합
- 평가추진체계에는 평가지표 설정 및 관광산업국 과업분석 과정에 행정(평가), 회계전문가가 참여하고, 평가단은 관광, 행정, 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함
  - 16개 단위사업을 사업성격에 따라 유사사업별로 분류하여 4개 평가팀으로 구분
  - 관광, 경제,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선정하고 관광분야는 학계뿐만 아니라 관광업계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광호텔, 여행사 실무자를 평가단에 포함

5) 평가지표

(1) 정책평가(총괄평가)

- 사업의 적정성, 관리의 적정성, 성과의 적정성으로 크게 구분, 세부 평가지표는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선정의 합리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사업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지표로 선택
- 사업의 적정성, 관리의 적정성은 단위사업별 관련 지표의 평가점수를 평균함으로써 구해지고, 성과지표는 해당 실적 및 수치를 대입함으로써 평가점수 산출
  - 융자사업은 사업성격이 다르고 평가 가중치가 달리 설정되어 있으므로 제외

<표 31> 총괄평가의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사업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 사업선정의 합리성 / 예산배분의 적정성	
관리의 적정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 사업집행의 효율성	
성과의 적정성	성과목표	성과지표
	세계적 수준의 관광서비스	- 관광서비스에 대한 외래 관광객 만족도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반 구축	- 관광숙박시설 확충 객실수 - 전문가 및 업계 만족도
	지역특화 관광자원의 개발 확충·내실화	- 관광자원개발 예산집행률 - 전통문화프로그램 관람객수 - 전문가 및 업계 만족도
	외래관광객의 전략적 유치 확대	- 총 외래관광객 수 - 문화관광축제 외국인 관람객 수 - 전문가 및 업계 만족도
	국민 생활관광 환경의 조성	- 국민관광총량 - 국내여행만족도 - 전문가 및 업계 만족도

(2) 단위사업 평가

가. 공통

- 단위사업 평가는 세부 평가사업을 선정하여 사업계획, 사업집행, 사업성과 등 각 단계별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
  - 추진실적 외에도 사업추진의 효율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준비성 등 평가
  -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부 의견수렴, 현황점검 및 현장방문, 만족도 조사 등과 관련한 지표를 계량지표 형식으로 평가지표에 포함시킴
- 재정사업자율평가의 15개 공통질문(계획, 집행, 성과)을 참고하여 자원배분의 적정성, 관리체계의 합리성, 용자기준의 적정성, 용자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사업의 평가 결과 등으로 평가항목 구성
- 기금 사업의 지원방식에 따라 용자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사업은 지원대상, 지원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15개 보조사업 평가지표와 1개 용자사업의 평가지표를 구분하여 별도로 설정

나. 보조사업

- 사업성과는 사업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효율성 개념인 비용대비 효과, 사전 설정된 성과목표 대비 실적 등으로 다각적으로 평가되도록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

〈표 32〉 보조사업 평가지표

단계	평가지표		가중치	
(30)	계획	사업내용의 적합성	10	
		사업선정	선정의 합리성	10
	의견수렴 수준		5	
	예산배분의 적정성		5	
(30)	집행	사업관리	관리의 적정성	10
		현황점검 및 현장 방문건수	5	
	사업집행의 효율성	사업집행의 효율성	10	
		예산 집행률	5	
(40)	성과	사업 효과성	10	
		비용 대비 효과	5	
		성과목표 대비 실적	5	
	성과 피드백	성과 피드백의 적정성	10	
		성과지표의 적절성	5	
		만족도조사 건수	5	

다. 용자사업

- 용자사업의 예산배분은 지방사업체와 중소기업체에의 예산 배분 비중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지방사업체 지원 건수, 지원 상위 5개 업체 예산 집중도 (Concentration Rate)를 평가지표로 설정

〈표 33〉 용자사업 평가지표

단계	평가지표		가중치
계획(40)	계	사업내용의 적합성	10
		사업선정의 합리성	5
	예산배분의 적정성	예산배분의 적정성	10
		지방사업체 지원 건수	5
		지원 상위 5개업체 예산 집중도	5
집	사업 관리의	사업 관리의 적정성	10

단계	평가지표		가중치
행(30)	적정성	현황점검 및 현장방문 건수	5
	사업집행의 효율성	사업집행의 효율성	5
		선정금액 대비 집행금액 비율	5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	5
성 과(30)	사업 성과	사업 효과성	5
		비용 대비 효과	5
		성과목표 대비 실적	7
	성과 피드백	성과 피드백의 적정성	5
		성과지표의 적정성	5
		만족도조사 시행	3

## 라. 성과지표1)

〈표 34〉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관광자원활성화	- 전통문화프로그램 관람객수 - 인천공항 환승투어 참여자수
관광안내체계개선사업	- 관광안내소 설치개수 -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개수
외국인관광투자유치지원	- 외국인 투자기관 유치수 - 국내 투자유치기관 참가 수 - 컨퍼런스 참가자 만족도
관광숙박시설 육성지원	- temple stay 참여자수 -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화 추진수 -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수량
관광상품개발 및 유통지원	- 외래관광객 전통민예품 쇼핑비율 - 음식문화 팸투어 기사화 실적
문화관광체험프로그램지원	- 문화관광축제 관람객 수 - 문화관광축제 외국인 관람객 수
남북관광교류 활성화	- 금강산 관광객 수 - 금강산 관광객 만족도
복지관광활성화	- 복지관광 참여인원

1) 단위사업평가의 평가지표 중 '성과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에 사용한 지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관광인력양성 지원	- 인턴사원 정규직 전환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원	- 연구과제 고객만족도 - 정책현안과제 1인당 수행건수 증가율
국민관광진흥지원(공사)	- 국민국내관광총량 - 국내여행만족도
관광공사 운영지원	- 최근연도 경영실적 평가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 외래관광객 유치인원 수 - 한국관광상품 기획지원 모객수
관광객유치를 위한 국제협력	- Tour2korea 페이지뷰 - 코리아플라자 공정률 - 방한 중국관광객 수
국제회의산업지원	- 국제회의 개최건수(관광공사 기준)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 관광호텔객실증가 기금기여도 - 외래관광객 숙박평가 $\frac{\text{소비자물가상승률}}{\text{Max(소비자물가상승률, 객실요금상승률)}}$ $\frac{ \text{여행사외화수입증가율} }{\text{Max(여행사외화수입증가율, 관광수입증가율)}}$ $\frac{ \text{카지노매출증가율} }{\text{Max(카지노매출증가율, 관광수입증가율)}}$

6) 평가결과 활용

-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IP분석(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을 바탕으로 한 사업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예산배분시 간접자료로 활용
- 단위사업별 평가자의 개선의견은 사업의 계획수립, 집행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제 4절 시사점 도출

- 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기금 사업평가 사례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성과지표의 유연적 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먼저, 사업부문의 성격에 따라 계획-집행-성과 간 배점기준을 들 수 있음. 동 기금사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사업분야에 따라 차별화된 배점 및 적절한

성과지표의 추가 또는 삭제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음

- 전문체육 및 국제교류 사업은 성과부문에 높은 점수배분을 하였고 특히,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별 세부결과지표의 배점이 타 사업분야와 비교하여 높았음
  - 생활/장애인 체육 분야는, 집행단계의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중에서도 타사업 분야와 달리 사업별 세부산출지표를 삭제하는 대신 현장평가에 높은 점수 비중을 부여하였음
  - 생활체육공모 부문도 생활/장애인 체육분야와 같이 집행단계의 배점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지만, 사업의 특성상 집행단계에서의 현장평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타 사업분야에 있지 않은 정산업무의 배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대회는 상대적으로 계획단계에 높은 배점을 두고 있음
- 둘째, 성과 평가에서의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차별화를 두는 가중치 설정방법임. 만족도 결과의 특성을 감안, 보통 이상에 해당되는 범위에 대해서 적정 구간별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점수 간 미세한 결과값들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이러한 접근은 일정수준 이상의 만족도 결과값들에 대하여 보다 용이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가중치(점수)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기타 심사운영과정상의 문제로 심사소위원회 구성방식을 살펴보았음. 관련 주무기관의 담당자와 내부 전문가, 연구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구성방식을 통해 전문적 판단영역과 관련사업의 정보숙지가 원활이 교류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사업 평가과정에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위원들의 참여를 제도화할 때 특정관점을 지양하고, 복수의 관점으로부터 도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는데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녹색기후기금과 관련하여 기금 집행모니터링과 평가 문제를 살펴보았음. 특히, 기금운영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대한 정리를 하였음
- 녹색기후기금의 평가조직 구성은 (1) 먼저, 국제기후기금 핵심조직의 일부분으로서 평가체제를 구축하되, 외부의 공정한 전문가를 영입하여 구성하는 방안과, (2) 공개경쟁입찰과정을 통해 외부의 독립적인 기구를 선정하여 기금의 성과 평가를 위탁하는 방안으로 논의되었음
- 그 결과 독립적인 평가부서를 구성하는 것이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에 더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기후기금 이사회는 독립적인 평가부서를 설립하고 부서장 임명 권한을 갖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평가방식과 그 종류 등은 평가단과 이사회의 합의에 의해 구체화하기로 결정함
- 동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업평가 운영방식에서 평가 상설부서를 통한 평가실시와 외부연구 용역방식 중 녹색기후기금의 경우 전자의 방식이 보다 체계적인 성과평가 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임

- 전자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지속적인 평가에 주도적 참여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관련자료의 축적 및 환류가 더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평가과정 운영의 높은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임. 그러나 그 전제로 평가단의 독립성이 완벽히 보장되어야 함
- 후자의 방식은 독립성 보장에서 전자보다 수월하나, 평가단 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실제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주무기관의 담당자는 평가 상설부서 구성방식과 비교하여 평가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숙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평가과정 참여가 미비한 관계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한지협에 의해 시행되는 지역협력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의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평가와 유사한 평가체계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운용상 차별성을 보이고 있음
- 첫째,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간 비교평가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문화부와 예술위원회 간 양자 협의로 실시되는 성과평가와 차이가 있음. 이는 평가방식에서 상대평가를 반영한 점수화 반영 여부에 차이가 있게 됨
- 둘째, 사업별 평가방식에서 공통평가 항목과 사업별 평가항목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평가지표에 차이가 있음
  - 특성화지원 통합부문,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시·도기획지원사업,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추가적인 평가항목을 제시함으로써 분야별 특성이 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특히 현장평가 시,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예술적 수월성 항목보다는 업무 관계자 인터뷰, 현장 진행사항, 현장과 관련된 서류비교 등을 중심으로 예술행정 및 경영적 측면의 항목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며, 종합적으로 지역별, 지표별, 단위사업별 결과의 종합비교를 제시 함
- 또한 평가절차과정에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는 문예진흥기금 성과평가보다 정교성 및 체계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방식으로 사료됨. 평가방법의 연속성, 환류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사업별, 지표별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수반되고 있음
- 이러한 접근은 사업평가를 통한 체계적이며 공정한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컨설팅 방식의 평가방식을 반영함으로써 광역단위 지원주체의 사업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상향식 개선방안 도출이 평가과정에 내재되어 있어, 실용적인 환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 살펴 본 기금평가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지 반영가능한 고려사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평가지표 및 방식

- 2013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대상사업은 4개 분과 16개 세부 사업으로 아래의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을 이용하여 평가함
  - 평가분과는 예술창작의 역량강화, 생활속 예술활성화,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적 사회적 가치 제고이며, 각 분과별 평가대상 사업이 반영되어 있음
- 향후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에서 제시된 성과지표 및 평가내용이 보다 구체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환류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예술위원회 내부평가에서 사용된 결과지표를 적극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연계성 측면을 고려해야 함

<표 35> 2013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대상사업

평가분과	평가대상사업	관리부서
예술 창작의 역량강화	[101] 문학창작지원	예술지원부
	[102] 시각예술창작지원	예술지원부
	[103] 공연예술창작지원	예술지원부
	[104] 예술다양성증진지원	예술지원부
	[105] 전시·창작소통공간운영	미술관
	[106] 차세대예술인력육성(AYAF)	예술지원부
	[107] 예술인력재교육	인력개발원
	[108] 국제교류활성화지원	국제교류부
	[109] 국제교류협력체계구축	국제교류부
생활 속 예술 활성화	[201] 문화복지(문화바우처)	문화복지부
	[202] 문화나눔(문화바우처 외)	문화복지부
지역문화예술 진흥	[301] 지역문예활동지원	예술지원부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401]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	사업평가부
	[402]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정책기획부
	[403]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예술나눔부
	[404] 공공미술사업운영	미술관
4분과	16개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 평가편람

<표 36> 2013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계획	사업계획(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5

2014년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성과계획(15)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집행(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성과(45)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12
		4-3. 우수사례 평가	3
전체 합계			100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 평가편람

- 평가의 적실성 확대를 위해 향후 고려사항으로 4개 분과별 평가대상 사업의 성격이 다른 동 사업에 계획, 집행, 성과의 가중치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평가분과별 배점이 다르며 세부사업 단위로 내려갈 경우,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배점을 조정함
  - 문예진흥기금의 경우, 일례로 예술창작지원, 생활 속 예술 활성화 분야, 지역문화예술지원 등 상이한 사업별 성과평가지 사업의 취지에 맞게 계획, 집행, 성과의 비중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이러한 접근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가중치를 삭제하고 사업진단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각각 상이한 특성을 가진 사업성격을 반영한 추가지표에 대한 논의도 고려한 필요가 있음.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사례에서 제시된 추가지표에 대한 논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일례로 향유계층의 만족도 부문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창작지원사업보다 향유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평가운영

-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외부인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성과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평가위원이 문화예술위원회의 내부평가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성과지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평가단 구성에 있어 문화예술위원회 소속 인원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성 담보 및 심층평가를 진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함
  -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사업 평가의 경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적절한 안배를 통해서 다양한 복수의 관점을 통한 정성적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하였음
  - 녹색기후기금은 독립성을 보장한 내부 평가부서를 구성함으로써 성과평가의 객관성 및 효과성달성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을 가능하게 함
  - 단기간 내 사업내용 숙지를 위해서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도 관련 기관 담당자 참여와 함께 외부전문가와 지속적인 관련사업의 정보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부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장르의 평가가 혼재되어 있는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의 특성상, 평가단 구성시 전공과 무관한 분야의 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분야는 특정 분야의 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술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보완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절차적 제도 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 3장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본 장에서는 문예진흥기금 사업현황을 살펴보고 현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함
- 먼저, 문예진흥기금 사업현황으로서 예산액을 중심으로 2014년도 사업이 어떠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외 국고사업, 토토기금, 관광기금, 경륜경정 공익적립금,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이루어지는 수탁사업 현황을 분석함
- 둘째, 문예진흥기금 관리운영 주체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내·외부 평가현황을 살펴봄. 먼저 외부평가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의해 수행되는 평가체계와 위원회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평가현황을 분석함
- 셋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현황을 중심으로 기존에 다른 평가와 연계하여 접근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함

### 제 1절 2014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현황

-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현황은 크게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6개, 세세부사업 16개, 기초사업 58개로 구성되며,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크게 ‘예술창작 역량강화’, ‘생활 속 예술 활성화’,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등 4개로 이루어짐
- 전체 사업규모는 1,740억원에 달함. ‘예술창작역량강화’ 사업이 약 689억으로 3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 속 예술 활성화’ 사업 613억원(35.2%),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 248억원(14.3%),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사업 190억원(10.9%) 순으로 나타남
- 689억원의 기금사업이 이루어지는 예술창작역량강화 사업은 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국제예술교류지원 등 세 가지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짐. 이 중에서 예술창작지원이 약 522억원(75.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예술교류지원 87억원(12.6%), 예술인력육성 81억원(11.8%)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613억원의 기금으로 수행되는 ‘생활 속 예술 활성화’ 사업은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통합문화이용권(문화), 소외계층문화순회·사랑티켓 등 공연나눔 사업, 생활문화공동체 지원과 같은 창작나눔 사업 등이 수행되고 있음. 이 중에서 통합문화이용

권 사업은 약 408억원으로 ‘생활 속 예술 활성화’ 사업의 66.7%를 차지하고 있음

- 248억원의 예산액으로 이루어지는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은 지역문화예술지원이라는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지역문화협의체 운영,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 및 평가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 중에서도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이 약 162억원으로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 내 65.2%라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이 84억원(33.8%)으로 나타남
- 190억원의 기금사업이 이루어지는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사업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라는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예술정책 실행력 제고,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 등 세 가지 세부사업이 있음.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로 약 155억원(81.9%)로 대부분의 사업예산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 개의 사업은 각각 17억원(각 9%) 정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음

<표 37>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현황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	순번	기초사업	사업내용	예산액 (백만원)
예술 창작 역량 강화 (39.6%)	예술 창작 지원 (75.7%)	문학창작지원 (6.13%)	1	문학창작활동지원		1,000
			2	우수문예지발간지원		1,000
			3	사이버문학광장운영		500
			4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500
			5	문학행사및연구지원		200
		시각예술창작지원(8.88%)	6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		1,250
			7	시각예술행사지원		500
			8	시각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150
			9	공공미술사업운영		1,000
			10	사람미술관네트워크활성화		121
			11	사람미술관전문인력지원	큐레이터, 에듀케이터지원	1,412
			12	코리아아티스트프로젝트지원		200
	공연예술창작지원(80.71%)	공연예술창작지원 (80.71%)	13	공연예술행사지원	일반공모사업	2,230
					전국연극제	500
					전국무용제	420
					한국창작음악제	400
					한국오페라축제	800
					한국발레축제	400
세계합창대회	150					
신년음악회	750					
서울국제무용콩쿠르	400					
하모니카페스티벌	50					
14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340
15	시민참여형프로젝트					500
16	창작뮤지컬육성지원					5,000
17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5,000			
18	공연예술활성화기반조성	공연장안전지원센터운영	480			
		공연예술분야 지원사업평가	400			

2014년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	순번	기초사업	사업내용	예산액 (백만원)				
예술 인력 육성 (11.8%)	예술 인력 육성 (11.8%)	예술 인력 육성 (11.8%)			공연유통 활성화 및 기반조성	700				
					19	기초공연활성화지원		10,800		
					20	공연연습공간조성및운영지원		10,000		
					21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한국민속예술축제	782		
							전통공물상설공연지원	400		
							전통예술산업콘텐츠개발	250		
							전통예술복원및재현	285		
							전통예술창작지원	1,062		
							융복합예술	22	융복합예술창작지원공간운영	아르코미술관운영및전시
					창작지원(4.28%)	23	융복합예술창작지원		1,000	
						24	창작매개활동지원		330	
						25	문학		250	
					예술 인력 육성 (11.8%)	차세대예술 인력육성(18.48%)	26	시각예술	인사미술공간운영	300
							27	공연예술		950
							28	예술인력개발원운영관리	예술인력개발원 시설관리	500
						예술인력 재교육(81.52%)	29	무대예술전문교육		248
							30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		252
							31	전문무용수센터지원		1,000
							32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4,568
	33	전통예술기획자양성프로젝트		50						
	국제 예술 교류 지원 (12.6%)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 (46.83%)	34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2,000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100				
					ARKO-PAMS협력사업지원	400				
					국제음악프로젝트 지원	1,000				
		35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559					
		36	한국예술주간행사		300					
		한국문화예술 세계화(53.17%)	37	국제교류기반강화지원	해외레지전스프로그램참가지원	300				
					한국문화세계화사업	250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	350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및전시	700				
	서울아트마켓지원				400					
	38				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		1,280			
	39	아리랑세계화		729						
40	전통예술텍스트번역및해외전통예술 보급		300							
생활속 예술 활성화 (35.2%)	소외 계층 문화 역량 강화	통합문화이용권 (66.7%)	41	통합문화이용권(문화)		40,866				
			공연나눔(31.38%)	42	소외계층문화순회		10,000			
				43	사랑티켓		1,251			
				44	방방곡곡문화공간		7,983			
				45	생활문화공동체지원		1,200			
지역 문화 예술 진흥 (14.3%)	지역 문화 예술 지원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 운영 (99.07%)	46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16,190				
			4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8,400				
			48	지역문화협의체운영		170				
			49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운영및평가		60				
예술	문화	예술정책	50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		700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	순번	기초사업	사업내용	예산액 (백만원)	
가치의 사회적 확산 (10.9%)	예술 사회적 인식 제고	실행력 제고 (8.96%)	51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500	
			52	예술가종합지원실운영	종합정보제공, 콜센터	100	
			53	예술정책실행력제고(평가)		400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 (81.86%)	54	기부금사업		9,695	
			55	문화예술기부활성화		후원활성화활동지원	3,100
						기업과예술의만남활성화	2,300
			56	원로문예인복지지원		238	
			57	문화로인사합시다		200	
58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1,742				
4개	6개	16개		58개		174,043	

- 한편, 수탁사업 현황은 회계상 국고사업, 토토기금사업, 관광기금, 경륜경정공익 적립금, 고용보험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60억원에 달함. 예산비율은 국고사업 약 110억(30.7%), 토토기금사업 129억(35.9%), 관광기금 약 100억(28.4%), 경륜경정공익 적립금 약 7억(1.9%), 고용보험기금 약 11억(3.1%)으로 구성됨
- 국고사업은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건립 리모델링 사업, 문화 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 문화예술인 패스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은 110억원임. 그 중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건립 리모델링 사업이 약 52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토토기금사업은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소외계층지원, 주요정책사업 지원,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문화융성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129억원의 토토기금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임. 9개의 세부사업으로 사업 수도 가장 많으며, 예산도 약 35%에 해당하는 45억 3천만원임. 다음으로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사업이 토토기금사업에 28.2%에 해당하는 약 35억 5천만원의 예산을 다루고 있음
- 관광기금으로 운영되는 수탁사업도 약 100억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사업명은 ‘통합문화이용권’ 으로 문화예술을 누리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음반·도서 구입 등과 국내여행에서의 이용혜택을 지원하는 취지임. 이 중에서 관광기금은 여행과 관련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사용되고 있음
- 기타 경륜경정 공익적립금, 고용보험기금은 약 5%의 예산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 중에서 경륜경정 공익적립금은 약 7억원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중 스포츠 관람 이용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전체 수탁사업 예산의 1.9%를 차지함

<표 38> 2014년도 수탁사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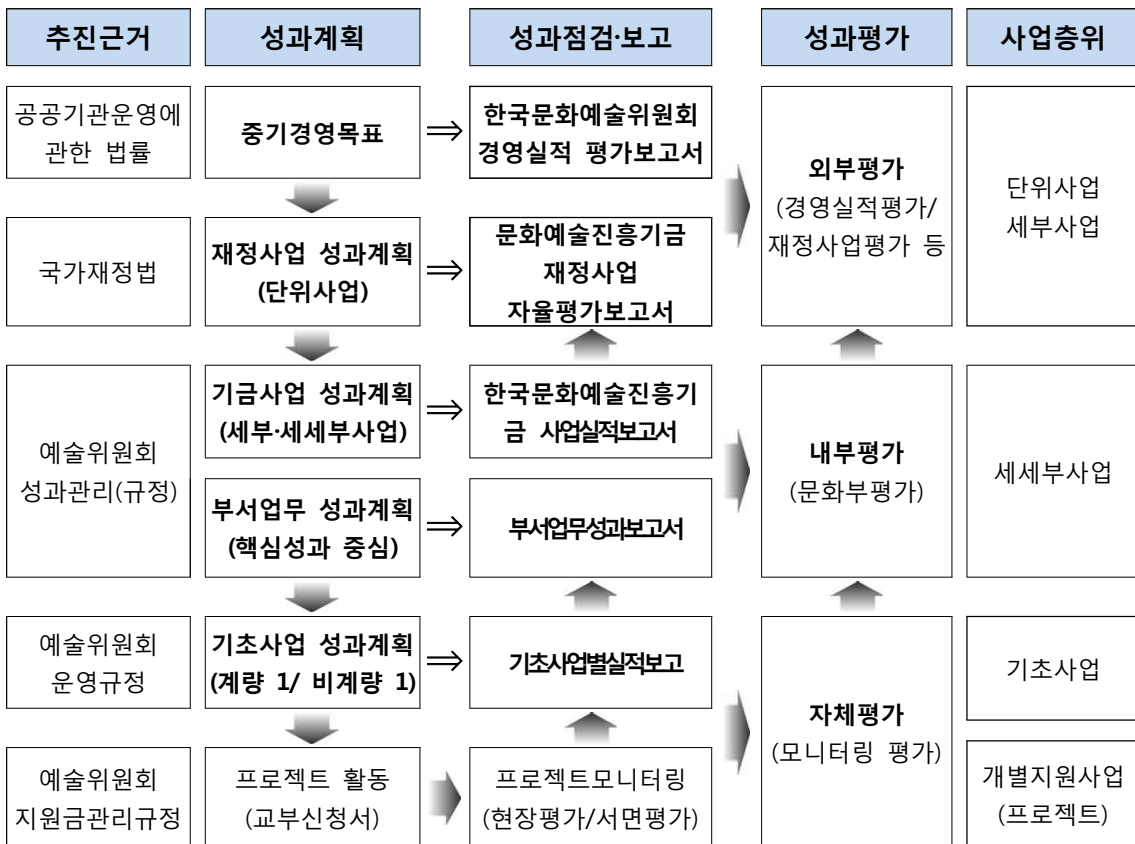
회계 구분	사업명	순 번	세부사업	예산액 (백만원)
국고 사 업 (23.6%)	장애인문화예술센터건립리모델링사업 (47.1%)	1	장애인문화예술센터건립리모델링사업	5,200
	문화다양성증진및정책환경개선 (26.3%)	2	문화다양성증진및정책환경개선	2,910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24.9%)	3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	2,750
	문화예술인패스(1.7%)	4	문화예술인패스	190
토 토 기 금 사 업 (공익사 업 적 립 금 예 술 분 야 총 괄 운 영 (50.7%)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19.0%)	5	문화예술기획경영전문인력양성	1,100
		6	예술분야 전문인력역량 강화지원사업	320
		7	예술기록관리전문인력양성	500
		8	진도예술인인력양성	100
		9	시각예술 전문인력양성 및 글로벌 역량 강화	600
		10	예술영재 육성	460
		11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650
		12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운영	300
		13	예술계 학교 졸업자 창업지원	500
		14	창작음악 실험무대	150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15.3%)	15	전국예술계고교 국악전공생 장학금 지원	600
		16	지역복합문화공간(문화회관) 활성화	1,800
		17	공연예술 발표공간 지원	1,100
	소외계층지원(5.5%)	18	장애인전문예술가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320
		19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바꾸기(마을미술 프로젝트)	1,000
	주요정책사업 지원(5.7%)	20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지원	250
		21	서울 국제공연 예술제	800
		22	14년 국제평론가협회 서울 총회 개최 지원	150
		23	문화예술사업 총괄평가운영	150
	문화복지전문인력양성(5.0%)	24	문화복지전문인력양성	1,200
	문화자원봉사활성화(1.3%)	25	문화자원봉사활성화	300
	문화가 있는날 운영(0.8%)	26	문화가 있는날 운영	200
	문화융성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지원(1.7%)	27	문화융성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지원	400
관 광 기 금 (21.8%)	통합문화이용권(여행)	28	통합문화이용권(여행)	10,225
경 륜 경 정 공 익 적 립 금 (1.5%)	통합문화이용권(스포츠)	29	통합문화이용권(스포츠)	700
고 용 보 험 기 금 (24%)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51.4%)	30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579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사업 (48.6%)	31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사업	547
<b>합계</b>	<b>16개</b>	<b>31</b>		<b>36,051</b>

## 제 2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평가제도 현황

### 1. 기금사업 성과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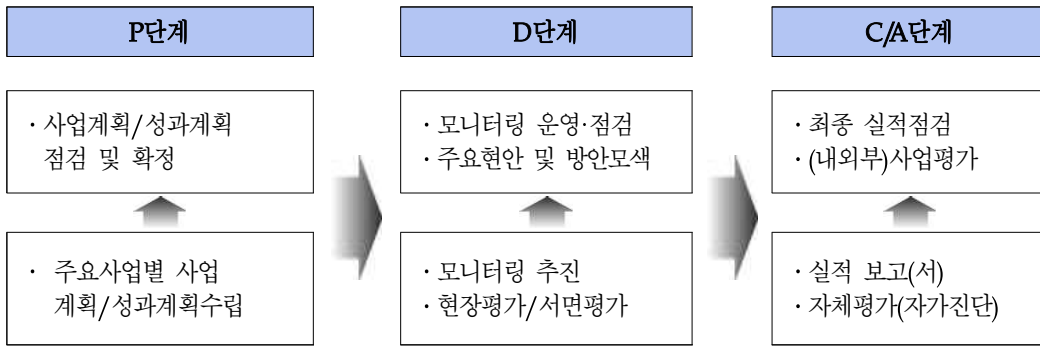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독립된 회계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문화예술진흥법 제 16조), 위원회는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집행하면서 동 기금을 바탕으로 주요지원사업을 수행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운용에 필요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공적자금으로서 국가법령 및 예술위원회 내부규정에 의거,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크게 외부평가제도와 내부평가제도로 구분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성과관리체계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과계획 → 성과점검·보고 → 성과평가 → 결과환류 방식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그림 7〉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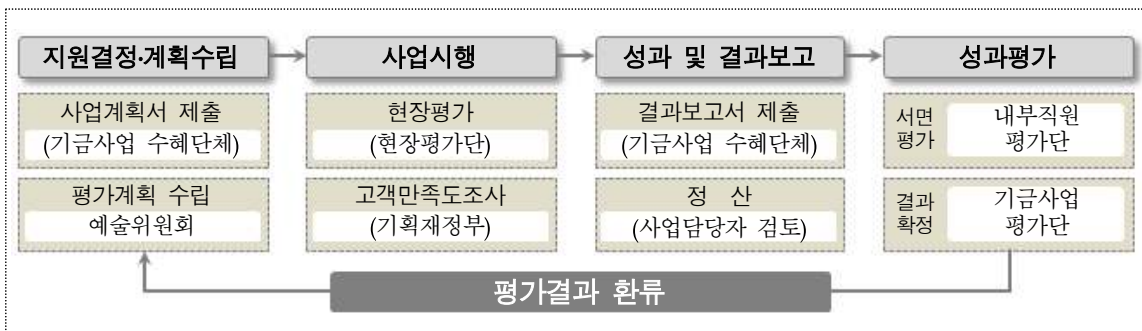


-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평가제도는 하향식(Top-down), 상향식(Bottom-up), 그리고 P-D-C/A 단계별 성과관리가 함께 나타나는 입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은 P-D-C-A 단계별 모니터링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사업유형에 따른 모니터링 제도 운영 및 기관 경영목표를 중점 관리하고 있음
- 모니터링 추진체계는 모니터링 계획 수립 → 모니터링 채널 구축 및 개선 → 모니터링 추진 → 상반기/하반기 실적 점검 → 자체평가 → 내외부평가 등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8> 문예진흥기금사업 모니터링·평가체계



<그림 9>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개별지원사업) 모니터링 체계



## 2. 외부 평가제도 현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구분 기준이 제시되고 있음. 이 중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됨. 공적자금의 관리의 주무기관

으로서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등에서 규정한 다양한 법정평가를 받아야 함

-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법정평가는 7가지임. 구체적으로 경영실적평가, 재정사업자율평가, 기금운영평가(자산운용), 기금존치평가, 보조사업운용평가, 복권기금사업평가,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등임. 평가부처와 근거법, 평가주기 등 법정평가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경영실적평가(기관장평가 포함)는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함. 책임경영에 따른 기관운영의 혁신과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주요사업 전반을 평가함. 평가방식은 P·D·C·A 평가지표에 따른 종합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동 평가결과에 따라 내부성과 보상체계와 연계하여 임직원 성과급 지급이 이루어지며, 기관장 평가가 “미흡”에 해당될 경우, 해임 등 인사조치가 단행됨
  - 둘째, 재정사업자율평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8조 및 제82조에 근거함. 사업운용에 중점을 두고 단위사업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P·D·C·A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방식을 사용,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등급화를 실시하는 방식임. 동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반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함. 즉, “우수” 이상은 예산이 증액될 수 있으나, “미흡” 이하일 경우 예산이 삭감됨
  - 셋째, 기금운영평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82조에 근거함. 자산운용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는 평가로서, 비계량적인 기금 자산운용 정책 및 관리측면과 계량적 성격이 있는 자산운용실적을 평가함. 평가결과 역시 예산에 반영되며, “미흡” 이하 기금운영비 예산 삭감됨
  - 넷째, 기금존치평가는 기획재정부가 평가부처로서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82조에 근거함. 기금존치평가는 기금의 설치목적,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등 사업 및 재원구조를 평가하며, 평가지표별 평가 종합을 통해 해당 기금의 존치여부를 판정함. 평가결과는 기금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나아가 세부사업 존치여부 등 필요성 평가결과를 제시함
  - 다섯째, 보조사업운용평가는 평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실시하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함. 동 평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한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고, 그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보조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평가과정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른 (보조사업)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환류로서 보조사업 개선 및 평가결과 예산 반영 등이 있음
  - 여섯째, 복권기금사업평가는 평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실시하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에 근거함.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세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의 결과를 복권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음(동조 제3항). 동 평가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중 문화나눔사업의 성과평가로 사용되며, P·D·C·A평가지표를 사용함.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은 예산 증액이 되는 등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며, 사업개선을 위한 환류가 가능함

- 일곱째,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평가주체로 매년 실시하며,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에 근거함. 세세부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P·D·C·A평가지표를 사용, 평가지표별 점수종합을 통한 등급화를 실시함. 평가결과는 세세부사업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
-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는 외부용역평가로 이루어지며, 단위사업·세세부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평가를 추구하고 있음. 평가결과 예산의 가감 및 사업개선을 위한 자료로 반영되고 있음. 동 사업은 법정 외부평가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문화관광체육부와 예술위원회 양자 간 협의에 의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이고, 일정정도 피평가기관인 위원회의 평가계획이 반영되기 때문에 내부평가적인 측면과도 연관되어 있음

<표 39> 문화예술진흥기금 외부 법정평가제도 현황

순번	평가제도명	평가부처	근거법	주기
1	경영실적평가 (기관장평가 포함)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매년
2	재정사업자율평가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제8조 및 제82조	3년
3	기금운영평가(자산운용)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제82조	매년
4	기금존치평가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제82조	3년
5	보조사업운영평가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매년
6	복권기금사업평가	기획재정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매년
7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	매년

<표 40> 문화예술진흥기금 외부 법정평가별 대상사업

평가제도명	평가대상사업총위			비 고
	정책·주요사업	단위사업	세부·내역사업	
경영실적평가	○	-	-	주요사업평가
재정사업자율평가	-	○	-	사업운영부문

평가제도명	평가대상사업층위			비 고
	정책·주요사업	단위사업	세부·내역사업	
기금운영실적평가	-	-	-	자산운용부문
기금존치평가	-	-	○	기금존치여부
보조사업운영평가	-	-	○	보조금사업
복권기금사업평가	-	-	○	복권기금사업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	-	○	세세부사업

### 3. 내부 평가제도 현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평가는 부서 또는 사업단위의 자체평가와 기관차원에서 수행하는 사업평가 및 부서평가(BSC)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부서평가를 제외할 경우 내부평가 제도는 크게 종합평가, 사업평가, 일반지원 사업평가로 평가부문을 구분하여 접근 가능함. 이러한 접근은 가장 포괄적인 평가방법에서부터 세부단위의 개별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가 시도되고 있음을 의미함
- 종합평가(Strategy level)는 기금사업종합운영(기금전체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함. 평가위원회 평가로서 내·외부 평가단 평가로 이루어지며, 주요평가내용은 기금사업 전략, 추진체계, 성과 등 종합적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방식을 지향하고 있음. 평가결과는 기금사업의 구조, 운영방식 등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사업개선에 반영되고 있음
  - 평가방법으로서 연간 추진된 기금사업 평가결과를 정책 및 사업층위별, 예술분야별 및 일반 지원사업 등 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자체평가 추진
  - 평가내용은 첫째, 중점 정책목표의 타당성 및 종합 달성도, 둘째, 문예진흥사업의 구조와 운영, 지원관리체계의 적정성, 셋째, 분야간, 핵심역량사업간, 사업목표간 자원배분의 적정성 등임
  - 평가결과 환류는 연간 운영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 사업전략추진체계·성과 등 진단과 문제점 지적 및 개선과제를 제안함
- 사업평가(Program level)는 지역협력형 사업,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심층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협력형 사업평가는 외부전문기관 용역 평가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문예진흥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평가가 주된 내용임.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별 사업개선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기금의 지역배분이 보다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됨.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의 조치로서 동일한 보조사업자가 차후 지원신청시 심의에 반영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등급 책정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우선지원 또는 지원결정 배제 등을 할 수 있음

- 16개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의 지역문예진흥사업 설계(기본계획), 수행과정, 성과 등 지역협력형사업의 목표 달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추진
  - 지역협력형사업의 실제 수혜자인 지역예술인단체의 만족도 조사 병행 추진
  - 지역협력형사업의 세부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별도 구성
  - 평가대상 사업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시도기획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 등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이 해당
  - 평가영역은 ① 기존 지역협력형사업의 평가체계, 지표, 방법의 재검토 및 신규 설정, ② 지역협력형사업의 설계(기본계획), 수행과정, 성과 등 평가, ③ 지역문화예술지원 평가체계의 표준모델 마련, ④ 지역협력형사업의 현장평가 실시, ⑤ 지역별, 지표별, 단위사업별 평가결과 종합 비표, ⑥ 평가개선 과제 및 방안 제안 등임
-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평가는 외부 전문기관 용역평가방식으로 이루어짐. 문화나눔사업의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각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 미진한 부분은 차년도 사업개선에 반영시키고 있음
- 사업계획-집행-성과의 단계별 공통 및 특성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성과 평가 추진
  - 평가방법은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면평가, 현장평가, 수혜자만족도 조사 등 다차원적 분석을 토대로 실시
  - 평가결과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별 평점 합산하여 5단계 등급화
  - 차년도 지원심의 시 “보통” 미만 등급사업은 지원금액 삭감 및 지원대상 제외하고, “우수” 이상 등급사업은 차년도 지원금 원칙상 증액
- － 심층평가 역시 외부용역평가방식으로 이루어짐. 이 평가는 개별지원사업 중에서 심층평가가 필요한 일부사업 또는 정책사업에 심도있는 분석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음
- 예술행사지원사업의 경우 외부전문기관 용역 평가를 하거나, 다년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예술전용공간지원사업은 분야별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서면평가 후 차년도 지원심사 전 심층평가를 추진함
  - 차년도 지원심의시 “보통” 미만일 경우 지원금액 삭감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우수” 이상 등급사업의 경우 원칙상 증액함으로써 우수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지원

## 제도 및 사업개선을 위한 적극적 환류 실시

〈표 41〉 문화예술진흥기금 내부평가제도 현황

평가부문	평가대상	평가방법	주요내용	평가환류
종합평가 (Strategy level)	기금사업 종합운영	내외부 평가단평가	기금사업 전략· 추진체계·성과 등 종합 진단	기금사업 구조·운영방식 등 사업개선 반영
사업평가 (Program level)	지역협력형 사업	외부용역평가	지역문예진흥사업 효율성 및 성과평가	지역별 사업개선 환류 및 기금의 지역배분 반영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외부용역평가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	차년도 사업개선에 반영
	심층평가 (*집중평가 제도 변경)	외부용역평가	개별지원사업 중 일부사업 및 정책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차년도 지원심의 및 사업개선에 반영
일반지원 사업평가 (Project level)	개별지원사업 전체	현장평가(표본), 서면평가(전수)	개별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차년도 지원심의 및 사업개선에 반영

※ 부서업무성과평가 제외

※ 내부평가제도는 '14년부터 일부 변경 예정

□ 일반지원 사업평가(Project level)는 개별지원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평가방법은 현장평가(표본), 서면평가(전수) 방식으로 이루어짐. 개별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과 계획대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가 주요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원심의 및 사업개선에 반영하는데 유용한 평가라 할 수 있음. 일반지원 사업평가는 위원회가 개별사업의 수행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음

- 현장평가는 해당분야 외부심사위원 및 사업담당자 등으로 실시되며, 사전에 현장평가가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를 선정, 표본평가를 추진함
- 사업계획-집행-성과 단계별 6개 공통 평가지표를 통한 운영실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함
- 평가지표(영역)은 ①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사업내용 적정성, ② 사업이행 및 추진방식의 적절성, 목표달성 노력도 ③ 사업목적 충실성 및 사업추진력, ④ 해당 예술분야 발전 기여도 등임
- 평가지표별 배점에 대한 평점 합산 후 5단계 등급화 실시함. 현장평가와 서면평가의 가중치 6:4 비율로 종합평점을 도출하며, 현장평가가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평가 100% 적용함

### 제 3절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문제점

-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문예진흥기금 관련 법정 내외부 평가의 내용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의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함
- 먼저, 문화예술진흥법 제 35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근거를 보고, 그 간의 동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경과를 살펴봄
- 다른 법정평가와 비교시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의 특수성과 평가방식, 평가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함.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회에 걸친 해당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공통적으로 제시된 동 평가의 문제점을 정리함
  - 1차 심층인터뷰는 평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와 피평가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평가담당자를 대상으로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 2차 심층인터뷰는 동 평가에 평가단 위원으로 다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지표, 평가방식, 평가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음
  - 2회에 걸쳐 진행한 심층 인터뷰 대상자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현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에 충분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관계자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다각적 의견제시가 이루어졌음
-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문제점 분석은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과 평가운영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함. 전자는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상 나타나는 평가도구 및 방법의 적합성으로 정성적 평가가 많은 동 사업평가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평가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업평가 방식의 개선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후자는 평가단 구성 등 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로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평가를 제고하기 위한 절차상 문제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하는데 있음

#### 1.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 35조에 따른 성과평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지

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사업의 개선 및 재원의 적정배분 체계 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함(동조 제2항)
  - － 평가 목적과 필요성, 평가의 대상과 범위,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계획,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에 대한 사안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동 시행령 제31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과평가의 방식 및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시 고려되어야할 사항을 충족한 자<sup>2)</sup>,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동 시행령 제32조)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예진흥기금 지원성과를 측정·평가하는데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동 시행령 제33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에 따라 1973년에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예술지원기구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 현장성 확보를 위해 2005년 8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면서, 통상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 대표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운용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지휘감독, 보고, 등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협의적 관계라는 것임
- 아래 <표42>와 같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와 동일한 성격의 성과평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인문진흥재단 외에는 없음. 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감독, 보고, 감사 등의 형식으로 기금관리에 대한 메타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8조는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시 해당자격을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또는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3. 법조계·교육계·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등임

나아가 이러한 자격 외에 위원회 구성시 추가 고려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및 전통예술의 분야별 전문가가 2명 이상,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5명 이상 포함될 것
2. 어느 하나의 단체(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가 과반수를 넘지 아니할 것
3.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등

<표 42> 2015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개

주관부처	수	기관명	기금	기금 근거	주관부처 기금평가 근거
교육부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8조(공단에 대한 감독) 제30조(보고와 검사)
문화체육 관광부	4	<b>영화진흥위원회</b>	영화발전기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b>25조의 3(성과의 평가)</b>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법	39조(회계감독 등)
		<b>한국문화예술위원회</b>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법	<b>35조(성과의 평가)</b>
		<b>한국언론진흥재단</b>	언론진흥기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b>37조(성과의 평가)</b>
산업통상 자원부	2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기금	무역보험법	제55조(예산과 결산) 제59조(지도·감독) 제60조(보고 및 검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31조(기금의 관리·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리 운용
보건 복지부	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보건복지부장관 관리운영
고용 노동부	1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지도·감독 등)
금융 위원회	5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기금 운용계획 등) 제43조의4 제3항 제47조(감독) 제48조(보고·검사 등)
		기술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42조(예산), 제43조(결산), 제46조(감독) 금융위원회의 감독 제47조(보고·검사)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38조(예산), 제39조(결산), 제42조(감독) 금융위원회의 감독 제43조(보고·검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	예금자보호법	제23조(예산과 결산) 제27조(감독) 제28조(보고·검사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 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기금회계 및 결산) 제60조(감독)
미래창조	1	한국방송통신전파	방송통신발전기금	전파법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

주관부처	수	기관명	기금	기금 근거	주관부처 기금평가 근거
과학부		진흥원			진흥원) 제5항 및 동시행령 제87조(업무지도감독)
인사혁신처	1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제17조(공단에 대한 감독)
중소기업청	1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 수립과 기금 결산) 제77조(예산과결산) 제78조(업무의 지도감독)
계	17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2015.1.29.)

- 문화예술진흥법 제 35조는 공적자금의 책임성 담보 차원에서 문화부와 위원회 간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의 협의를 통해 매년 진행한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이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에 의한 각종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평가제도들이 추가되면서, 35조의 평가는 크게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실정임
  -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재정사업자율평가(국가재정법 제8조 및 제82조)와 평가의 차별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중복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35조의 평가는 기관 간 상대적 비교를 통한 우열확정과 전혀 상관없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위원회 양자 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용의 적절성, 개선방안 제시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평가제도와 중복되게 운영될 필요가 없음
-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동일한 형식의 기금 성과 평가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 자체를 하지 않고 있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각 기관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경영실적평가,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각종 평가를 수행하면서도 추가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양자 간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큰 실익이 없으며, 이에 대해서 평가주관부처인 문화부 역시 어느 정도 문제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의미함
- 그 간의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는 전문기관에 의해서 수행되어져 왔음(아래 <표 43> 참조). 평가대상은 2009년도까지 개별 사업의 숫자 차이는 있으나,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 전체적인 수준에서 평가되어 왔음. 그러나, 2010년 이후 정책사업은 폐지하고, 단위사업(5개, 2013년 4개)과 세부사업(15개, 2013년 16개)을 대상으로 평가가 수행되었음
- 평가부문은 전략 및 추진체계, 해당사업의 평가로 이루어져 왔으며, 2010년 이후에는 경영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해왔음. 평가방법은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PDCA 평가지표 평가를 해왔으며, 평가결과 우수사례 공유, 내부 성과보수체계 반영, 차년도 예산편성시 활용, 사업·업무개선 환류, 평가체계 개선 등의 평가환류 과정을 거쳤음

-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매년 실시한 문예진흥기금 성과평가의 유용한 사업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 성과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함

제 3장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표 43〉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 경과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가수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한국정책평가연구원
평가대상	정책사업 3개(전체) 단위사업 8개(전체) 세부사업 20개	정책사업 1개(전체) 단위사업 6개(전체) 세부사업 32개(전체)	단위사업 5개(전체) 세부사업 15개(전체) ※ 정책사업 폐지	단위사업 5개(전체) 세부사업 15개(전체) ※ 정책사업 폐지	단위사업 5개(전체) 장르사업 18개(전체) ※ 정책사업 폐지	단위사업 4개(전체) 세부사업 16개(전체) ※ 정책사업 폐지
평가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추진체계</li> <li>▪ 사업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추진체계</li> <li>※ 경영지표 활용</li> <li>▪ 사업평가</li> </ul>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 및 추진체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사업별 계량/정성평가</li> <li>- 지원사업 시스템 및 구조 평가</li> <li>- 지원사업 운영체계 정성평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 및 추진체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비전목표 및 전략체계 평가</li> <li>- 사업 자원배분 등 추진체계 평가</li> <li>※ 경영평가 '경영효율화' 평가지표 활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전략·추진체계평가</li> <li>- 기관전략과 사업전략평가</li> <li>- 사업별 추진전략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단위사업, 세부사업</li> <li>- 미국의 PART방식 적용</li> <li>- PDCA 평가지표 평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단위사업, 세부사업</li> <li>- 미국의 PART방식(PDCA) 적용</li> <li>- PDCA 평가지표 평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단위사업, 세부사업</li> <li>- 미국의 PART방식 적용</li> <li>- PDCA 평가지표 평가</li> </ul> </li> </ul>
평가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 지원정책 활용</li> <li>○ 사업, 업무개선 환류</li> <li>○ 법정평가 대응 활용</li> <li>○ 평가체계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사례 공유·학습</li> <li>○ 사업, 업무개선 환류</li> <li>○ 차년도 예산편성시 활용</li> <li>○ 평가체계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사례 공유·학습</li> <li>○ 내부 성과보수체계 반영</li> <li>○ 차년도 예산편성시 활용</li> <li>○ 사업, 업무개선 환류</li> <li>○ 평가체계 개선</li> </ul>	

## 2. 평가지표의 문제점<sup>3)</sup>

- 평가지표의 개념적 혼동으로 인하여 사업보고서만을 가지고 서면평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평가자들이 평가지표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화·명시화시키는 동시에 평가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함.
- 사업계획 평가지표의 1-1에서 언급한 “사업목적”이 일반적으로 사업보고서상에서 추상적으로 기술되는 경향이 있어서 “성과목표”에 연계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부합되는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사업계획 평가지표의 1-3의 “사업내용”과 “추진방식”은 현장을 알아야 하는데 평가자의 입장에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채용규모의 적절성, 수혜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판단할 수 있음.
- 성과계획 평가지표의 2-1에서 “성과지표”가 대부분 결과(outcome)가 아니라 산출물(output)을 측정하는 것이라서 추상적으로 설정된 사업목적과 연계하여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예를 들어,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의 평가지표는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지표로 되어 있어서 계획단계나 예산 등과 관련하여 계량적 산출물을 도출하기 어려운 구조임.
  - 이러한 상황에서 인위적·자의적으로 만들어진 산출물과 사업목적을 연계시켜서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음.
- 같은 맥락에서 성과계획 평가지표의 2-2에서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문화예술사업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음.
- 집행 평가지표의 3-1에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에서 일반적으로 계획대비 집행률만으로 판단하는데, 집행정도만으로는 부적합 집행이나 부적격자에 대한 지원 등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성과 평가지표의 4-1에서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가

3) 2014년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객만족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비가시적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 방법이나 결과치가 높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성과 평가지표의 4-2에서 “실질적인 효과”에서 실질적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이며 세부기준 1의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 세부기준 2의 “설립목적과 경영전략 목표 달성에 충분히”, 세부기준 3의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만족할”과 같이 주관적 판단이 상당히 개입될 여지가 많은 표현으로 기준을 설정해 두어서 평가자의 주관개입과 평가자 간의 편차가 매우 큼. 질적 성과가 많은 동 사업의 성격상, 주관적 개입이 많은 양적 평가지표를 활용하다보니 평가과정에서 괴리가 발생함.
- 성과 평가지표의 4-3에서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에서 평가결과를 환류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이 모두 결정되기 때문에 환류가 본질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세부사업별로 다른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고려한 표준지표를 만들기가 힘들. 세부사업별로 특수성들을 반영한 지표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언급된 평가지표의 한계는 일반적으로 다른 부처 및 기관의 사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점들이지만, 특히 문화예술의 목표치, 효과, 추진방식 등을 고려했을때 보다 구체화시키고 명시적으로 평가자들이 혼동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평가자들이 평가지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워크숍이나 설명회를 통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3. 평가방식의 문제점

- 평가위원은 지표별 평가를 실시하고, 미충족시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체계로 평가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용이치 않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 평가단의 평가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사업보고서만을 가지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지표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일환으로 핵심적인 이슈에 대한 대안보다는 부차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안 자체가 실효성이 낮거나 중요도가 낮은

경우가 많음.

- 이렇게 설정된 개선과제가 사업보고서의 개선실적으로 설정되어서 평가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음.
- 질적인 성과를 제시하면서 문화의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그간의 문화예술위원회는 현실적 한계로 실적위주의 성과평가를 지향해 왔음.
-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틀을 그대로 사용하여 중복성이 농후하며, 본 평가를 해야하는 명확한 목적이 불분명함. 즉, 동 평가가 단순 평가인지, 연구평가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이 필요함. 평가의 목적이 단순 사업운영체제, 관리체제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실익이 낮음.
- 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은 공모지원사업과 위원회에서 직영운영하거나 주관단체지정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혼재되어 있음. 양 사업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방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일한 지표를 사용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공모지원사업을 표준으로 하는 사업지표와 직영은 별개의 문제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심층평가로서 기금사업별 평가대상으로 전체사업이 아닌 필요한 기금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봄. 평가과정에 “현장인력 워크숍”을 필수 의견 수렴과정으로 포함시키고, 시기적으로 10월까지 평가가 완료될 수 있다면 차후년도의 사업개선 반영이 가능할 것임. 현 체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담당자, 외부(국제)사업 전문가, 기타 수혜자를 포함한 다양한 참여그룹을 구성, 해당 사업별 문제점 진단을 도출하는 다면적 접근방식 부족함.

#### 4. 평가운영의 문제점

- 평가단 구성 시 위원회 스스로가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밀착된 연계성을 갖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주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함.
- 일례로 복지분야의 복권기금나눔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요건을 강화하여 해당 사업운영이 정교하고 세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관련기관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관련 서류를 업데이트 하면서 실제사업과 조율해나가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담당자가 바뀔 경우 해당 사업의 지원은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수혜기관의 담당자의 역할은 지원사업의 실질적 존속요건으로서 매우 중요함.
- 그러나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예술인, 예술단체의 서면작업은 복지사업 등 타 분야의 지원사업과 비교해서 체계적이지 못함. 궁극적으로 결과보고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연계가 되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해당 사업계획 등에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서면담당자들이 지원 해주는 제도마련이 필요함.

- 동 평가에서 직영사업은 위원회 부서근무평가에 적용·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연동체계는 평가관리적 관점에서 동기가 부여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본질적 목적은 기금사업이 실효성있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근무평정과 연동하는 것이 실적위주로 치우치면서 이러한 목적달성을 저해할 여지가 많음.
- 사업평가 환류는 시기적 한계로 인하여 실효성있게 되지 못하고 있음. 2015년에 2014년 사업을 평가 시에 2015년 계획은 이미 다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에야 평가환류가 가능한 체계임.
- 평가 시점이 당해년도 하반기이기 때문에 목표치 달성을 평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시기상조임.
- 등급화, 점수화는 갈등만 양산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과 실효성있는 방향제시에는 유익한 정보가 되지 못하고 있음. 향후 방향 및 정책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 등급화, 점수화는 사업의 정확한 성과와 효과를 확인하는데도 실효성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음. 사업의 분석 및 진단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 시각에서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고 사업의 사후 방향과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이 필요함.
- 평가환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의 효과, 미진 및 개선점 등에 초점을 맞춰 해당 등급을 부여한 근거를 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설명 제시가 필요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문가는 거의 없음.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적을 때 체계적·심층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함. 그러나 기본적으로 평가를 위한 예산이 매우 적음. 그에 따라 평가위원들은 세부사업의 심층적 평가보다 피상적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수 밖에 없음. 평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책정해야 함.
- 평가단 구성시 객관성, 전문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구성절차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수혜자 대상 평가와 2-3회에 걸친 전문가 토론, 사업별 그룹토론 등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제 4절 소 결

- 평가지표, 평가방식, 평가운영의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 <표 44>와 같음.

<표 44> 평가의 문제점 정리

구분	문제점
평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평가 시에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에만 의존하여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지표의 객관화·구체화·명시화(예: 사업목적, 성과목표, 사업내용, 추진방식, 합리적, 충실히 등)</li> <li>- 평가자들에 대한 사전교육 및 워크숍 실시</li> </ul> </li> <li>○ 성과목표의 낮은 신뢰성과 타당성(예: 고객만족도 조사)</li> <li>○ 평가지표의 충실한 환류가 쉽지 않음</li> <li>○ 세부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의 추가적 설계가 필요함</li> </ul>
평가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자의 현장에 대한 이해와 자료부족으로 지협적인 개선과제 제시가 많음</li> <li>○ 질적인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실적위주의 성과평가를 지향해 왔음.</li> <li>○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틀을 그대로 사용하여 중복성이 높음</li> <li>○ 공모지원사업, 주관단체지정, 직영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방법이 필요함</li> </ul>
평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단 구성 시 위원회와 밀착된 연계를 통하여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주는 체계가 필요함</li> <li>○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담당자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평가체계 마련</li> <li>○ 직영사업평가 결과를 위원회 부서근무평가에 적용·활용하는 방식의 제고가 필요함.</li> <li>○ 사업평가 환류의 시기적·절차적 한계가 있음</li> <li>○ 점수화, 등급화는 향후 사업 방향 및 정책결정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li> <li>○ 평가환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의 효과, 미진 및 개선점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li> <li>○ 체계적·심층적 평가를 위해서 평가위원회 예산확대 필요</li> <li>○ 평가단 구성 시 객관성, 전문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구성절차 방안 필요</li> <li>○ 전문가 토론, 사업별 그룹토론 등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분석과 향후 방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li> </ul>

## 제 4장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개선을 위한 대안모색

### 제 1절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개선방향

- 본 장에서는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함. 지금까지 살펴본 정부사업평가 현황,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문제점, 유사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설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문제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평가방식 및 평가운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함
-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개선 방향설정을 위한 고려사항은 동 평가가 재정사업자율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나타나는 차별성 문제와 운영 측면에서 매년 시행되는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객관성·타당성·연계성·지속성 측면에서 어떻게 질적 담보를 유지할 것인가에 있음
- 이러한 핵심사항들과 결부되어 평가지표, 평가방식, 평가운영 등에서 다양한 파생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현재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는 재정사업자율평가와 거의 동일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문화부는 예술위원회 기금사업평가를 수행하게 되므로 결국 문예진흥법 제 35조의 평가는 문화부가 이미 평가한 내용을 다시 평가하는 구조로 차별성이 없고, 평가결과 활용도도 낮음
  -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를 준용하는 것은 피평가기관의 선행 진단(학습), 기관의 평가 부담 완화 및 평가결과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실제 담당자가 동 평가를 향후 사업 개선에 반영하려 할 때 실용적 대안을 거의 제시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평가결과 활용도는 떨어지고 있음
  - 이는 평가지표의 적절성 문제이기보다는 동일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가 반복되는 비효율성에 있으며, 단답형 방식의 메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는 평가지표 구성상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서 정책대안 제시가 불가능함
  -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표는 사업의 특성이 다양한 다수의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비교 평가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소의 평가지표라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함
  - 그러나,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는 문화부와 예술위원회 양자 간 이루어지는 내부평가라는 점에서 기금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방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둘째, 보다 근본적인 핵심은 문예진흥법 제 35조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데 있음
  - 문화부와 예술위원회 간에 이루어지는 평가는 양자 간의 내부평가로서 올해는 몇 점의 점수를 획득했는가라는 평가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금사업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정책목적을 보다 발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현황과약 및 개선안 도출을 시도하는 진일보한 접근노력이 중요함
  - 이를 위해 동제도의 운영도 평가적 접근보다는 사업연구 및 진단적 접근을 통해 운용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설정이 바람직함. 내부적으로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개선에 도움을 주고, 외부적으로는 재정사업자율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재정사업자율평가 (4-2) 지표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10점)” 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 실시여부를 보고 있음
    -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1) 원점에서 사업의 존속여부 및 사업추진방식의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경우이어야 하며, 2) 체크리스트 방식을 통한 성과지표 달성도 측정은 종합적인 사업평가로 인정되지 않음(기획재정부, 2015년 재정사업자율평가지침)
    - 따라서, 문예진흥법 35조의 평가를 종합적인 분석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 지표를 준용하는 방식보다는 연구진단으로서 심층평가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유용성 측면에서나 대외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평가로서 인정받을 것으로 사료됨
- 셋째, 운영 측면의 접근은 평가결과의 타당성 및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평가가 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음
  - 평가단 구성방안 및 지속성 확보방안, 사업반영을 위한 평가기간 및 시기 조정, 평가단과 사업담당자 간 상호소통체계 구축, 전문가 확보방안 및 이를 위한 적절한 예산 투입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이하에서는 상기한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평가지표, 평가방식, 평가운영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함

## 제 2절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 개선방안

## 1. 평가지표

- 현재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지표상 나타나는 문제점은 아래 표와 같음. 평가상 문제에서 나타나는 주된 특징은 평가지표의 적절성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예술사업 속성상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표를 준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임
- 사업목적의 명확성 및 성과목표 달성 부합도(1-1), 사업내용의 적정성, 추진방식의 효율성(1-3), 목표치의 구체성 및 합리성(2-2),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여부(4-1) 등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지표 자체의 문제보다는 문화예술의 속성상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다른 정책분야와 비교하여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나타냄
  - 이는 예/아니오 방식의 체크리스트 방식의 평가방식이 갖는 한계점과 평가운영 측면에서 후술하게 될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및 적절한 구성문제와 연계됨
- 단순 산출지표가 아닌 결과지표 필요성(2-1), 단순 집행률 외 집행의 적절성 평가의 한계(3-1) 등이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것과 같이 사업의 효과성 및 적절성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음

〈표 45〉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지표적용의 애로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상 문제	가중치
계 획 (25)	사업 계획 (15)	1-1. 사업목적의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문화예술사업 속성상 어려움	5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5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문화예술사업 속성상 어려움	5
	성과 계획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결과지표가 아닌 산출지표로서 평가어려움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문화예술사업 속성상 어려움	5	
집행(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계획대비 집행률만 고려, 부적합 집행이나 부적격 지원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15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	10	
성과(45)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고객만족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음 / 비가시적이라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30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상 문제	가중치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사업계획 기확정(기간조정 필요)	12
	43. 우수사례 평가		3
<b>전체 합계</b>		100	100

\* FGI 내용 재정리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지표 설정의 기본방향은 동 평가의 목적이 단순평가가 아닌 연구 및 진단평가라는 점에서 단답식 또는 점수화 평가방식을 탈피하고, 심층 진단이 가능한 방향으로 지표를 재설정하는 것임
- 이러한 방향설정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함
  - 두 가지 안의 기본 출발점은 모두 단답식의 단순평가가 아닌 평가자 입장에서 사업의 심층분석을 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공통됨
  - 다만 진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가에 차이가 있을 뿐임. 중요한 점은 연구자가 당해 사업을 적절히 진단하기 위해서 해당 평가요소에 적절한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 따라서 두 가지 안 모두 평가지표에 맞춰 담당자가 작성한 서면에 대한 심사 방식(메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에 가까운 평가자들이 직접 제공된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방면의 사업진단을 하는 것은 동일함

1) 제 1안: 진단방식 평가지표 예시

- 첫 번째 안으로 계획-집행-성과의 방식을 준용하여 심층평가가 가능하도록 지표를 설계하는 것임
- 최근 예술위원회 사업 중 심층진단이 많이 시도되었던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연구를 중심으로 상위평가인 ‘복권기금 사업평가’ 및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를 반영, 세세부사업의 평가지표를 제시한 연구( 양혜원 · 박종웅 외, 2014)는 심층평가 방식으로서 유용하며, 이는 전반적인 공통지표로 사용가능함

〈표 46〉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 지표설정(공통)

평가영역	평가지표	지표유형	조사방법
사업목적 [계획단계]	<b>1-1.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의 명확성</b> • 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비계량	현장조사, 인터뷰, 보고통계
	<b>1-2. 목표의 적절성</b> • 성과지표의 타당성 • 목표설정의 적절성	비계량	현장조사, 인터뷰, 보고통계
	<b>1-3. 사업 내용의 적절성</b> • 대상집단(수혜대상) 설정 및 선정의 적합성 •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의 적절성 • 자원 확보 및 투입의 적절성	비계량	현장조사, 인터뷰, 보고통계
사업운영 [집행단계]	<b>2-1.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b> • 사업수행주체 및 절차의 적절성 • 서비스 전달체계와 인력활용의 적절성	비계량	현장조사, 인터뷰, 보고통계
	<b>2-2. 자원투입의 효율성과 합리성</b> • 예산집행률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 • 사업이행노력	계량/ 비계량	현장조사, 인터뷰, 보고통계
	<b>2-3. 사업집행관리의 적절성</b> • 홍보활동의 적절성 • 모니터링 및 민원처리의 적절성	비계량	현장조사, 인터뷰, 보고통계
사업성과 및 환류 [성과 및 환류 단계]	<b>3-1. 성과목표 달성도</b> • 성과지표 달성도(수혜자 수, 이용자 만족도) • 사업효과 • 정책적 타당성 • 우수사례 발굴 노력	계량/ 비계량	만족도조사, 효과성조사, 타당성조사, 현장조사, 인터뷰, 보고통계
	<b>3-2. 사업개선노력도</b> • 모니터링 추진체계 적절성 • 모니터링 및 민원결과의 사업반영 노력	비계량	현장조사, 인터뷰, 보고통계

\* 양혜원·박종웅 외(2014: 41)을 중심으로 정리함

- 심층적 진단방식의 평가지표의 구체적 내용과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세세부 사업에 적용시 연구자의 관점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 강조점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지표를 추가할 수 있음

〈표 47〉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지표(공통) 내용과 평가기준 (예시)

평가영역	평가지표	내용 및 평가기준
사업목적 [계획단계]	<b>1-1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의 명확성</b> • 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세세부사업이 단위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가? -세세부사업 목적과 내용이 단위사업 목표를 반영하고 있는가?  -세세부사업 목적이 구체적인가? 사업관계자와 수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되었는가?
	<b>1-2 목표의 적절성</b> • 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지표가 결과지표로 선정되었는가? 측정산식은 구체적인가?

2014년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평가영역	평가지표	내용 및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설정의 적절성</li> </ul>	사업관계자들의 역량개선과 정책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성과목표치가 적절한 근거와 논리를 갖고 설정되었는가? -과거 사업성과를 고려, 적절한 수준으로 목표가 설정되었는가?
	<b>1-3. 사업 내용의 적절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집단 설정 및 선정의 적합성</li> <li>•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의 적절성</li> <li>• 재원 확보 및 투입의 적정성</li> </ul>	-대상집단이 사업의 목적, 내용에 맞게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선정절차가 명확, 공정, 투명하게 설정되었는가? -프로그램내용이 사업목적 달성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되었는가? 절차 또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가? 지원수준은 사업목적 달성을 수 있도록 충분한가? -세세부사업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었는가? -사업목적 및 내용을 고려 형평성에 맞게 적절히 배분되었는가?
	<b>2-1.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주체 및 절차의 적절성</li> <li>• 서비스 전달체계와 인력활용의 적절성</li> </ul>	-사업주체 선정이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투명한 절차에 기초하여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서비스전달체계의 효과적 구성,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업무분담, 수혜자의 편의성, 접근성 제고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는가?
사업운영 [집행단계]	<b>2-2. 자원투입의 효율성과 합리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집행률</li> <li>•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li> <li>• 사업이행노력</li> </ul>	-세세부사업 예산계획 대비 집행률 (%) -세세부사업 예산집행상 낭비최소화 및 예산절감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당초의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는가? 중간에 변경사유가 생겼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타당한가?
	<b>2-3. 사업집행관리의 적절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활동의 적절성</li> <li>• 모니터링 및 민원처리의 적절성</li> </ul>	-수혜자에 대한 홍보 및 언론홍보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가? -수혜자에 대한 홍보 및 언론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견수렴을 위한 통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민원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b>3-1. 성과목표 달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 달성도(수혜자 수, 이용자 만족도)</li> <li>• 사업효과</li> <li>• 정책적 타당성</li> <li>• 우수사례 발굴 노력</li> </ul>	-목표 수혜자 수, 이용자 만족도 점수는 목표치를 달성했는가? -사업참여(수혜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었는가? 문화향유 및 인식이 향상되었는가? 등 -투입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크게 나타나는가? -세세부사업별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업성과 및 환류 [성과 및 환류 단계]	<b>3-2. 사업개선노력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추진체계 적절성</li> <li>• 모니터링 및 민원결과의 사업반영 노력</li> </ul>	-모니터링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모니터링 결과 사업반영 및 개선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양혜 원·박종웅 외(2014: 41-45) 재정리

□ 동 평가지표는 기존 평가지표와 마찬가지로 계획, 집행, 성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업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 등과 같이 연구자의 판단이 가능한 재량의 범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답식 형태의 평가지표와 차별성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예술위원회에서 제출한 서면평가에 한정할 수 없으며, 연구자는 정확한 판단과 책임의식을 갖고 현장조사, 인터뷰 등 1차 자료 수집 또는 기존의 2차 자료의 통계적 접근 등을 통해 해당 세세부사업을 진단해야 함
-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의 경우, 연구자의 재량범위 확장이 가능한 것은 동 평가가 내부평가로서 결과에 대한 문화부와 예술위원회 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가자의 사업진단 결과는 사업운영의 판단자료로서 작용하며 반드시 기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가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지 않음

□ 공통지표를 바탕으로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추가할 수 있음. 사업별로 갖는 특성을 감안하여 고려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음(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 문화이용권 사업의 경우 카드 이용의 편의성(만족도 조사시 추가)
- 사랑티켓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선정의 적절성(비계량), 지역 주관처 선정기준의 적절성(비계량)
-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은 도서선정 체계의 적절성(비계량), 도서보급 형식의 만족도(계량), 보급도서 내용의 만족도(계량), 도서보급처 선정 체계의 적절성(비계량)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대부분의 문화복지 사업은 전달체계 또는 협력체계의 적합성을 고려할 수 있음
- 기타 세세부사업에 맞는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판단해야 함(창작지원, 문화나눔사업 등 수혜자에 따른 적절한 성과지표의 달성도 측정)

□ 위와 병행하여 사업을 평가할 경우, 상기 성과지표 활용 외에 평가단(여기서는 사업진단을 위한 연구자라는 개념이 더 적합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설계에 따라 해당 사업 평가가 가능함

〈표 48〉 사업평가 예시

항 목	내 용
사업내용	-사업개요 -사업전달체계: 사업주체, 직접적·간접적 대상 등 -사업예산 -유사사업(해외사례)
주요쟁점과 평가방법	-사업목적과 개입논리 -주요 쟁점 -평가의 목적 및 범위
사업의 효과성 평가	-성과지표와 비교기준 -평가모형 -자료분석 결과

항 목	내 용
사업의 운영 평가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요인들에 대한 분석
정책 제언	-정책제안

\* 기획재정부(2015: 41)

2) 제 2안: 기획재정부 심층평가 방식 적용

- 두 번째 방법으로 특정 사업군을 기준으로 범부처별로 이루어지는 기재부의 심층평가지침을 유추적용하여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에 적용하는 것임
  - 심층평가 방법론을 중심으로 적용시 계획-집행-성과 및 환류라는 절차적 방식을 따르지 않고, 연구자가 사업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연구방법론을 설정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게 됨
  -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효율성, 효과성 등의 기준을 갖고 연구자 관점에서 진단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제 1안과 같은 특정 지표형식을 추구하지 않게 됨
  - 전반적인 제도 및 전략의 적절성부터 성과관리체계의 적합성까지 전체적인 사업체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사업운영의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용이함

<표 49>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심층평가 연구범위 요약(예시)

평가요소	세부 연구내용
평가사업 기초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배경 및 연혁, 법적 근거 및 상위계획 등</li> <li>- 사업전달체계 : 사업주체, 직간접대상, 기타 이해관계자 등</li> <li>- 사업예산 : 연도별 사업예산 및 집행률, 중기투자계획 등</li> </ul> </li> <li>○ 사업성과 : 성과계획 및 성과지표 파악, 법정평가결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반영</li> </ul> </li> <li>○ 정부·민간 등 유사사업 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및 개입논리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 당초 사업목적 및 목적 달성의 위한 체계 구축 여부, 상충관계 및 우선순위 등 파악</li> <li>- 개입논리 : 자원투입·배분에 따른 산출 및 결과에 대한 논리구조 등 파악, 사업과 효과간 인과관계 파악하여 논리모형 제시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사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에서 실시되는 유사사업 현황 파악하여 사업개선 참고 및 평가의 준거로 제공</li> <li>- 사업성과 제고방안 모색에 활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의 쟁점·목적·범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쟁점의 파악 : 사업도입 당시 개입논리 검토 및 주요 이해 관계자 의견 조사</li> <li>- 주요 쟁점에 대한 가설 설정 등 추진</li> </ul> </li> </ul>

평가요소	세부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목적 설정 : 평가의 주요쟁점 파악 후 평가목적 설정(집행체계 개선, 책임성 확보, 예산배분 효율성, 사업개선 등)</li> <li>○ 평가범위의 설정 : 평가 및 분석대상, 평가요소 등 핵심 연구방향 결정</li> </ul>
적정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공공부문 역할로서의 적절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사업에 대한 정부·공공부문 역할에 대한 적절성 파악</li> <li>- 시장실패의 교정, 가치재의 공급, 외부효과 등 관점에서 분석</li> </ul> </li> <li>○ 정부·공공부문 수행방법에 대한 적절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사업 지원방법(보조금) 및 수행방법에 대한 적절성 평가</li> <li>-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등을 감안한 정책수단 등 분석</li> </ul> </li> </ul>
효율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 및 비교기준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입논리에 따른 각 단계별 성과지표 설정 및 적정성 평가</li> <li>※ 적절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제시</li> </ul> </li> <li>○ 평가모형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이 유발한 효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평가모형 수립</li> <li>- 성과측정을 위한 논리적 추론 틀 마련</li> </ul> </li> <li>○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조사, 사업문서 검토, 외부통계활용, 설문조사, 전문가의견조사</li> </ul> </li> <li>○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분석, 비용대편익분석 및 비용효과분석, 시뮬레이션 모형 및 투입산출모형 등을 활용하여 분석</li> </ul> </li> </ul>
효과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및 지원정책 효과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결과가 실제로 사회적 수요가 얼마나 충족되었는가 평가</li> <li>-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다른 사업과의 비교,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사업과의 비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설문조사, 기타 전문가적인 판단 등 활용</li> <li>- 평가결과, 효과성이 낮다면 그 이유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제시 및 정확한 분석에 근거한 정책적 제언</li> </ul> </li> </ul>
사업체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인 제도 및 전략의 적절성</li> <li>○ 사업목표의 명확성, 사업대상 및 전달체계의 적절성</li> <li>○ 정부지원과 민자유치의 실적</li> <li>○ 유인체계의 적합성</li> <li>○ 사업집행 담당자들의 전문성, 사업집행기관의 자율성</li> <li>○ 중복투자 여부</li> <li>○ 성과관리체계의 적합성 등</li> </ul>

\* 한국개발연구원(2007),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4) 자료 정리

□ 지금까지 살펴 본 두 가지 방안 모두 문제점 파악을 통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관점에서 평가방식을 접근하고 있음. 다만, 제 1안은 체크리스트 방식의 평가방식을 탈피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제 2안은 전적으로 전문가의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평가요소만을 제시하

고 있음

- 확실성, 통일성 측면에서는 제 1안이 선호될 수 있으나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경우 제 1안보다는 관점에 따라 강조점을 둘 수 있는 제 2안이 유용하다고 판단됨

## 2. 평가방식

- 여기서는 진단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효과적 평가방식을 제시하는데 있음. 구체적으로 심층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적절한 평가대상 범위의 설정, 평가방법의 문제를 살펴봄
- 첫째, 심층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평가대상 범위 논의는 모든 단위사업 내 세부 사업을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연계 평가대상 범위를 조정하여 심층평가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할 것인가임
  - 기존에 모든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단편적 평가방식을 지양하고 심층적 진단 방식의 평가를 추구할 경우 시간상·재원상·인력상 어려움이 예상됨
  - 문예진흥법 제 35조 및 동 시행령에 의하면, 성과의 평가 대상은 사업 전체로 할 필요가 없으며, 매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상 및 범위를 협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음
    - 따라서, 전체 사업 대상으로 모두 평가를 시행하기 보다는 심층평가 방식의 환류개선 차원에서 다른 사업과 상당부분 연관되고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업을 선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동 평가방식의 기대효과, 부수효과, 부작용 등의 파악이 가능할 것임(아래 <표 50> 참조)
    - 또 다른 측면에서 현재 세부사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방식이 재정사업자율평가의 단위사업 수준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재정리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표 50> 평가대상사업 예시: 예술창작역량강화 단위사업 중 4개 주요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① 문학창작지원
		② 시각예술창작지원
		③ 공연예술창작지원
	④ 국제예술교류지원	문화예술교류및협력 한국문화예술세계화

- 둘째, 지표 또는 사업진단의 결과 제시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바람직함
- 기존의 평가는 점수(등급) 부여를 통해 이루어져 왔지만,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상위평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복된 평가보다는 사업의 세부내용 분석 및 그에 따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함
    - 점수(등급)의 부여는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 사업의 개선방향 및 활용 측면에는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점수화로 인해 노정되는 부수적 악영향(대의 반응)으로 인한 부담 발생
    - 문예진흥법 시행령 제 33조는 법 제 35조의 기금지원의 성과를 평가는 단순 평가가 아닌 조사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규명하고 있음

**법 제 35조(성과의 평가) ④**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 33조(조사·연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 35조제 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따라서, 단답식 평가가 아닌 컨설팅 진단으로서 연구자 관점에서 동 사업이 잘한 점, 못한 점, 개선해야 할 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
  - 문화예술의 공공재적·비가시적 성격을 감안하여 역시 연구자 입장에서 비록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 효과에 대한 차원에서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함
  - 점수화라는 통계적 측면의 평가가 아니라 컨설팅을 통한 사업개선이라는 점을 감안, 지표별 가중치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진단결과에 따라 동 사업의 확대, 단계적 확대, 현행 유지, 단계적 축소, 축소, 폐지 등 연구자 관점에서 실질적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사업추이를 고려 조건부 제언 등 기타 다양한 차원의 정책대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방식을 추구함
  - 결국 현 평가방식의 등급화, 점수화는 내외부적 갈등만 양산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방향제시에는 유의한 정보가 되지 못하고 있음. 향후 방향 및 정책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 셋째, 심층평가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면 방식의 평가진행 한계문제를 들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재정사업자율평가 방식과 달리 심층평가 방식을 지향할 경우 자료사용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업의 총괄적인 내용이 담긴 자료서가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함
  - 평가지표에 따라 연구자가 기존의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양적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평가자료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수시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필요시 연구자는 해당 사업대상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핵심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자료수집 과정을 거칠 수 있음
- 기존의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표를 준용함에 따라, 그에 따라 자료를 작성, 제출하는 것은 평가운영상 장점이 있지만, 지표에 맞춰 자료가 가공되는 측면에서 맥락적 측면에서의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한계가 있음
- 심층평가방식을 지향할 경우, 사업담당자는 지표에 맞게 사업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추진과정이 세밀하게 정리된 가칭 ‘기초실적 자료 보고서’ 를 작성, 제출하고 그에 따라 심사단은 FGI, survey 등 1차 자료 수집 및 2차 자료 분석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전사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제출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제 3절 평가운영상 개선방안

- 평가운영상 나타나는 개선방향의 주요 논점은 평가단 구성 및 전문 지속성 확보방안, 적절한 평가기간 및 사업반영을 위한 평가시기 조정, 평가단과 사업담당자 간 상호소통체계 구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평가단 구성 방안을 들 수 있음. 사업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을 어떤 전문인력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임
  - 예술인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경우 현장의 의견은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단위에서 망라적 평가가 불가능하며, 사업 내 장르수준에서의 평가로 국한될 가능성이 있음
  -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는 정책적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사업추진체계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업 평가를 위해 행정학·정책학·경영학 등 비예술계의 전문인력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가치·공익 및 운영관점 등 다각도에서 사업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각각의 평가유형 또는 평가분야별 배정에서는 리더십경영효율화 평가 및 주요사업 평가가 가능한 행정경영 전문가와 문화정책예술공연·콘텐츠 등 탈장르 전문가로 혼합 구성하여 사업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르별 예술인력을 평가단에 참여시킬 경우 사업 내 다양한 장르가 존재할 때, 탈장르적 관점에서 사업을 분석하는 것이 어려우며 많은 전문인력 참여가 불가피한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장성 반영을 위해서는 평가단에 예술인들을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장르별 예술인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상설화함으로써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가 바람직함
  - 그 외에도 평가단의 역할을 사업평가의 방법 및 평가지표 개선과 관련한 자문과 기타 평가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해당연도에 평가대상이 되는 단위사업 및 세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적어도 사업별 6-7인의 전문가를 구성함으로써 심층진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적절한 전문가 확보가 가능한 인력풀 마련 및 그에 상응하는 예산확보가 수반되어야 함
  - 기금사업평가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현재보다 더욱 많은 예산과 평가인력이 투입될 필요성이 있음. 매년 사업의 수가 늘어나거나 또는 사업분야가 다양해지는 추세라는 것을 감안할 때 더욱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와 관련된 예산과 인력부분이 증가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평가단 연구결과의 질적 담보를 위한 지속성 확보 및 관리방안을 들 수 있음. 즉, 매년 실시하는 사업평가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가를 고려해야 함
  - 사업평가와 관련하여 현재와 같은 연구과제 발주형식이 아닌 별도고유법인을 설립하여 평가단을 구성한 후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평가단을 구성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부서가 사무국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평가위원 구성부터 평가수행 등 평가내용과 평가전반에 대한 체계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평가방법과 내용에 대한 수준을 한 단계 상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평가단 구성절차를 어떻게 마련하는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업평가를 담당하는 평가단의 역할과 위상을 더욱 명확히 함과 동시에 평가단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평가단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 사업평가단의 구성절차 및 기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국의 추천, 문화예술위원회의 추천, 사업평가단 추천 절차 등을 거쳐 정부업무평가, 공공기관 평가, 문화예술분야 사업평가 경력 및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이해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사업평가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단으로 추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가대상 기관의 이사·감사 등의 임원직 및 평가기관 연구과제 수행여부 등 상피제를 적용한 후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평가과정에서 평가단과 문화부, 예술위원회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평가과정에서 충분한 진단 분석을 위한 당해 사업에 대한 워크숍 등 사전교육, 필요시 정보 획득 체계 등 상호교류 절차를 확보할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종 평가결과 확정 전 중간평가보고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국의 의견수렴과정을 사업평가단과 공식적으로 가지게 하여 사업평가보고서에 대한 신뢰성,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기금사업평가와 관련된 결과 통보 이후 사후 컨설팅 및 피드백 기회를 제도화함으로써 외부 전문가와 경영 상황 및 주요 사업성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객관적 점검을 할 수 있는 좋은 “컨설팅” 으로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사업환류의 시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시된 정책대안 반영이 가능하도록 평가기간을 차년도 사업환류가 가능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평가가 10월까지 평가가 완료될 수 있다면 차후년도의 사업개선 반영이 가능할 것임

<표 51> 평가과정 및 단계별 추진내용

단계	추진내용	비고
평가 사전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대상사업 확정</li> <li>▪ 평가추진방향 협의</li> </ul>	문화부(예술정책과) 예술위(정책평가부)
평가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세부계획 확정</li> </ul>	문화부
평가용역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연구용역기관 확정</li> </ul>	문화부
평가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연구용역 협의회 운영</li> </ul>	문화부, 예술위, 용역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연구 실행</li> </ul>	용역기관, 예술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연구결과 보고</li> </ul>	용역기관
평가결과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연구결과 자문</li> <li>▪ 평가연구결과 의견수렴(토론회)</li> </ul>	문화예술 정책전문가 예술현장 전문가
평가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연구결과 및 자문내용 통보</li> </ul>	문화부→예술위
평가결과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사업별 개선사항 점검 반영</li> </ul>	예술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사업 정책방향 재설정</li> </ul>	문화부, 예술위

## 제 5장 결 론

## 제 1절 연구요약

- 본 연구는 문화부와 예술위원회 간 매년 실시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 35조(성과의 평가)가 문예기금사업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분석을 위한 평가체계 재설계와 평가방식의 적정화를 통해 바람직한 사업진단을 모색할 수 있는 적합한 평가체도를 마련하는데 있음
  -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진단 및 개선가능한(컨설팅)연구적 요소를 가미, 차년도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에 노력할 수 있는 실용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국내 정부부처 기금사업평가 제도 및 동향,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현황 및 문제점 및 유사사례 분석을 하고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음
- 제 2장에서는 기금사업평가 현황분석을 위해 국내 정부부처 기금사업평가 제도 및 동향을 살펴보았음.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한국개발원 재정사업 심층평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획재정부 보조사업운영평가, 국무조정실 국정과제 심층평가 등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사업평가는 사업성과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이나 제도개선 등을 위한 정책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평가의 독자성,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평가추진기구를 체계적으로 구성·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평가는 평가목적 및 평가대상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체계화하여야 함. 즉, 평가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사전평가 또는 사후평가의 방식을 채택하고, 평가대상사업을 성격·사업규모·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며, 각 대상사업 유형별로 적절하고 타당한 평가방식을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평가방법의 체계화를 꾀해야 함
  - 최근의 사업평가는 정량적 분석방법과 함께 정성적·비계량적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문화영향평가 등에서 다양한 변화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비계량지표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그러나 비계량적 지표도 정밀한 지표개발과정을 거쳐 객관성 및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평가결과가 예산 또는 사업비 삭감에 반영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과제고방안, 제도개선방안, 사업추진개선방안의 마련 등 그 환류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도 평가결과가 이후 정책 및 사업에 반영됨으로써

평가결과를 추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 3장에서는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였음. 이를 위해 2014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현황, 문예진흥기금 관리의 주무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평가제도 현황을 기금사업 성과관리 체제, 내외부 평가제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사업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 그 중에서도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법정평가는 7가지임. 구체적으로 경영실적평가, 재정사업자율평가, 기금운영평가(자산운용), 기금존치평가, 보조사업운영평가, 복권기금사업평가,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등이 있음
  - 내부평가 중 사업평가 일부는 심층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
  - 2015년 현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총 17개가 있으며, 문예진흥법 제 35조와 같은 성격을 가진 성과평가 제도는 영화진흥위원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3), 한국언론진흥재단(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7조) 2개 기관 뿐이며 이들 기관은 그 간 문화부의 성과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평가지표상 문제는 전문가들의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표의 객관화, 구체화, 명시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평가방식의 문제는 질적인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노정해왔으며,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문예진흥기금사업의 특수성 반영에 한계가 있었음
  - 평가운영의 문제는 평가단과 위원회 간 밀착된 연계를 통한 정보제공 체계가 부족하였고, 평가단 구성시 객관성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성절차 방안 미흡, 평가결과의 환류가 시기적, 절차적으로 불가능한 제도적 문제 등이 나타났음
- 제 4장에서는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유사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음. 대상사례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녹색기후기금, 지역협력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각 평가제도 운영의 특징 및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제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하였음
  - 체육진흥기금 사업평가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성과지표의 유연적 운용을 살펴보았음. 사업 성격에 따라 계획-집행-성과 간 배점기준의 차별화를 들 수 있음
  - 녹색기후기금 사업평가는 평가조직 구성 방안논의에 주목하였음. 국제기후기금 핵심조직의 일부분으로서 평가체제를 구축하되, 외부의 공정한 전문가를 영입하여 구성하는 방안과, (2) 공개경쟁입찰과정을 통해 외부의 독립적인 기구를 선정하여 기금의 성과 평가를 위탁하

는 방안으로 논의되었으며, 독립적인 평가부서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음. 평가 상설부서를 통한 평가실시가 보다 체계적인 성과평가제도 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 한지협에 의해 시행되는 지역협력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는 문예진흥법 제 35조의 구조와 유사한 평가체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운용상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살펴봤음. 사업별 평가방식에서 공통평가 항목과 사업별 평가항목이 세분화됨으로써 정교성 및 체계성을 달성하고자 하였음

□ 제 5장에서는 2장부터 4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음. 먼저,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지표, 평가방식 및 평가운영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현 평가제도 운용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동일한 지표가 준용됨으로써 문화부가 이미 평가한 내용을 다시 평가하는 구조이며 단답형 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는 평가지표 구성상 정책대안 제시가 불가능함.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는 문화부와 예술위원회 양자 간 이루어지는 내부평가라는 점에서 기금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방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문예진흥법 제 35조의 목적을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조사연구 및 진단적 목적을 가진 연구적 접근임을 명확히 설정하고, 내부적으로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개선에 도움을 주고, 외부적으로는 재정사업자율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평가지표는 단답식 또는 점수화 평가방식을 탈피하고, 심층 진단이 가능한 방향으로 지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중요한 것은 심층평가가 가능하도록 운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연구자의 관점에서 지표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는 심층평가 방식의 예로서 2가지 안을 제시하였음. 양자는 지표 제시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 심층평가방식을 지향하는 점은 동일함. 지표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로서 평가자가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를 제시하였음
- 획일성, 통일성 측면에서는 제 1안이 선호될 수 있으나 단위사업 내 세세부사업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경우 제 1안보다는 관점에 따라 강조점을 둘 수 있는 제 2안이 유용하다고 판단됨

- 평가방식의 경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음

- 첫째, 평가대상 범위를 살펴봄으로써 매년 세세부사업 전체를 평가하기 보다는 심층평가의 취지상 중요한 사업 및 재정사업자율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안을 제시하였음
- 둘째, 점수화(등급화), 가중치 부여 보다는 실제 사업의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음. 진단결과에 따라 동 사업의 확대, 단계적 확대, 현행 유지, 단계적 축소, 축소, 폐지 등 연구자 관점에서 실질적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서면 평가방식의 한계를 제시하였음. 심층평가방식을 지향할 경우, 사업담당자는 지표에 맞게 사업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추진과정이 세밀하게 정리된 가칭 ‘기초실적 자료 보고서’ 를 작성, 제출하고 그에 따라 심사단은 FGI, Survey 등 1차 자료 수집 및 2차 자료 분석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전사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제출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평가운영의 경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음
  - 첫째, 평가단 구성 방안으로서 사업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을 어떤 전문인력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 논의하였음. 현장성 반영을 위해서는 평가단에 예술인들을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행정, 정책, 경영 등 비예술인 중심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운용하고, 장르별 예술인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상설화함으로써 의견반영을 하는 체계가 바람직함
  - 둘째, 평가단 연구결과의 질적 담보를 위한 지속성 확보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음
  - 셋째, 평가과정에서 평가단과 문화부, 예술위원회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워크숍 등 사전교육 활성화, 필요시 정보획득을 위한 상호교류 절차 확보 기제 등이 필요함
  - 넷째, 사업환류의 시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시된 정책대안 반영이 가능하도록 평가기간을 차년도 사업환류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제 2절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 공공성이 강한 문화예술 정책은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사업 효과 측정이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으로 운용되는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결과지표 제시는 지속적인 자료축적과 다양한 시도로 이루어져야만 함
-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는 단위사업-세부사업-세세부사업별로 대상집단, 장르별 사업목적 및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금사업 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의 가시성, 측정방법의 용이성도 다양하며 단위사업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문예진흥법 제 35조의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는 세세부사업을 중심으로 평가 자체를 목적으로 운용되기보다는 진단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문화부와 예술위원회 양자 간에 이루어지는 평가를 통해 사업의 실태분석 및 효과측정 방법론 등을 진솔하게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함
- 문예진흥법 35조의 평가는 법정 평가로 규정되어 있지만, 문화부와 예술위원회 양자 간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로 타 기관 등 비교대상 자체가 없는 특수한 평가임. 2006년부터 실시되었던 동 평가제도는 국가재정법상 기금평가가 통합되기 이전에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러나 2008년부터 통합된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통해 문예진흥기금사업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동 평가의 법적 취지는 크게 퇴색하였음
- 따라서, 향후 동 평가를 위한 접근은 평가중심의 접근이 아닌 전사적 사업진단 방식으로 연구, 컨설팅 측면으로의 평가로 접근함으로써 사업환류 개선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 심층평가 방식은 이러한 사업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임. 조사방법론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업의 진단을 하는 노력이 축적되어야만 향후 체계적인 사업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임. 지표의 단답식 평가 지양과 심층평가 방식 지향, 그리고 평가결과가 실제 담당자로 하여금 사업개선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임
  - 기존의 연구용역을 통해 수행한 본 평가결과를 보면 실제로 구체성이 떨어지는 개선방안 제시로 인하여 예술정책을 수립하는 문화부나 지원정책 계획 및 집행을 담당하는 예술위원회 양자 모두 사업개선을 위한 반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음

<정책대안 제시 예>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예술역량이 증진되었으며 보다 큰 향상을 위해 지원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필요함 (○○○기관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정책대안 중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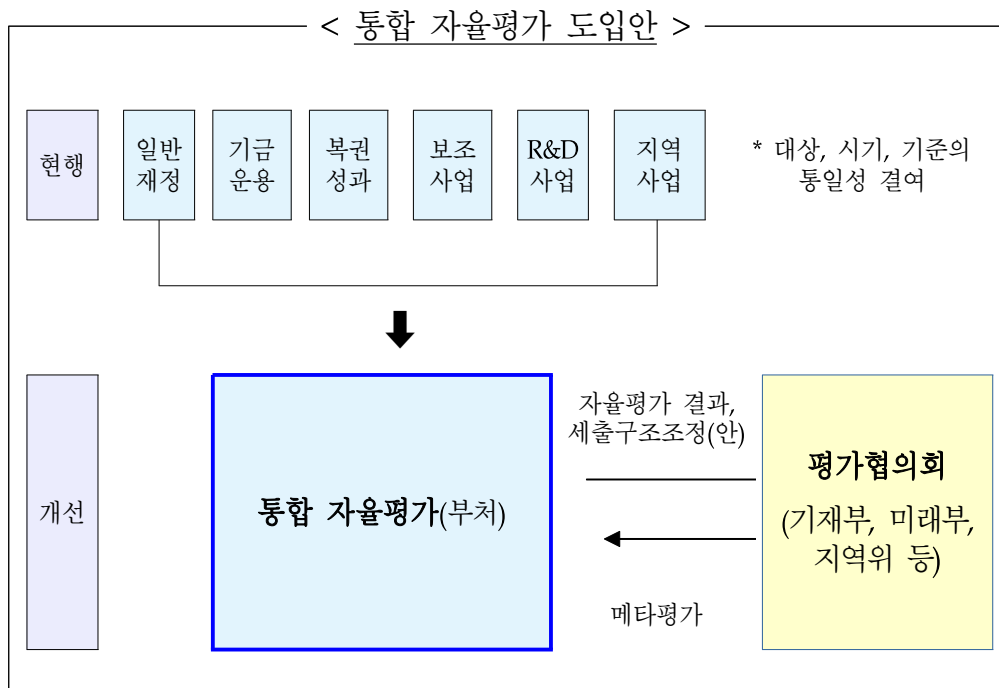
  - 이러한 문제가 노정되는 이유는 평가지표의 문제도 있지만, 평가지표 자체의 개선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본 제도를 평가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했기 때문임. 그 외에도 평가방식 및 평가운영상 나타나는 연구의 질적 담보 확보기제의 미흡문제도 있음
-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6년부터 국고보조사업, 연구개발(R&D), 지역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여 부처단위의 ‘통합 자율평가’ 로 개편할 계획에 있음(기획재정부 2015.5.22.)

통합 대상

- 자율평가, 보조사업평가, 기금운용평가, 복권기금사업평가(이상 기재부),
- R&D평가(미래부), 지역발전사업평가(지역위)

- 동 제도는 부처 단위의 종합적 세출구조를 조정함으로써 돈주머니(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따른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의 모든 사업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음

<그림 10> 통합 자율평가 도입안



\* 출처: 기획재정부(2015)

- 이러한 제도에 맞추어 향후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의 운영방향은 문화체육관광부 통합자율평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통합 자율평가와 별도로 현 제도를 유지해 나가거나 또는 매년 실시되는 통합 자율평가와 중복여지가 많기 때문에 통합평가와 연계하여 융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향후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는 통합 자율평가에 맞추어 지표 중심의 평가 지향보다는 전사적 사업진단을 통해 기금, 복권, 보조사업 등 간에 연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심층평가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 【부록 1】 현정부의 특정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국정과제 평가계획

#### ① 평가방향

- 성과지표 중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지표를 확대하고, 체감도 높은 과제별 대표지표를 추가
- 성과목표달성도 비중을 확대('13년 60% → '14년 80%)하여 부처의 성과 중심 과제추진 지원

#### ② 평가대상

- 전체 140개 국정과제
- 국정과제 관련 주요정책 (주관 국정과제가 1개 이하 기관)

#### ③ 평가항목

평가항목		의미	비고	배점
집행이행도		• 당초 계획한 내용대로 충실히 집행하(였)는지 여부	정성/ 정량	20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달성도	• 사전에 제시된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정성/ 정량	50
	정책효과	• 성과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정책성적을 종합적으로 판단	정성	30

※ 4대 국정기조간 평가항목별 배점을 동일하게 적용('13년은 차등적용)

- 다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필요시 기조간 조정점 부여 가능

#### 4 평가방법

- 국정과제별로 각 100점 만점으로 평정하고 등급을 부여
  - \* 등급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의결시 결정
- 평가항목별 평정방법
  - (집행이행도) 완수과제 수/ 단위과제 수 × 100
    - \* '13년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 이행, 상황대응 등 미흡시 감점
  - (성과지표달성도) 성과지표별로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5단계로 평정, 사전에 설정한 각 지표별 가중치에 따라 합산
    - \* 목표치의 적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반영하고, 성과의 질에 따라 점수가감
    - \* 성과지표별 가중치는 주관부처에서 협업부처와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
  - (정책효과) i) 목표성과 발생 및 국민인식 정도 ii) 향후 효과발생 기대정도 iii) 국민불편해소 등 여타 국정목표 기여정도를 각 10점 만점으로 평정
- ※ 28개 국정목표 달성도 및 부처별 브랜드과제 성과를 국정과제 평가에 추가 반영 예정 (세부계획 추가 공지)
- 「국정과제 민관합동평가단」에서 평가

- '13년 대비 과제별 민간전문가 평가자 수 확대
- 추진전략별, 국정기조별 평정에 대한 조정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제고

< '13년 평가 대비 주요 변경내용 >

평가항목		'13년		'14년(안)		변경내용(안)
집행이행도		4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점 축소</li> <li>• 0점 기준 완화 (60% → 0%)</li> </ul>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달성도	60	35	8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점 확대</li> <li>• 국정과제 단위의 대표성과지표 설정</li> <li>• 단계 세분화 (4단계 → 5단계)</li> </ul>
	정책효과		25		30	

## 규제개혁 평가계획

### ① 평가방향

-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노력 및 성과를 점검·평가

### ② 평가대상

- 42개 중앙행정기관

### ③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 점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의 적극성(기관장 의지·실행력)</li> <li>•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운영 내실화</li> <li>• 규제영향분석·비용분석의 적절성</li> <li>• 대국민 소통·홍보</li> </ul>	20점
규제개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혁 이행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비용총량제, 기존규제 감축, 네거티브·일몰 설정, 미등록규제 정비, 손톱밀가시 제거 등</li> <li>※ 산하 공공기관 규제개혁 추진실적 포함</li> </ul> </li> <li>• 핵심규제 개선 등 정책효과</li> <li>• 규제신문고 건의처리 실적(처리기간, 소명 타당성, 수용률 등)</li> <li>• 규제개혁 만족도</li> </ul>	80점

### ④ 평가방법

- (추진체계) 기관장 의지, 규제영향·비용분석, 대국민 소통 등 규제개혁 성과 도출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의 적절성을 평가
- (성과) 규제비용총량제, 기존규제 감축 등 각 기관별 규제개

혁 이행성과 및 정책효과, 규제건의처리, 만족도를 정량·정성 평가

- 규제개혁추진에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단\*」 구성·평가

\*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규제관련 민간전문가, 규제조정실 국장급 공무원 등

##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평가계획

### ① 평가방향

- 국민체감형 성과창출을 위해 '정상화 개선성과'와 '과제충실도 및 이행도' 평가

### ② 평가대상

- 96개 과제(핵심과제 64, 단기개선과제 32)
  - \* 대표과제 34개 포함
  - \* 국민제안, 부처를 통해 과제 추가 발굴(6월)

### ③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과제 충실도	• 이행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별 목표·지표 수준 및 수단의 적절성 평가	10
과제이행도	• 법령·제도개선 등 당초 계획 대비 이행도	20
정상화성과	• 정상화지표 달성도, 개선효과, 국민만족도	70

※ 단기개선과제의 경우, 과제충실도(10) + 과제이행도(30) + 정상화성과(60)로 평가

### ④ 평가방법

- (과제충실도) 과제 계획단계에서 과제완성도에 대한 평가
  - \* 과제 목표, 지표, 수단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평가
- (과제이행도) 추진계획상의 일정에 따라 평가시점까지 해야 할 세부과제 이행도 평가
- (정상화성과)
  - 정상화지표 : 목표치 달성여부를 확인하여 5단계로 등급부여
  - 개선효과 : i)과제가 목표한 성과가 발생한 정도 ii)향후 기대 효과 iii)국정과제·상위 정책 등에 대한 기여여부 등에 대한 정성평가
  - 국민만족도 : 개선노력 및 성과에 대한 전문기관 조사결과 반영

## 기관공동사항 평가계획

### ① 정책홍보 [±5점]

#### 1] 평가방향

- 국민이 체감하는 홍보성과 확산을 위해 각 부처의 국민생활 밀착형 대표 정책과제의 홍보노력 및 성과 중심 평가

#### 2] 평가대상

- 42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1개, 차관급 21개)

### 3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홍보활동	• 주요정책 사전협의, 오프라인 오보대응 등	20
	• 부처 SNS, 온라인 협업홍보 등 뉴미디어 홍보활동	20
	• 기관장 홍보활동실적 및 정책추진력 제고 우수사례	10
홍보성과	• 국민생활밀착형 정책과제 홍보 이행실적 및 성과	30
	• 주요정책 기획홍보 및 외신대상 홍보활동 우수사례	20

\* 100점 만점 평가 후 ±5점으로 전환

### 4 평가방법

- 각 부처의 정책 홍보활동 및 성과에 대해 정량·정성평가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민관합동 정책홍보평가단」 구성·평가

## ② 정부 3.0 (±3점)

### ① 평가방향

-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부 3.0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기관별 '추진역량' 및 '중점 과제 성과'를 평가

### ② 평가대상

- 42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1개, 차관급 21개)

### ③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추진역량	• 기관장 정부3.0 추진의지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노력도	15점
	• 정부3.0 변화관리 실적	10점
중점 과제 성과	•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정보공개 실적	20점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실적	20점
	•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활용, 정보공유 및 연계·통합 실적	15점
	• 맞춤형 서비스 추진 실적	20점

\* 100점 만점 평가 후 ±3점으로 전환

### ④ 평가방법

- 각 부처 추진역량 및 중점과제 성과에 대해 정량·정성평가
-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3.0 평가단」 구성·평가

### ③ 부처간 협업 (±3점)

#### 1 평가방향

- 협업부처의 국정과제 책임추진 유도
- 협업을 통한 성과창출 여부를 중점 평가

#### 2 평가대상

- 42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1개, 차관급 21개)

#### 3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국정과제 이행성과	• 협업부처로 참여한 국정과제의 이행성과	±2
협업 우수·미흡사례	• 부처간 유기적 협업으로 우수 성과 창출시 가점 • 부처 이기주의·소극적 대응 등 감점	±1

#### 4 평가방법

- (국정과제 이행성과) 각 기관별 협업부처 참여 과제 중 이행성과에 따라 가감점 부여
- (협업성과) 부처간 유기적 협업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사례 가점, 부처 이기주의·소극적 대응 등 협업 미흡사례 감점

\* 각 부처가 추진한 협업사례를 평가, 가감점 부여

## ④ 대국민 업무태도 (±2점)

### ① 평가방향

- 공무원의 대국민 업무태도 및 민원 제기시 국민의 입장에서 처리했는지 여부 등 평가

### ② 평가대상

- 42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1개, 차관급 21개)

### ③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업무태도 우수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굴한 민원처리시스템, 태도 등 우수·미흡사례 가감</li> </ul>	±1
민원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부처에 제기되는 민원처리 만족도, 민원인 불만족 해소노력도, 민원처리 성실도 등</li> <li>• 권익위 「민원서비스」평가결과 활용</li> </ul>	±1

### ④ 평가방법

- (우수·미흡사례)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무원의 대국민 업무태도 관련 우수사례/미흡사례를 발굴하여 평가에 반영
- (민원만족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만족

## 도' 평가결과 활용

- 전 부처에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만족도, 민원인 불만족 해소 노력도, 민원처리 성실도 등을 평가

## ⑤ 특정시책 (±2점)

### ① 평가방향

- 정부기관의 국가배려시책 등에 대한 객관적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의 준수율 제고

### ② 평가대상

- 42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1개, 차관급 21개)

### ③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장애인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 의무고용률(3%) 중심 가감점</li> <li>• 중증장애인 고용노력</li> </ul>	±0.6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 의무 구매비율(1%) 중심 가감점</li> </ul>	±0.6
중소기업 제품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 의무 구매비율(50%) 중심 가감점</li> </ul>	±0.6
기술개발 제품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개발제품 법정 권장 구매비율(10%) 중심 가감점</li> </ul>	±0.2

### ④ 평가방법

- 법정기준 등 달성여부 중심으로 정량적 평가

## ○ 각 평가항목별 시책 소관기관\*에서 추진실적 확인·검증

- \* 고용부(장애인 고용), 복지부(중증장애인 생산품),  
중기청(중기제품, 기술개발 제품)

## 【부록 2】 이명박 정부의 핵심과제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구 분	평가지표	평가사항
정책형성 (20)	정책목표의 적절성(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목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2)</li> <li>•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및 성과지표의 대표성(4)</li> </ul>
	정책수단의 적절성(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수단의 적절성(6)</li> </ul>
	분석·의견 수렴 적절성(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분석과 대비책 마련의 충실성(4)</li> <li>• 의견수렴 적절성(4)</li> </ul>
정책집행 (45)	추진일정 충실성(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일정 준수 여부(15)</li> </ul>
	상황변화 대응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15)</li> <li>• 홍보의 효과성(5)</li> </ul>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여부(10)</li> <li>*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평가 제외</li> </ul>
정책성과 (35)	정책목표 달성도(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수립시 설정한 정책·사업목표 달성도 (20)</li> </ul>
	정책 효과성(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추진으로 의도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15)</li> </ul>

<p>평가지표</p>	<p>1-1. 정책목표의 적절성(6점)</p>
<p>측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목표 적절성) 정책목표가 상위목표에 부합하고 정책수단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정책문제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b>정책목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목표가 ① 상위목표에 부합, ② 정책문제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수준, ③ 정책수단에 방향성을 제시할 만큼 구체적</li> <li>① ①, ②, ③ 세 가지를 모두 충족 : 2</li> <li>② ①, ②, ③ 중 두 가지만 충족 : 1</li> <li>③ ①, ②, ③ 중 한 가지 이하만 충족 : 0</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정책목표별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li> <li>○ (성과지표 대표성) 정책목표별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이며, 정책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2) ㉡ 성과지표의 대표성(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 신규 사업인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량·정성적으로 판단</li> <li>① 적극적으로 설정 : 2    ② 적극적으로 설정하지 않음 : 0</li> <li>• (성과지표 대표성) 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의 연관성, ②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나타냄, ③ 정책 이외의 내·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성과지표가 쉽게 변화하지 않음, ④ 성과지표의 정의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측정이 용이함</li> <li>① ①, ②, ③, ④ 네 가지를 모두 충족 : 2</li> <li>② ①, ②, ③, ④ 중 세 가지만 충족 : 1</li> <li>③ ①, ②, ③, ④ 중 두 가지 이하만 충족 : 0</li> </ul> </div>
<p>측정기준 (착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목표 적절성) 정책목표와 상위목표 및 하위정책수단 간의 논리적 연계성과 정책목표 수준의 적정성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목표가 상위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 판단</li> <li>- 정책목표가 정책수단에 방향성을 제시할 만큼 구체적인지 여부 판단</li> <li>- 정책목표가 정책문제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판단</li> </ul> </li> <li>○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성과목표별 성과지표가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판단</li> <li>○ (성과지표 대표성) 성과목표별 성과지표가 정책 내용을 대표하고 있는지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간의 연관성 여부 판단</li> <li>-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지 여부 판단</li> <li>- 성과지표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이외의 내·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쉽게 변화하지 않는지 여부 판단</li> <li>- 성과지표의 정의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측정이 용이한지 여부 판단</li> </ul> </li> </ul>
<p>평가근거</p>	<p>부처 제출자료, 총리실 관련 자료</p>

평가지표	1-2. 정책수단의 적절성(6점)
측정방법	<p>○ 정책수단의 내용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정책수단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6)</b></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적인 세부정책·사업 등 적정한 정책수단을 포함</li> <li>• 정책수단의 실행을 위한 기구·예산·인력·법·공권력 등 지원수단을 ㉡ 적기 마련, ㉢ 적절성 확보</li> </ul> <p>① ㉠, ㉡ ㉢ 세 가지를 모두 충분히 만족 : 6</p> <p>② ㉠, ㉡ ㉢ 중 두 가지만 만족 : 4</p> <p>③ ㉠, ㉡ ㉢ 중 한 가지만 만족 : 2</p> <p>④ 어느 것도 만족하지 못함 : 0</p>
측정기준 (착안사항)	<p>○ 정책수단의 내용이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 및 정책수단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판단</p> <p>○ 정책수단의 실행을 위한 기구·예산·인력·법·공권력 등 지원수단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기에 마련되었는지 여부 판단</li> <li>- 적절한 수준으로 마련되었는지 여부 판단</li> </ul>
평가근거	부처 제출자료, 총리실 자체자료 등

<p>평가지표</p>	<p>1-3. 분석·의견수렴 적절성(8점)</p>
<p>측정방법</p>	<p>○ 정책효과, 장·단점, 이해관계자 분석과 분석결과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p> <p><b>정책분석과 대비책 마련의 충실성(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정책효과, 장·단점 분석, ② 이해관계자 분석, ③ 분석결과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 마련</li> <li>① ①, ②, ③를 모두 이행, 내용도 충실 : 4</li> <li>② ①, ②, ③를 모두 이행, 내용은 일부 미흡 : 3</li> <li>③ ①, ②, ③ 중 일부 미이행, 내용은 충실 : 2</li> <li>④ ①, ②, ③ 중 일부 미이행, 내용도 일부 미흡 : 1</li> <li>⑤ 기타 : 0</li> </ul> <p>○ 관계부처 협의, 관련단체,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p> <p><b>의견수렴의 적절성(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이해관계자, 관련단체, 전문가 의견수렴, ② 부처, 당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li> <li>① ①, ② 관련 필요 요소를 모두 이행, 내용도 충실 : 4</li> <li>② ①, ② 관련 필요 요소를 모두 이행, 내용은 일부 미흡 : 3</li> <li>③ ①, ② 관련 필요 요소 중 일부 미이행, 내용은 충실 : 2</li> <li>④ ①, ② 관련 필요 요소 중 일부 미이행, 내용도 일부 미흡 : 1</li> <li>⑤ 기타 : 0</li> </ul>
<p>측정기준 (착안사항)</p>	<p>○ (정책분석 적절성) 계획수립 과정에서 정책효과, 장·단점, 이해관계자 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WOT 분석, PESTLE 분석 및 BC 분석 등의 정책효과 분석 또는 종합적·구체적인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STLE 분석 : 정책대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법적, 환경적 영향 등을 분석(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Legal, Environmental)</li> </ul> </li> <li>-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를 하였는지 여부 판단</li> <li>- 정책대상자 특히,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전분석이 충분한지 여부 판단</li> <li>- 분석결과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계획수립 단계에 실시한 것만 인정. 다만,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 실시한 분석도 인정</li> </ul> </li> </ul> <p>○ (의견수렴 적절성)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관련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은 충분한지 여부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인정</li> <li>- 정책(사업)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부처·당청 등 관련기관간 협의는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청간 협의 미실시 등으로 혼란 발생, 부처간 협의 없이 정책발표를 하여 차질을 빚었는지, 정책(사업) 유관기관과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소홀히 하여 추진 지연 및 혼란발생 여부 등</li> <li>*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에 시행한 협의도 인정</li> </ul> </li> </ul>
<p>평가근거</p>	<p>부처 제출자료, 총리실 자체자료 등</p>

평가지표	2-1. 추진일정 충실성(15점)
측정방법	<p>○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과제의 세부 추진계획에서 제시한 추진일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p> <div data-bbox="462 521 1481 58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추진일정 준수 여부</b></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과제의 세부추진계획에서 제시한 추진일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모든 일정 준수 : 15</li> <li>② 대부분 일정 준수(90% 이상 준수) : 12~14</li> <li>③ 일부 일정 미준수(70% 이상 준수) : 9~11</li> <li>④ 상당한 일정 미준수(70% 미만 준수) : 9미만</li> </ul> </li> </ul>
측정기준 (착안사항)	<p>○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수립한 성과목표별 관리과제의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일정을 완료하였는지 여부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일정 준수 여부는 기계적 판단을 지양하고 추진내용의 충실성 여부와 연계하여 정량·정성적으로 판단</li> <li>- 외생적 요인에 의한 일정 지연의 경우에는 그 사유와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판단</li> </ul> <div data-bbox="462 1496 1481 189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일정 지연 관련 외생변수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 환경변화(교역시장, 환율,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국제적 환경규제, 대북관계 등)에 의해 지연된 경우</li> <li>· 상급기관(대통령자문위원회 등 포함) 등에 의한 추진방식 변경 등</li> <li>· 국회 파행으로 인한 개최일정 지연 등으로 법률안 통과 등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li> </ul> </div>
평가근거	부처 제출자료, 총리실 자체자료 등

<p><b>평가지표</b></p>	<p><b>2-2. 상황변화 대응성(20점)</b></p>
<p>측정방법</p>	<p>○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 변화에 적기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b>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15)</b></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정책집행 과정 모니터링, ② 여건·상황 변화 대처의 적시성, ③ 여건·상황 변화 대처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①, ②, ③를 모두 이행, 내용도 충실 : 15</li> <li>② ①, ②, ③를 모두 이행, 내용은 일부 미흡 : 12</li> <li>③ ①, ②, ③ 중 일부 미이행, 내용은 충실 : 9</li> <li>④ ①, ②, ③ 중 일부 미이행, 내용도 일부 미흡 : 4</li> <li>⑤ 기타 : 0</li> </ul> </li> <li>* 여건·상황 변화가 없는 경우, 정책집행 과정 모니터링 충실성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충실히 수행 : 15, ② 대체로 잘 수행 : 12 ③ 보통 : 9 ④ 미흡 : 6 ⑤ 상당히 미흡 : 0</li> </ul> </li> </ul> <p>○ 정책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b>홍보의 효과성(5)</b></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홍보의 적시성, ② 홍보 내용의 적절성, ③ 홍보의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①, ②, ③ 세 가지 모두 충족 : 5</li> <li>② ①와 ③ 또는 ②와 ③ 충족 : 4</li> <li>③ ③만 충족 : 2      ④ 기타 : 0</li> </ul> </li> </ul>
<p>측정기준 (착안사항)</p>	<p>(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집행 과정의 모니터링 수행의 충실성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정책의 집행현장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은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 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국회 및 언론의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포함</li> </ul> </li> </ul> </li> <li>○ 여건·상황 변화에 적기에 대처하였는지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추진시 현안사항에 대해 BH, 당, 관련부처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의견조율을 통해 적기에 대응하였는지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모니터링 여부만으로 판단</li> </ul> </li> </ul> </li> <li>○ 여건·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과정에서 당초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대응 정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모니터링 여부만으로 판단</li> </ul> </li> </ul> </li> </ul> <p>(홍보의 효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내용에 대한 적기 홍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판단</li> <li>○ 정책의 핵심 내용이 적절하게 선정·전달되었는지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로 이슈를 주도했는지 여부 판단</li> <li>- 비판·부정적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지 여부 판단</li> </ul> </li> <li>○ 홍보로 인한 언론·여론의 반응은 긍정적인지 여부 판단</li> </ul>
<p>평가근거</p>	<p>부처 제출자료, 총리실 자체자료 등</p>

평가지표	2-3.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10점)
측정방법	<p>○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및 운영 여부</p> <p>*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평가 제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여부</b></p> </div> <p>• ①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②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운영</p> <p>① ①, ② 관련 필요 요소를 모두 이행, 내용도 충실 : 10</p> <p>② ①, ② 관련 필요 요소를 모두 이행, 내용은 일부 미흡 : 7</p> <p>③ ①, ② 관련 필요 요소 중 일부 미이행, 내용은 충실 : 4</p> <p>④ 기타 : 0</p>
측정기준 (착안사항)	<p>○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는지 여부 판단</p> <p>*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개념이며, 사업계획서 등에 협조체제가 명시적으로 기술되어야 함</p> <p>○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가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 여부 판단</p> <p>* 관련 기관 및 정책과의 협의실적과 협의결과에 대한 검토실적이 함께 있는 경우 충족</p>
평가근거	부처 제출자료, 총리실 자체자료 등

<p>평가지표</p>	<p>3-1. 정책목표 달성도(20점)</p>																
<p>측정방법</p>	<p>○ (정책목표 달성도) 해당 과제가 설정한 정책·사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 여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계획 수립시 설정한 정책·사업목표 달성도(20)</b></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계획수립시 설정한 정책·사업목표 달성도, ㉡ 성과의 질적 수준을 종합하여 판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달성도 성과품질</th> <th>달성 (100% 이상)</th> <th>일부 미달성 (90% 이상)</th> <th>상당부분 미달성 (90%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충실</td> <td>19~20</td> <td>17~18</td> <td>14 미만</td> </tr> <tr> <td>보통</td> <td>17~18</td> <td>15~16</td> <td>12 미만</td> </tr> <tr> <td>낮음</td> <td>15~16</td> <td>13~14</td> <td>10 미만</td> </tr> </tbody> </table>	달성도 성과품질	달성 (100% 이상)	일부 미달성 (90% 이상)	상당부분 미달성 (90% 미만)	충실	19~20	17~18	14 미만	보통	17~18	15~16	12 미만	낮음	15~16	13~14	10 미만
달성도 성과품질	달성 (100% 이상)	일부 미달성 (90% 이상)	상당부분 미달성 (90% 미만)														
충실	19~20	17~18	14 미만														
보통	17~18	15~16	12 미만														
낮음	15~16	13~14	10 미만														
<p>측정기준 (착안사항)</p>	<p>○ (목표 달성도) 객관적인 통계·근거자료를 토대로 관리과제 등 정책수단(내용)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정량·정성적으로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대비 추진실적의 양적인 수준 외에도 질적 수준을 판단</li> <li>- 목표 달성과 연계되어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외생변수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여 판단</li> <li>- 목표가 법령 제·개정, 대책마련 등 비계량적인 경우 진척도, 난이도, 영향력·과급효과, 외부평가(전문가, 여론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li> </ul>																
<p>평가근거</p>	<p>부처 제출자료, 총리실 자체자료 등</p>																

평가지표	3-2. 정책 효과성(15점)
측정방법	<p>○ 해당과제의 정책 서비스가 의도한 대상집단에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등 궁극적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p> <p>* 전문가 의견, 여론 등을 기초로 정성적으로 판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정책 추진으로 의도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b></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효과성이 매우 뛰어난 수준 : 13~15점</li> <li>• 정책 효과성이 뛰어난 수준 : 10~12점</li> <li>• 정책 효과성이 통상적 수준 : 7~9점</li> <li>• 정책 효과성이 미미한 수준 : 4~6점</li> <li>• 정책 효과성이 매우 미미한 수준 : 1~3점</li> </ul>
측정기준 (착안사항)	<p>○ 가능한 객관적인 통계·근거자료에 의한 당초 예상·의도한 정책효과(policy effectiveness) 또는 정책영향(policy impact) 대비 실제 발생 수준에 대한 정량적 판단 위주로 하되, 유발된 효과의 질적 충실성, 유사 분야 국제지수 등에 대한 정성적 판단을 병행, 종합적으로 평정</p> <p>- <b>정량적 판단</b> : 정책추진의 최종 결과물, 수요자만족도, 전문가설문 및 여론조사, 시장 과급효과, 국제경쟁력지수 등 외국과의 비교, 잠재성장률, 관련주식·펀드시장 현황 등 계량화 가능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도한 효과 대비 실제 발생한 정도를 판단</p> <p>* 궁극적 정책효과성에 대한 계량화가 곤란한 경우, 성취된 효과의 가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p> <p>- <b>정성적 판단</b> :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논문, 산업계 및 기업들의 반응, 일반국민의 인식, 국회의 평가, 국내외 언론보도 논조, 정책담당자들의 자평, 경쟁력지수 등 국제사회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발생한 효과의 영향력과 질적 수준을 판단</p> <p>○ 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성과가 나타난 경우에도, 달성과정에서 집행비용(경제적·사회적)이 많이 소요된 경우는 이를 감안</p>
평가근거	<p>○ 정책효과 발생 수준·정도에 대한 측정방법 및 결과에 대한 계량적·비계량적 근거자료</p>

---

## 201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 인쇄·발행 : 2015년 6월
  - 발 행 처 :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TEL : (044) 203-3447 / <http://www.mcst.go.kr/>
  - 연구기관 :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704호  
TEL : (02)553-5465 / <http://www.kaps.or.kr>
-